
2026년 학생건강증진 분야 주요업무 추진방향

2026. 1.



안 내 사 항

- ◇ 학생 건강증진은 어느 한 분야를 집중하여 추진하기 보다는 신체·정신건강 관리, 건강하게 학습할 수 있는 환경 조성, 식생활 및 급식 관리 업무 등에 대한 협업을 통해 추진할 필요가 있음
- ◇ 학생, 교직원 및 학부모 등 학교 구성원이 학생건강증진 정책 추진의 중요성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하고, 학교 내 관리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 또한 중요함
- ◇ 이에, 교육부는 학생건강증진에 대한 학교 구성원의 의식을 향상시키고, 관련 정책의 내실있는 추진을 위해 「2026년 학생건강증진 분야 주요업무 추진방향」을 안내하니,
 - 시·도교육청에서는 지역 실정 등을 고려한 「시도별 학생건강증진 계획」 수립 시 동 정책방향을 참고하시기 바람

학생 건강증진 및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

보건관리

1. 보건교육 내실화
2. 학생 건강검사
추진 및 결과관리
3. 교내 감염병 예방
관리 강화
4. 마약류·흡연·음주
포함 약물 오남용 예방
5. 학교 내 응급상황
및 건강취약 학생
관리체계 강화
6. 학생 건강증진
전문기관 운영

마음건강

1. 한국형 사회정서
교육 운영
2. 위(Wee) 프로젝트
운영 및 활성화
3. 학교 상담인력
역량강화
4. 정서·행동 지원
필요 학생 발견
5. 정신건강전문가
긴급지원팀 운영
6. 학생 자살예방
7. 학생 마음바우처
지원

환경관리

1. 교육환경보호제도
운영관리 내실화
2. 학교 석면건축물
관리 철저
3. 학교 먹는물 위생
관리 강화
4. 학교시설 내 공기질
등 환경위생 개선

도박예방

1. 학생 도박 중독
예방 교육

급식관리

1. 학교급식 운영
내실화
2. 학교급식 위생안전
관리 강화
3. 안전하고 우수한
식재료 사용
4. 학교급식 영양관리
강화
5. 영양·식생활 교육
및 지도 강화
6. 학교급식 지원체계
구축 및 행정지원
강화

목차

I. 보건 관리

1. 보건교육 내실화	3
2. 학생 건강검사 추진 및 결과관리	6
3. 교내 감염병 예방관리 강화	9
4. 마약류·흡연·음주 포함 약물 오·남용 예방	12
5. 학교 내 응급상황 및 건강취약학생 관리체계 강화	17
6. 학생 건강증진 전문기관 운영	21

II. 마음건강 관리

1. 한국형 사회정서교육 운영	25
2. 위(Wee) 프로젝트 운영 및 활성화	27
3. 학교 상담인력 역량 강화	31
4. 정서·행동 지원필요 학생 발견	33
5. 정신건강전문가 긴급지원팀 운영	37
6. 학생 자살예방	39
7. 학생 마음바우처 지원	42

III. 교육환경 관리

1. 교육환경보호제도 운영관리 내실화	47
2. 학교 석면건축물 관리 철저	53
3. 학교 먹는 물 위생관리 강화	56
4. 학교시설 내 공기 질 등 환경위생 개선	62

IV. 급식 관리

1. 학교급식 운영 내실화	71
2. 학교급식 위생·안전관리 강화	74
3. 안전하고 우수한 식재료 사용	78
4. 학교급식 영양관리 강화	84
5. 영양·식생활 교육 및 지도 강화	86
6. 학교급식 지원체계 구축 및 행정지원 강화	89

V. 학생 도박중독 예방교육

1. 학생 도박 중독 예방 교육	95
-------------------------	----

VI. 행정사항

1. 연간 주요행사 및 일정	103
2. 보고 목록	107
3. 보고 서식	109
4. 참고자료	132



I . 보건 관리

1. 보건교육 내실화
2. 학생 건강검사 추진 및 결과관리
3. 학교 내 응급상황 및 건강취약학생 관리체계 강화
4. 마약류 · 흡연 · 음주 포함 약물 오 · 남용 예방
5. 학교 내 응급상황 관리체계 강화
6. 학생 건강증진 전문기관 운영

1 보건교육 내실화

□ 기본방침

- 성장기 학생들의 자기 건강관리 능력 함양을 위하여 시·도교육청 및 단위 학교 여건에 맞게 실질적인 보건교육 내실화 방안 수립·추진
- 학교 보건교육 내실화를 위한 교사연수, 보건교육실 설치, 보건교사 보조인력 배치, 학교별 교육과정 운영과 교수·학습방법 등에 대한 장학 등 지원 강화

□ 추진 근거 및 현황

- 「학교보건법」 제9조(학생의 보건관리), 제9조의2(보건교육 등), 제9조의3(마약류 중독·오남용예방 교육)
- 성장기 학생의 신체건강 증진을 위해 발달단계에 알맞은 질병예방, 마약·음주·흡연 등 약물 오·남용 예방, 성교육 등에 대한 학교장의 보건교육 책무성 강화
- 2022 개정교육과정(교육부 고시 제2022-33호,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에 따른 보건교육 및 ‘보건’ 선택과목 운영
 - ※ 학년별 시행시기: ('24) 초1~2학년, ('25) 초3~4학년, 중·고 1학년, ('26) 초5~6학년, 중·고 2학년, ('27) 모든 학년

* 2022개정 교육과정 총론 관련 내용

III. 학교급별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기준

1. 기본사항

파. 시·도교육청과 학교는 필요에 따라 이 교육과정에 제시되어 있는 과목 외에 새로운 과목을 개설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교육감이 정하는 지침에 따라 사전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2. 초등학교: 나. 교육과정 편성·운영 기준

5) 학교는 학생의 발달 특성을 고려하여 학교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한다.

다) 정보통신활용 교육, 보건 교육, 한자 교육 등은 관련 교과(군)와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을 활용하여 체계적인 지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3. 중학교: 나. 교육과정 편성·운영 기준

1) 학교는 교과(군)과 창의적 체험활동의 수업 시수를 학년별, 학기별로 자율적으로 편성할 수 있다.

라) 학교는 선택 과목을 개설할 경우, 2개 이상의 과목을 동시에 개설하여 학생의 선택권을 보장한다.(후략)

4. 고등학교: 나. 교육과정 편성

1) 공통사항

사) 학교는 일정 규모 이상의 학생이 이 교육과정에 제시된 선택 과목의 개설을 요청할 경우 해당 과목을 개설해야 한다.(후략)

- 교육부 학교교수학습혁신과 - 7262('25.10.16.) '2026학년도 범교과 학습 주제 편성·운영 안내'
- 범교과 학습주제 간 통합 운영, 관련 교과 탄력운동을 재구성한 연계·운영 등 교육활동 전반(교과, 창의적 체험활동)에 걸쳐 탄력적으로 운영

□ 주요 업무

- (단위학교) 학교 교육계획 수립 시 실질적인 교육내용, 방법 및 대상 등 학교 여건을 고려하여 체계적·지속적인 보건교육이 가능하도록 학교 교육과정 편성

▶ 보건교육 참고 자료 예시

1. 에듀넷(www.edunet.net): 창의적체험활동-주제별사진영상자료-보건안전교육
2. 에듀넷(www.edunet.net): 학습자료-주제별 학습자료-범교과학습주제(안전·건강교육)
3. 에듀넷(www.edunet.net): 교육정책-교육과정-국가교육과정
4. 학생건강정보센터(www.schoolhealth.kr)
5. 각 시도교육청의 교육과정 및 개발·배포 교육자료

- 학교급별 최소 1개 학년을 대상으로 관련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을 통해 연간 17차시* 이상 보건교육이 가능하도록 필요한 사항 조치

* 범교과 학습 주제(건강·안전) 내 관련 세부 주제와 통합 운영하도록 학교 교육계획 수립 가능/
2022 개정교육과정 적용 학년은 연간 16차시 이상

※ (중·고등학교) 학생건강 관리에 대한 중요성 및 요구도 증가를 고려하여 선택과목(보건)을 통해 체계적인 보건교육을 실시하는 방안 적극 검토

- (교육청) 교육감(장)은 각급 학교에서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에 따른 체계적인 보건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 적극 추진

※ 보건교사 미배치로 인한 보건교육과 학생들의 건강관리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부 규제심의 및 적극행정위원회' 의결을 거쳐, 배치기준 범위에서 교육감의 2026년 기간제 보건교사 보건교사 채용·배치 허용 (학생건강정책과-5400, '25.11.13.)

- 교육감(장)은 보건교육 내실화 방안을 시도교육청 단위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에 포함하여 안내하고, 교육과정 운영과 교수·학습방법 등에 대한 장학* 강화

* 「초·중등교육법」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교육감은 관할 학교를 대상으로 교육과정 운영과 교수학습 지도 등에 장학지도를 할 수 있음. 장학은 단위학교의 교육과정, 수업, 교원의 전문성, 학교 조직 운영, 교육정책 수행 정도 등을 지도·평가하는 활동으로, 전국 학교의 교육력을 일정 수준 이상 유지하기 위한 국가위임 사무임

- 학생 참여형·체험형 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재 및 교구지원, 교육자료 개발·공유 확대 등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
- 보건교사 수업전문성 향상을 위한 연수, 보건교과(교육)연구회, 교사동아리, 보건교육 우수교원 표창, 보건수업 연구대회 운영으로 우수사례 발굴·공유
 - ※ 학생건강정보센터, 교육청·학교 홈페이지 등 활용(저작권·재산권 유의)
- 학생 건강관리 서비스 제고 및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보건실 내 또는 인근에 보건교육실 설치 등 지원

2

학생 건강검사 추진 및 결과 관리

□ 기본방침

- 성장기 학생들의 올바른 생활습관 및 신체적·정신적 건강상태를 파악하고, 질병을 조기에 발견·치료하여 건강한 삶 도모
- 개선이 필요한 건강행태 또는 건강문제, 질병이 발견된 학생에 대해서는 교육 및 건강 상담, 치료 및 보호 등 적절한 대책 강구

□ 추진근거 및 현황

- 초·중·고등학교에서는 「학교보건법」 및 「학교건강검사규칙」에 따라 학생에 대한 건강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학생건강증진계획 수립 시 학생건강검사 결과 활용도 미흡
- 인스턴트 섭취율 증가, 신체활동 저하 등의 사유로 코로나19 이후 과체중 및 비만 학생의 비율이 30%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
 - ※ 학생 건강검사 결과 연도별 비만군(과체중+비만) 학생 비율 : ('19) 25.8% → ('21) 30.8% → ('22) 30.5% → ('23) 29.6% → ('24) 29.3%
- 영유아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전생애 주기 건강검진 결과 관리 체계 구축, 학생·학부모의 검진기관 선택권 보장 및 학교의 행정업무 경감 기대
 - ※ 학생 건강검진 제도개선 TF 구성('23.6월) → 건보공단 위탁형태의 시범사업 추진('24~'25)
- 학생건강검진 제도개선을 위한 「학교보건법」 개정 추진('25.12.10. 법사위 의결)

□ 주요 업무

가. 학생 건강검사제도 운영

- 각 시도교육청은 각급 학교에서 「학교보건법」 제7조 및 「학교건강검사규칙」에 따라 건강검사가 원활히 실시될 수 있도록 지원 강화
 - ※ <「학교건강검사규칙」 개정 시행('20.3월~)> 건강검진 일부항목 삭제 및 추가, 문진표와 건강조사서 분리, 비만도 산출은 '체질량지수' 기준 산출방식으로 일원화 등

- 관내 학교별 건강검진(건강검진, 별도검사) 추진결과는 익년도 2월초까지 보고서식에 따라 제출 요청
- 학교의 장은 학생 건강검사를 위한 검진기관 및 검진 시기(기간 등) 결정 시 학생·학부모의 의견을 반영하는 등 불편 최소화 노력
- 건강검사 추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가급적 학생·학부모가 원하는 날짜에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검진기관과 협의하여 검진 추진
 - ※ 단, 지역 내 검진기관이 없는 학교, 특수학교 등에서는 1개의 검진기관에 의한 출장검진 가능(「학교건강검사규칙」 제5조의2(건강검진의 절차 등) 제4항)
- 학생 건강검진 기관 선정 시 검진 참여 인력 자격 요건 확인 등 관련 법령에 따른 부적정 요인 여부 확인 철저

나. 학생 건강검사 표본학교 운영 철저

- 표본 조사결과에 대한 신뢰성 제고를 위하여 건강검진에 참여하는 검진기관 관계자에게 학생 건강검사 표본학교 매뉴얼과 학생 검진항목별 검진방법 및 판정기준 등에 따른 교육 철저
- 표본학교로 선정된 학교 대상 ‘학생 건강검사 표본학교 매뉴얼’ 교육 실시 및 사후관리 철저
- 건강검사는 3월부터 9월 중 실시하고, 검사 결과는 나이스(NEIS)를 통해 제출
 - ※ 학교의 장 → 시도교육감 : 9월 30일까지, 시도교육감 → 교육부장관 : 10월 31일까지
 - ※ 학생건강검진 제도개선 시범사업 대상 지역은 별도로 안내되는 계획에 따라 추진

다. 검사결과의 적극 활용 및 유증상자에 대한 사후관리

- 학교의 장은 학생 건강검사의 결과를 평가하여 이를 바탕으로 학생건강 증진계획을 수립·시행(「학교보건법」 제7조의2제3항)
- 모든 학생에 대한 건강검사 실시 후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학생의 건강행태를 개선할 수 있도록 보건교육 등 적극적인 건강증진 교육을 실시하고, 학교의 실정에 맞는 건강증진 프로그램 적극 운영

- 건강검진 결과에 따라 건강 상담, 질병의 예방조치 및 치료 등의 보호 및 별도의 관리가 필요한 학생에 대해서는 학부모 상담 등을 통해 적절한 대책 마련·추진
- ※ 학생 본인 또는 학부모에게 검진결과 발견된 질환에 대한 조치 및 결과 회신 요청 시 충분한 상담 등을 통해 취지를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 필요

라. 학생 건강검진 제도개선 적극 협조

- 학생 건강검사 효용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계속~)
- 학생 건강검사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하여 실시하고, 검진결과를 영유아검진 및 성인검진 결과와 연계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검진항목 조정 등 추진 시 적극 협조(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협업)
- 학생 건강검진 제도개선(‘27년 전면시행 예정)을 위한 ‘26년 시범사업 추진 시 해당 교육청 및 학교의 적극적인 협조 요청(세종, 강원 원주·횡성)
- ※ 제도개선 추진 관련 세부 일정 등 확정 시 별도 안내 예정이며, 시도교육청의 적극적인 협력(자료 제출, 예산 등) 필요

마. 학생 건강검진 관련 민원에 대한 적극 대응

- 학생 건강검진 관련 민원이 발생할 경우 교육청 또는 단위학교(초·중·고등학교)에서 검진기관에 해당 민원에 대한 설명 및 적극 개선요청
- 학생 건강검사의 적법한 운영 지원 및 현장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고, 검진과 관련한 학생 및 학부모 대상 만족도 조사 실시 등 질(質) 관리 철저
- 만족도 조사 결과 등을 통해 도출된 문제점 등에 대해서는 차기년도 검진 시 계약서에 반영하는 등 후속조치

3 교내 감염병 예방관리 강화

□ 기본방침

- 코로나19 대응 경험을 토대로 '학교 감염병 예방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개정 법령 및 학교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마련한 '학교 감염병 예방·위기 대응 매뉴얼'에 따라 효율적인 감염병 예방관리 추진
- 시·도교육청은 지역 실정에 맞는 세부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관내 학교의 감염병 예방·대응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
- 학생·학부모 대상 지속적인 교육·홍보를 통한 감염병 예방수칙 준수 생활화

□ 추진근거 및 현황

- 초등학교 및 중학교 입학생 대상 예방접종 완료여부 확인을 위한 나이스-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 연계 완료('22.5월~)
- 「학교보건법」 제14조의3에 따른 제2차 '학교 감염병 종합대책' 수립('23.12월)
- 「학교보건법」 제14조의4에 따른 '학교 감염병 예방·위기대응 매뉴얼(제3차 개정판)' 제작·배포('23.12월)
- 감염병 관리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과정 운영(계속)
 - 학교 관리자 및 담당 교원 대상, 교육청 담당자 대상 연수과정 운영

□ 주요 업무

가. 감염병 예방교육 강화

- 생활 속 기본방역 수칙 실천 및 교육·홍보 강화
 - 학교 및 가정에서 개인 위생수칙 준수가 생활화될 수 있도록 교육 및 홍보 실시
 - 학교 내 감염병 예방 강화를 위한 최소 교육 이수시간*(연간 4시간 이상) 마련 및 교육효과 제고를 위한 교육방법 다양화
 - ※ 학교보건법, 아동복지법에 따라 유치원 및 초·중등학생 대상 교육 실시 의무
 - * 감염병 및 약물의 오용·남용 예방 등 보건위생관리 교육 실시 의무화(연간10시간)
- 교육(지원)청 및 각급학교 감염병 업무 담당자 연수 지속 추진
 - 「감염병예방법」 제18조의5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교육청 공무원 및 학교 교직원 대상 감염병 교육 실시 의무화(매년 1시간 이상)

- 각 시도교육청은 산하 연수원에 교원 대상 온라인 연수 과정 개설·운영
 - ※ 모든 교장, 교감, 담임교사 및 보건교사가 연수를 이수할 수 있도록 온라인 연수과정 등을 연중 개설·운영하되, 당해 연도 연수대상자 수를 고려하여 연수일정 등 조정 가능
- 시·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업무 담당자 대상 감염병 관리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과정은 교육부가 학생건강증진 전문기관을 통해 운영 예정
- 가정과 연계한 감염병 예방관리 강화
 - 가정 내 개인위생 관리 및 지도 협조, 감염병 유행 시 유의사항 등을 가정통신, SNS 등을 통해 지속 홍보
 - ※ 다문화 가정을 위해 제작한 주요 국가 번역본 등 활용

나. 학교 내 감염병 발생 시 확산방지를 위한 대응조치 철저

- 교내 확산 방지를 위한 감염병 환자(의심자 포함) 관리 강화
 - 감염병 환자 발생 시 등교를 중지하고, 학부모에게 의료기관 진료를 안내 하는 등 신속한 대응을 통하여 학교 내 확산을 방지
 - ※ 환자 발생시 조치내용 및 절차는 “학생 감염병 예방·위기대응 매뉴얼”, 등교중지 및 출석인정 등 출결상황 관리는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및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에 따름
- 감염병 환자 발생 현황 확인·관리 철저
 - 학교장은 감염병 발생 시 지체없이 나이스(NEIS)를 통해 교육청에 보고
 - ※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제12조 및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결핵·홍역·콜레라·장티푸스·파라티푸스·세균성이질·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A형간염은 보건소에도 즉시 신고
 - ※ 감염병 확진 학생 관리 및 학교 유행·예방 대책 마련을 위해 완치자에 대한 보고 철저 요청
 - 교육청은 관내 감염병 발생상황을 매일 확인(NEIS)하여 유행 여부를 판단 하고, 나이스를 통해 교육부에도 전송(공문 별도 시행)
 - ※ 학생 및 교직원 감염병 발생으로 인한 역학조사, 긴급방역 조치, 언론 취재 및 보도 등 특이사항 발생 시 별도 보고
- 학교 내 결핵 등 주요 감염병 발생 시 방역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신속한 역학조사 실시
 - ※ 필요시 관할 보건소의 협조를 얻어 학생 및 학부모 대상 결핵 관련 설명회 개최
- 지자체에서는 결핵환자를 조기에 발견·치료하여 타인에게 전파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숙사 입소생 대상 결핵 검진사업 수행(2026 국가결핵관리지침 참고)

◆ 2026 국가결핵관리지침 내 기숙사 입소 학생 결핵 검진사업 주요 내용

- ▲ 학교 기숙사 입소 학생(입소 예정 포함)은 입소 시 결핵검진을 받도록 권고, 입소 시에 결핵 검진을 받지 않은 경우, 입소 중(빠른 시일 내)에 받도록 권고
- ▲ 학생 건강검진 등을 통해 결핵 검진(흉부 x선 검사)을 실시한 경우 중복해서 검사할 필요 없음

다. 예방접종을 통한 학교 내 감염병 확산 방지

- 학생의 예방접종력 확인을 통해 “표준예방접종 일정표”에 따라 적기에 예방접종을 실시하도록 하여 예방접종 대상 감염병의 학교 내 확산을 방지
 - 「학교보건법」 제10조에 따라 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장은 학생이 새로 입학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기 연계된 나이스-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예방접종 완료 여부 확인 후 나이스에 기록
 - ※ '26.2월 중 연계방법 등 별도 안내 예정
 - 예방접종 미실시 학생에 대하여 예방접종을 실시하도록 학부모에게 지속 안내, 질병관리청에서는 보건소를 통해 미 실시 학생 대상 별도 접종 안내 추진
-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적극 홍보를 통한 학교 내 인플루엔자 확산 방지
 - * 지원대상 : 생후 6개월 ~ 만 13세, 접종 기간 : 당해연도 9월 ~ 익년도 4월

라. 학교 감염병 예방을 위한 시도별 세부 대책 추진 철저

- 「학교 감염병 예방 종합대책」에 따른 후속조치 철저
 - 시도별 여건을 고려한 2026년 시행계획 수립 시 안정적 예산확보 방안 등 포함
- 학교·보건소(의료기관) 관계자 및 감염병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시도교육청 협의체 구성·운영
 - 지역 내 감염병 발생 정보 공유 및 확산 징후 발견 시 조기 차단 대책 수립
- 학교 내 감염병 관리조직 구성 지원
 - 「학교 감염병 예방 위기대응 매뉴얼」에 의한 학교 내 감염병 관리조직 구성 및 운영 등에 대한 학교관리자 대상 컨설팅 등 관련 사항 지원
- 관내 학교에 대한 소독 및 방역용품 구비 지원
 - 마스크, 손소독제 등 학교 방역물품 비축 현황 점검·예산지원
- 보건교사 미배치교의 보건업무 담당교사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교육청 주관으로 감염병 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별도 연수 및 컨설팅 등 적극 지원
- 교육부와 질병청과 협업하여 매주 시도교육청으로 안내하는 ‘감염병 표본감시 주간소식지’와 ‘학교 감염병 발생동향’은 교육지원청 및 학교까지 적극 안내하여 감염병 대응에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

4

마약류 및 흡연·음주 포함 약물 오·남용 예방

□ 기본방침

- 흡연·음주·마약류 등의 약물에 처음 노출되기 이전 시기부터 가정과 연계한 반복적인 예방교육 및 홍보 강화

□ 추진근거 및 현황

- 학생들의 흡연·음주 및 약물 오·남용은 성장기 청소년 건강에 악영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일탈행위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실정

◆ '25년 청소년건강행태조사 결과

- ▲ 현재 음주율: 남학생 9.8%, 여학생 6.1%로 '24년 대비 감소(남 2.0%p↓, 여 1.4%p↓)
- ▲ 현재 흡연율: (담배제품 현재사용율) 남학생 5.4%, 여학생 2.8%, '24년 대비 감소(남 0.4%p↓, 여 0.4%p↓)
(현재 흡연율-귀련) 남학생 4.4%, 여학생 2.1%, '24년 대비 감소(남 0.4%p↓, 여 0.3%p↓)

- IP 추적이 불가능한 다크웹을 통한 불법광고·접촉, 가상자산을 통한 대금결제, 국제우편·던지기 등 관련 수법 다변화 등으로 인해 10대 마약류 범죄 증가 추세
※ ('19년) 239명 → ('23년) 1,477명 → ('24년) 649명 / 향정신성의약품 87%로 대다수
- 「학교안전교육 실시 등에 관한 고시」 개정('23.10월)을 통해 학교를 통한 마약류 예방교육 실시시간 확대
※ (기존) 약물 및 사이버 중독 예방교육 합산 연 10시간 실시 → (개정) 전체 10시간 중 학교의 급별 마약류 포함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최소 시간 제시(유·초 5차시, 중 6차시, 고 7차시)
- 마약류 등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실시 관련 담당 교원 역량 강화를 위하여 별도의 연수과정 개설·운영('23.5월~)
- 청소년 마약 예방 교육 강화 방안 권고('23.12.18. 국민권익위원회)
※ (주요내용) 음주·흡연 예방교육과 구분한 마약예방 교육 실시 및 교원의 교육역량 강화 등
- 「마약류 관리법」 개정에 따라 청소년 마약중독예방교육과 학교교육 연계('24.1.2.)
※ (주요내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마약중독예방교육과 「교육기본법」에 따른 학교 교육을 연계할 수 있도록 교육 콘텐츠 개발 등 필요한 시책 수립·시행

- 「학교보건법」 제9조의3개정으로 마약류 중독·오남용 예방교육 실시 강화('25.3.18.)
※ (주요내용) 교육부장관은 전년도 12월 31일까지 마약류중독·오남용 예방교육 계획을 수립·시행, 학교의 장은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매 학기마다 교육 실시

□ 주요 업무

※ 2026년 학교 마약중독 예방교육 추진계획 안내(학생건강정책과-6386, '25.12.30.) 참조

가.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예방 교육강화

- 각 시도교육청은 관내 모든 학교에서 「학교안전교육 실시 등에 관한 고시」에서 정한 교육시간 따라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이 체계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계획 수립 여부 확인
※ 사이버 및 약물오남용 예방교육 10시간 중 학교급별 마약류를 포함한 약물오남용 예방교육 실시(유·초 5차시, 중 6차시, 고 7차시)
- 확대된 마약류 등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시간에 맞춰 제작된 표준 지도서를 활용하여 학교의 급별 체계적인 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안내
- 교육의 다양성과 학생 참여도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VR 활용 또는 지역 사회 기관과 연계한 교육실시 활용, 학교별 동아리 활동 등 지원
- 각 시도교육청은 마약류 및 흡연·음주 등 포함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계획 미수립 및 교육 미실시 학교가 없도록 조치하는 등 모든 학교에서 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관리

나. 교육자료 개발·배포

- 마약류 및 음주·흡연·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자료 및 프로그램 개발 시 학생건강 정보센터(www.schoolhealth.kr)에 탑재하여 교육자료 공유 및 활용도 제고
- 마약류 관련 예방교육시 식품의약품안전처 운영 마약청정 대한민국(www.nodrugzone.mfds.go.kr)에 탑재되어 있는 마약류 폐해 영상, 카드뉴스, 학습 만화, 홍보 리플렛 등을 교육 참고자료로 활용 가능

다. 담당교원 역량강화 및 전문강사 지원

- 각급학교에서 마약류 중독 예방교육을 담당교원에 대한 역량 강화를 위해

‘학생 마약류 예방교육 역량강화’ 원격연수(연중)와 한국마약퇴치운동부 협업을 통해 개설·운영하는 집합연수(1~2월) 이수 적극 안내

- 각 시도교육청은 자격·직무연수 등에 마약류 예방교육 1개 과목 이상 개설 또는 마약류 예방교육 역량강화 연수를 별도 운영하되, 체험형 예방교육, 교과연계형 예방교육, 토론형 수업 등 실제 사례 중심으로 구성
- 교사의 학생 마약류 및 음주·흡연·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교사 동아리 운영, 학생의 흥미와 교육효과를 높이는 수업모형 개발, 체험형 교재·교구 개발 활동 등을 적극 지원
- 초·중·고교에 전문적인 마약류 예방교육 지원을 위하여 소정의 자격을 갖춘 전문강사(법무부 법교육, 식약처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예방교육* 등) 지원 예정으로, 각 시도교육청은 각급학교에서 교육과정운영계획 수립 시 적극 반영토록 안내

※ '25년 지원 예정 횟수 : 법무부 법교육(약 1,000회),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예방교육(약 30,000회)

◆ 학생 마약류 예방교육 강사 지원 관련 연락처 ◆

구분	주소지	연락처	강사수	구분	주소지	연락처	강사수
서울	서울 서초구 효령로 194 지하 1층	02-598-8395	233	충북	충북 청주시 서원구 예체로112 KT사직빌딩 5층	043-221-4133	94
부산	부산 동구 중앙대로 272 약사회관 4층	051-462-1022	99	충남 세종	충남 천안시 서북구 쌍용대로 251, 유성빌딩 3층	041-592-1341~5	47
대구	대구 수성구 회망로 136, 3층	053-764-1267	66	전북	전북 전주시 완산구 백제대로 249, 4층	063-232-5112~3	47
인천	인천 서구 가정로 316 인정빌딩 4층	032-437-7910~5	67	경북	경북 구미시 송원동로 14-8 2층	054-451-0127	58
광주	광주 서구 상무대로 1106, 네오빌딩 5층	062-384-2818	59	경남	경남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257, 경남무역회관 206호	055-287-9993	50
전남	전남 순천시 연향 번영길 102, 양천회관	061-804-9777	43	울산	울산 중구 염로포 88 2층	052-222-0600	68
대전	대전 동구 대전로 866 페이퍼칼라 3층	042-628-8675~6	43	강원	강원도 강릉시 교동 137 2층	033-823-0626	10
경기	경기 수원시 팔달구 경수대로 708 2층	031-257-7582	317	제주	제주시 동광로 4 삼옥빌딩 5층	064-805-9795	19

※ 식약처 산하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에서 '25년 약 30,000건 이상의 교육 지원 예정

총 전문강사 수는 1,320명으로, 연중 온라인 사이트(edu.drugfree.or.kr)를 통해 강의 지원 신청 가능

라. 마약류 예방교육 중요성 인식을 위한 공감대 형성

- 마약류 접근 차단을 위한 자녀 지도요령, 마약류의 위험성 인식 제고를 위한 가정통신문 및 카드뉴스 안내, 학부모 교육 등 제공(연중)
- 학교 현장과의 소통 강화 및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 등을 위한 목적으로 '학교 마약예방교육 지원 전문위원회' 운영(계속, 교육부)

마. 상담 및 치료가 필요한 학생 지원

- 보건소 등 전문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흡연 학생이 금연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
- 마약류 중독 등과 관련하여 상담, 치료 등이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연계

< 학생 마약류 관련 상담채널 >

구분	기관	신고 및 상담채널
신고, 수사	검찰	1301
	경찰	112
청소년 마약예방, 재활 상담	24시 용기 한걸음센터	1342
마약중독치료	인천참사랑 병원	032-572-9410
	국립부곡병원	055-536-6440
	국립법무병원	041-840-5400

※ 마음을 털어놓고 싶은 학생들은 365일 24시간 무료 익명채팅 상담 '다들어줄게' 접속 ▶

① '다들어줄게' 앱, ②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③ 페이스북 메신저, ④ 문자(1661-5004)

바. 학교 금연구역 지정·운영

- 학교의 장은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 운동장을 포함한 학교 전체에 대한 금연구역 지정·운영(「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4항)
- 교육청은 관내 흡연실 설치 학교 현황을 파악하여 교직원의 교내 흡연이 학생들에게 목격되어 학생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도록 관리 철저
- 학교 내 간접흡연 피해 방지를 위해 종사자 및 외부인에게 학교 내에서 금연하도록 사전에 안내하고, 종사자의 경우 외부 금연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권고하는 등 학생의 건강권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

※ 국민권익위원회 「아동·청소년 간접흡연 피해 방지방안」(2020.12.7.) 제도개선 참조

- 모든 유치원 및 초·중등학교의 주변 30미터까지 금연구역 확대 적용('24.8.17)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6항 개정('24.8.17. 시행)으로 학교주변 금연구역 확대

구분	과거('24.8.16.까지)	현재('24.8.17.부터)
지정 대상	■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지정 범위	■ 시설 경계로부터 10미터 이내	■ 시설 경계로부터 30미터 이내
지정 주체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사. 학교 일반의약품 취급

- 보건실 구비 의약품에 대한 관리(보관방법, 유효기간, 복약요령 준수 등)를 철저히 하고 불필요한 의약품 투여·수여에 의한 오·남용 주의

<의약품 관리사항>

▲ 의약(외)품 사용 및 보관 기준 준수

- 의약품, 의약외품 등 분류하여 보관
- 의약(외)품 보관 용기 또는 첨부문서에 명기된 유효기간, 사용 방법, 보관 방법* 등 준수
 - * 온·습도 조절, 직사광선 차단, 냉장보관 등 의약품 효능이 떨어지지 않도록 보관 방법 주의
- 용기나 포장에 개봉된 상태의 의약품을 서로 섞어서 보관하지 아니할 것

▲ 의약품의 안전관리, 오·남용 방지를 위하여 보관·관리에 철저

- 보건교사(간호사 면허를 소지한 보조인력 포함)가 아닌 교직원의 일반의약품 취급과 보건실 이외의 장소에 일반의약품함을 비치하는 것은 불가하나, 의약외품은 모든 교직원이 취급 가능

* 「약사법」 제2조제7호 가목 및 나목, 의약외품 범위 지정(식약처고시 제2020-48호)

- 다만, 보건교사의 출장 등 부재 시 학생 건강 및 학습권보호, 학부모 불편 최소화 등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학교현장 어려움의 최소화를 위해, 필요한 학교에서는 학교장의 관리·감독 범위(학교 보건계획, 의약품 보관장소, 취급 주의 사항 등)내에서 학부모 동의절차 등을 거쳐 제한적으로 취급가능

※ '보건교사 부재 시 학교 일반의약품 취급절차 안내' 문서 참고(학생건강정책과-1975, '25.4.18.)

5

학교 내 응급상황 및 건강취약학생 관리체계 강화

□ 기본방침

- 「학교응급상황 대응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모든 학교에서 응급상황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응급상황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조치
- 제1형 당뇨병, 희귀·난치질환이나 장애로 인하여 특별한 보호·관리가 필요한 학생에 대한 지원체계 구축 및 응급상황 대응을 위한 심폐소생술 등 교육 철저

□ 추진근거 및 현황

- 「당뇨병 학생 지원 가이드라인」 배포(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6777, '19.9.23)
- '초·중등학교 내 1형 당뇨 학생 지원강화 방안' 마련('24.4월)
- '학교 응급상황 대응 가이드라인' 배포('25.4.25.)
- '당뇨병 학생 지원 가이드라인' 배포('25.7.8)

□ 주요 업무

가.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을 통한 학교 구성원의 안전 확보

- 초·중·고등학교의 학교장은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매년 최소 2시간 이상 응급처치 교육 실시(심폐소생술 실습 교육 포함)
 - ※ 구체적인 학생 대상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은 「학교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 및 교육부 내 안전사고 관련 업무담당 부서 지침에 따라 시행
- 초·중·고등학교의 학교장은 모든 교직원을 대상으로 연간 최소 4시간*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3월 31일까지 응급처치 교육계획 수립
 - * 교육 여건 등 고려하여 실습교육 2시간 포함 최소 3시간 이상 실시 가능
 - ※ 「학교보건법」 제9조의2 제2항, 동 법 「시행규칙」 제10조 및 별표 9
- 해당 학년도에 다른 법령*에 따라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관련 내용이 포함된 교육을 받았거나, 응급처치 교육 관련 법령에서 정한 교육 기준을 충족하는 외부기관의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연수를 받은 경우 생략(대체) 가능
 - * 「응급의료법」, 「119법」, 「어린이안전법」 등

<교직원 중 교육대상자 선정 권고안>

1. 모든 교원(기간제 교사 포함)
 2. 학교운동부 지도자, 스포츠강사 등 학교 스포츠 활동과 관련된 사람
 3. 교육감 소속의 일반직 공무원
- ※ 그 밖의 교직원(시간강사 등 단기상주 직원 포함)에 대한 교육실시여부는 학교장이 해당 교직원의 학생 교육 참여 정도를 고려하여 교육대상 선정
- ※ 건강상의 문제로 실습을 수행하기에 어려움이 있는 교직원에 대해서는 별도의 계획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는 방안 고려

- 시·도교육감은 원활한 학교 심폐소생술 교육을 위해 관내 학교 교직원의 심폐소생술 연수를 위해 행·재정적 지원 실시
- 교장·교감·교원의 직무연수과정에 심폐소생술 교육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거나 교육청 자체연수 또는 외부기관 연계를 통해 관내 교직원 대상 심폐소생술 교육을 지원
- 교직원 심폐소생술을 위한 정부 지정 응급처치 교육 전문기관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 ※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is.go.kr) [뉴스·소식-새소식-알립니다]에서 지정된 어린이 안전교육 전문기관을 확인할 수 있음

나. 제1형 당뇨 학생에 대한 지원·관리체계 강화

- 각급 학교에서는 학생건강검사(건강조사)를 실시할 때 제1형 당뇨 학생 재학 여부를 조사하고, 교육청은 관내 학교의 조사결과를 제출받아 관리
 - ※ (학교) 학생 또는 학부모(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관련 정보를 수집하여 학생지원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 ※ (교육청) 학교별 제1형 당뇨 학생 현황(인원) 제출받아 당뇨 학생 지원을 위한 자체계획 수립시 활용하고, 학생 개인정보 수집은 원칙적 금지
- 「당뇨병 학생 지원 가이드라인」에 따라 학교장이 담임교사, 보건·영양·체육교사 등으로 하여금 필요한 지원방안을 마련·시행토록 조치
- 초·중등학교 당뇨 재학생의 보호를 강화하고 원활한 교육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초·중등학교 내 1형 당뇨 학생 지원 강화 방안' 이행 철저 및 관내 학교에 지속 안내

<주요 내용>

1. 학생이 스스로 혈당을 관리할 수 있도록 인슐린 주사방법 등 조력, 초등학교 저학년·장애학생 등 자가주사가 어려운 학생에 대해서는 필요 시 보건교사 직접 주사지원
2. 당뇨에 대한 정보 제공 및 인식 개선을 위한 교직원용 교육자료 개발·보급, 보건교사 등 대상 연수과정 운영, 학생건강증진센터 등을 활용한 컨설팅 지원 등 추진
3. 혈당관리를 위해 의료기기 및 전자기기 사용이 필요한 학생이 평가(시험) 시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 등

- 학교장은 학부모의 동의와 전문의약품을 처방한 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 보건교사로 하여금 제1형 당뇨 또는 아나필락시스 쇼크 등 질병으로 인하여 생명이 위급한 학생에게 투약행위 등 응급처치 제공(「학교보건법」 제15조의2 신설, 2018.5.29. 시행)

- 보건교사가 응급처치를 제공하여 발생한 재산상 손해와 사상(死傷)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민사책임과 형사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사망에 대한 형사책임은 감경하거나 면제

※ 보건교사 부재시 응급상황 대응요령 등은 ‘학교응급상황 대응 가이드라인’(25.4.25.) 및 당뇨병 학생 지원 가이드라인(25.7.8.) 참조

다. 희귀난치질환 학생 지원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9조2항 및 제87조제2항에 따라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희귀질환 학생, 암, 1형 당뇨, 중증 난치질환 학생은 해당 학교군 내의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중 하나를 지정하여 입학 지원 가능

- 희귀질환목록은 ‘희귀질환헬프라인(<https://helpline.kdca.go.kr>)’에 매년11월 말 업데이트 된 질환목록 확인

- 중증난치질환은 보건복지부 고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4의2* 확인

- 희귀질환을 가진 학생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학교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질병 관리청 협업자료, ‘교직원을 위한 소아청소년 다빈도 희귀질환 안내서’(25)* 등 활용

* 소아청소년 다빈도 희귀질환(16종)에 대하여 질환별 개요, 연령별 중점 관리사항, 교직원이 숙지해야 하는 관리사항 등으로 구성, 학생건강정보센터(www.schoolhealth.kr) 탑재

〈교직원을 위한 소아청소년 다빈도 희귀질환 안내서 목록〉

구분	희귀질환 명	비고
유전의학	21삼염색체증 NOS(다운증후군)	
	핵형 45,X	
소화기영양	소장 및 대장 모두의 크론병	
	월슨병	
신경계	상세불명 이분척추	
	신경섬유종증(비악성)	
	발작수면 및 허탈발작	
	척수공동증 및 연수공동증	
	자가면역 뇌염	
	모야모야병	
심혈관계	팔로네징후	
	관상동맥혈관의 기형	
혈액종양	특발성 무형성빈혈	
	저형성 빈혈 NOS	
면역계	연소성 류마티스 관절염	
이비인후과	소이증	

6

학생 건강증진 전문기관 운영

□ 기본방침

- 교육부장관이 지정한 ‘학생건강증진 전문기관’과 교육감이 설치하는 ‘학생 건강증진센터’ 운영 내실화를 통한 학생 건강증진 지원 강화

□ 추진근거 및 현황

- 학생 건강증진 지원 업무를 위한 전문기관 설치·운영 근거 마련(‘21.9월)
 - ※ 「학교보건법」 제16조의2(학생건강증진 전문기관의 설립 등),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23조의2(학생건강증진 전문기관의 설립 등), 제23조의3(학생건강증진센터의 설치 등)
- 학생 신체건강 증진 지원을 위한 ‘학생 건강증진 전문기관’ 지정(‘23.10월)
- ‘학생건강증진센터’ 설치·운영 지원을 위한 국가시책 특별교부금 편성·지원(‘22년~)
 - ※ (‘24) 6,976백만원 → (‘25) 3,706백만원 → (‘26) 2,029백만원
- ‘학생건강증진센터’ 설치 시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총액인건비 지원(‘23년~)
 - ※ (‘24) 7명 → (‘25) 15명 → (‘26) 16명

□ 주요 업무

가. 학생건강증진 전문기관을 통한 지원 강화

- ‘제2차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에 따른 세부 과제별 연차별 추진계획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 강화
- 학교 내·외 건강 이슈와 사전 교육(지원)청 의견을 수렴 등을 통해 교육청 및 학교 현장 중심의 교육자료 개발·보급
- 교육청 공무원, 교직원, 학부모 등 학교 구성원 대상 다양한 교육과정 개설·운영
- 다양한 건강정보를 수요자가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학생건강정보센터’ 운영 내실화(분야별 전문 지원위원회 구성·운영)
- 교육부 지정 전문기관과 교육감 설치 또는 지정 학생건강증진센터의 기능이 중복되지 않도록 역할 정립 및 협업 강화

- 기관 운영에 소요되는 예산은 국가시책 특별교부금과 각 시도교육청별 분담금으로 운영 예정으로, 예산 수립 및 지원에 적극 협조

나. 학생건강증진센터 설치·운영 적극 추진

- 전문적인 학생건강증진 지원 업무가 가능하도록 각 시도교육청은 ‘학생건강증진센터’ 설치 적극 추진
- ‘학생건강증진센터’ 설치·운영 지원을 위해 교부한 국가시책 특별교부금은 교부 운영 목적에 부합하도록 사업계획 수립 및 집행 철저
 - 학생건강증진 사업부서에서 직접 집행, 별도의 계획·평가 없이 학교로 예산을 배부하거나, 특정 시설 리모델링 등 사업 추진 목적에 부합하지 않거나, 타 사업과 중복되는 사업 지양
 - 잔액반납이 있는 경우 차년도 예산 감액원인이 되므로 전액집행 추진
- 학생건강증진센터 설치·운영 지원을 위한 인력 활용
 - 학생건강증진센터를 기 설치하여 운영 중이거나 '26년 신규 설치를 계획 중인 시도교육청에는 인력 채용을 위한 총액인건비 지원
 - 국가정책수요 총액인건비를 산정받은 시도교육청*은 성과지표인 ‘학생건강증진센터 업무만족도**’를 조사하여 연말에 제출
 - * 서울, 부산, 인천, 광주, 대전, 세종, 경기, 충북, 충남, 전북, 경남 총 11개 교육청
 - ** 예시) 학생건강증진센터 업무만족도 산출방법/26년 목표치: 각 시도별 학생건강증진센터의 지원을 받은 학교 관계자(학생, 교직원)대상 만족도 조사 결과/ 100점 만점대비 81점
- 학생건강증진센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 활용
 - 현재 학생건강증진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는 시도교육청의 사례를 분석하여 향후 기관 설치를 계획중인 시도교육청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제공('25.1월)
 - * ‘시도교육청 학생건강증진센터 운영 모형 방안 이슈페이퍼’



Ⅱ. 마음건강 관리

1. 한국형 사회정서교육 운영
2. 위(Wee) 프로젝트 운영 및 활성화
3. 학교 상담인력 역량 강화
4. 정서·행동 지원필요 학생 발견
5. 정신건강전문가 긴급지원팀 운영
6. 학생 자살예방
7. 학생 마음바우처 지원

1

한국형 사회정서교육 운영 및 활성화

□ 기본방침

- 모든 학생이 자신의 감정과 정신건강 상태를 이해하고 관리하며, 정신건강의 어려움이 있을 때 적절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보편교육으로서의 예방 교육 강화
- 학생들이 행복한 삶을 사는 데 기반이 되는 ‘한국형 사회정서 교육’의 전국 도입·확산

□ 추진근거

- 학생 맞춤형 마음건강 통합지원방안(‘24.8월)
- 국정과제 101-5번 「학생의 마음건강을 위한 다중적 지원체제 구축」
- 학생 마음건강 지원 개선방안(‘25.12.)

□ 현황

- 한국형 사회정서교육 모델 마련 연구(‘24.3.)
- 한국형 사회정서교육 프로그램 시범 적용(‘24.9.~10.) 및 자료 개발·보급(‘24.12.)
- 한국형 사회정서교육 교육과정 재구조화 및 각종 자료 개발·보급*(‘26.1.)
 - * 「에듀넷-사회정서교육 정책」 메뉴 신설하여 사회정서 교육과정, 교사용지도서, 현장 연구, 실천 사례집, 교육 콘텐츠 등 탑재 보급

□ 주요 업무

한국형 사회정서교육이란?

- ❖ 학생들의 긍정적인 성장과 정신건강 증진을 목표로 **사회정서역량***을 강화하는 체계적인 **학교 기반의 교육**

* 주변의 타인들과 우호적인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공동의 목표를 위해 협력할 수 있는 능력으로, 자기 인식·관리, 타인과의 소통·협력, 책임, 마음돌봄 역량을 포함

- (교육부) 한국형 사회정서교육의 체계적 확산을 위한 교육과정 내용 체계화, 선도교사 양성 및 학교급별 맞춤형 교육콘텐츠 개발·보급
- (교육과정 재구조화) 기존 사회정서교육프로그램(6차시)을 교육목표, 학교급별 내용요소, 성취기준 등 내용 체계를 갖춘 교육과정으로 재구조화하여 보급(‘26.1.)

- (맞춤형 콘텐츠) 모든 교사가 학급자치시간, 교과, 창체 등 다양한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는 사회정서교육 맞춤형 교육콘텐츠* 개발·보급('26.1.)
- * △ 담임교사 아침대화 콘텐츠 120종 △교과 및 범교과용 콘텐츠 24종
- (선도교사 양성) 사회정서교육을 내실있게 도입·확산할 수 있도록 현장을 지원하는 전국단위의 선도교사 1,500명 양성('26.1.~2.)
- (교육청) 학교 교육과정 반영·적용, 사회정서교육 관련 교원 전문성 강화를 위해 시도교육청별 자체 계획 수립* 및 시행
- * 시도별 자체 계획 교육부 제출(~'26.3월 2주, 추후 별도 공문 시행 예정)
- (현장 연구 지원) 현장 적합성 높은 사회정서교육 운영 모델 개발 및 우수 사례 발굴을 위한 전문적 학습공동체 운영 지원
- (현장지원단) 교육부-시도-학교 간 소통을 위한 중앙 및 지역현장지원단을 구성·운영하여 현장 수요를 적기 반영한 교육지원* 강화
- * (주요역할) 시도별 운영 현황 모니터링, 사회정서교육 운영 컨설팅, 현장의견 수렴 등
- (교육공동체 역량 강화) 학교-가정 연계 교육 강화 및 학부모의 사회정서 역량 함양을 위한 학교관리자, 교원 및 학부모 대상 연수 운영, 교육자료 배포 등
- (학교) 담임·교과 교사 등 모든 교사가 교과 수업 및 창의적체험활동,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 등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운영하고, 기존 유사교육과 연계 운영
- (교육과정 연계) 초·중 학교자율시간, 자유학기, 진로연계학기 등 학교 여건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사회정서교육' 편성 운영

※ 사회정서교육 학교 교육과정 편성 운영(예시)

학교급	운영시간	세부 내용	비고
공통	교과 시간	- 관련 교과(도덕, 사회 등) 성취기준 연계 교육 - 사회정서교육을 주제로 학교, 학년 범교과 교육 편성	6차시
	창의적 체험활동	- 자율·자치, 동아리, 진로활동 시간 활용 교육	
	생활지도 연계	- 학급 담임 조·종례, 방과후 및 점심시간 활용, 학교 전체 계기 교육, 집중 교육주간 활용 교육	
중	자유학기제	- 주제선택, 진로탐색활동 시간 내 편성 교육	17차시
초, 중	학교자율시간	- 초3~6학년, 중학교에서 한 학기 이상 선택교과(활동)	

- (범교과 학습주제) 교육과정 총론 범교과 학습 주제(안전·건강)의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교육 시간 등에 보편적 마음건강 교육으로 '사회정서교육' 운영 가능

※ 안전교육, 인성교육, 학교폭력예방교육 등 관련 주제에서 사회정서교육을 실시할 경우 해당 주제의 교육 실시 시수로 인정(교육부 학교교수학습혁신과, '25.10.16.)

2

위(Wee) 프로젝트 운영 및 활성화

□ 기본방침

- 학교 부적응, 마음건강 문제 등 위기학생 '진단-상담-치유' 등을 통해 학교 부적응을 지원하고자 학교 상담 안전망으로서 위(Wee) 프로젝트 운영
 - 위기학생뿐만 아니라 모든 학생의 학교 적응을 돕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 위(Wee) 프로젝트가 학교 상담 안전망으로서 기능하고 위(Wee) 프로젝트 기관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각종 활성화 및 운영 지원 사업 추진

□ 위(Wee) 프로젝트 개념

- ▶ 위(Wee) = 'We(우리들) + education(교육)', 'We(우리들) + emotion(감성)'의 이니셜
- ▶ 나(I)와 너(You) 속에서 우리(We)를 발견할 수 있도록 사랑(♥)으로 지도하고, 학생에게 감성과 사랑이 녹아있는 위(Wee) 공간에서 자신의 잠재력을 찾아내자는 의미

- 지원대상 : 위기학생을 포함한 모든 학생
- 지원체계 : 단위학교-교육(지원)청-지역사회가 연계된 다중 안전망
- 지원전략 : 학생의 건강하고 즐거운 학교생활 지원

□ 추진 근거

- 위(Wee) 프로젝트 사업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교육부 훈령 제329호)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4조(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교육 및 시책)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4조

□ 현황

- 2008년 대통령 공약 사업으로 선정, 위기학생 지원 핵심 정책으로 위(Wee) 프로젝트 사업 추진

- 위(Wee) 프로젝트 기관 및 전문상담교사 등 인력 확충(계속), 위(Wee) 스쿨 설치('09.~) 가정형 및 병원형 위(Wee)센터 설치('10.~)
- 위(Wee) 프로젝트 연구특임센터 개소(한국교육개발원, '10.), 위(Wee) 희망대상 실시('11.~), 위(Wee) 프로젝트 매뉴얼 개발·보급('12.~)
- 위(Wee) 프로젝트 기능 확대·개편 시범사업 운영계획 수립('24.5.), 1차년도 시범사업 운영('24.7.~, 4개 교육청)
- 위(Wee) 프로젝트 기능 확대·개편 2차년도 시범사업 운영('25.3.~, 9개 교육청)

□ 관련 기관

기관	주요 기능	설치
위(Wee) 클래스	1. 대상 : 학생 2. 기능 : 학생이 재학하고 있는 소속 학교의 상담실을 통해 상담·교육 프로그램 운영	단위학교
위(Wee) 센터	1. 대상 : 관내 위(Wee) 클래스가 없는 학교 학생, 위(Wee) 클래스에서 상담 받기 어려운 학생, 위(Wee) 클래스에서 연계한 학생 2. 기능 : 지역 내 인적·물적 자원 연계망을 활용하여 심리평가-상담-치유를 위한 서비스 제공 ▶ 가정형 위(Wee)센터 : 가정적 위기상황에 놓인 학생의 지원 강화를 위한 단기 기숙형 위탁기관 ▶ 병원형 위(Wee) 센터 : 고위기 학생의 심리 지원을 위한 심층적 검사-상담-치료 지원	시·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위(Wee) 스쿨	1. 대상 : 위기상황으로 중·장기적인 치유·교육이 필요한 학생 2. 기능 : 고위기학생의 중·장기 (위탁)교육 실시	시·도교육청

□ 주요 업무

가. 위(Wee) 클래스 학교 상담 운영

- (교육청) 관련 지침 및 방안 등*에 기반, 위(Wee) 클래스 설치 확대 및 운영 내실화를 위한 교육(지원)청 자체 계획을 수립하여 지원

* 「위(Wee) 클래스 및 센터 운영 가이드」('24년 개정), 「학생 맞춤형 마음건강 통합지원방안」('24.8.) 등

- 단위학교 상담 환경 조성 등을 위해 관내 학교의 위(Wee) 클래스 구축 확대* 및 방문에 따른 낙인효과 완화 등을 위한 공간 재구조화** 지원 추진

* 시·도교육청 평가지표 내 '위(Wee) 클래스 설치율' 포함('25.)

** 이중 구조화, 출입동선 노출 최소화, 자유 이용시간 설정 등 운영모델 발굴

- 단위학교 위(Wee) 클래스 등 운영을 위한 적정 예산을 교부하여 지원하고, 위(Wee)센터 등 운영을 통해 학교현장 지원(학교 컨설팅, 교사 연수 등)

※ 시·도교육청 보통교부금 기준재정수요 내 '학생마음건강지원비' 반영('26.-)

- (학교) 관련 지침 및 방안* 등을 참고, 학교 내 연간 운영계획을 수립·운영
 - * 「위(Wee) 클래스 및 센터 운영 가이드」(24년 개정), 「학생 맞춤형 마음건강 통합지원방안」(24.8.) 및 시·도교육청 자체계획 및 지침 등
- 위(Wee) 클래스 상담 등을 통해 인지·발견한 위기학생을 외부기관에 연계한 경우 학생의 상태 및 경과를 지속적으로 추수관리

나. 위(Wee) 센터 운영

- (기본방향) 관련 지침 및 방안 등을 참고, 교육청별 연간 운영계획을 수립·운영
- (기관연계·컨설팅) 학교 위기사안 대응 지원을 위한 기관연계 및 자문 지원
 - 학교방문 전문기관, 상담센터, 병·의원 등과의 연계·협력을 통해 지역 내 학생 마음건강 허브기관(단위학교↔위(Wee)센터↔외부기관)으로서의 역할 수행
 - 필요시 위(Wee)클래스-위(Wee) 센터 협력에 기반한 사례회의 운영, 지역기관·수단 정보 및 컨설팅 실시 등을 통해 위(Wee) 클래스 운영 내실화 지원
- (고위기 상담 지원) 위(Wee) 클래스 상담 등을 통해 초기발견된 고위기 학생 대상 심층 상담 실시 및 병·의원 등 전문기관 연계 지원
- (학생·학부모 직접 지원) 학생이 위(Wee) 클래스를 경유하지 않고도 상담, 기관연계 등의 서비스를 직접 지원받을 수 있도록 위센터의 접근성 제고
 - 학부모를 대상으로 ▲가정 내 소통법, ▲자녀 이해 등 학생 지원 및 사회·정서역량 제고 프로그램 운영
- (조직 및 인력 개선) 위(Wee) 센터의 학교 현장 지원 기능을 내실화하기 위해 조직 및 인력을 확충하고, 근무인력 대상 역량 강화 연수 등 운영
 - 국가정책수요 반영, 교육청 자체 정원 배정 등을 통해 행정 인력을 확보하고, 전문인력 배치기준 및 처우 개선(고경력자 우선 배치, 근무 인센티브 등), 역량 강화연수 등을 통한 위(Wee) 센터 전문성 제고 추진

다. 복합 지원기관 운영

- (기본방향) 지역 내 수요 등을 고려, 시·도 교육청별 가정형 위(Wee) 센터, 병원형 위(Wee) 센터, 위(Wee) 스쿨 등 기관의 신설·확충 및 운영 개선
 - 특히, 최근 학생 마음건강 문제 증가에 대응, 위기학생에 대한 복합 지원을 위해 교육·치료를 병행할 수 있는 위탁교육기관 신설 등 적극 추진
- (가정형 Wee센터) 위기학생 지원을 위한 기숙형 위탁기관(자체교육/통학) 운영

- (병원형 Wee센터) 교육·치료 복합 지원 가능 시설을 설치(또는 지정), 고위기 학생에 대한 맞춤형(위기단계별) 지원기반 마련
- (Wee스쿨) 고위기학생 대상 중·장기적 치유 및 교육 등 복합지원을 위한 교육시설(대안학교, 대안교육기관 등) 운영

라. 위(Wee)닥터 위촉·운영

- (기본방향)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를 '위(Wee)닥터'로 위촉, 전문상담인력 등 대상 정신의학적 자문, 교육, 연수 제공
 - ※ 국가시책 특별교부금을 통한 위탁 수행기관 지정·운영
- (자문 제공) '위(Wee) 닥터'가 원격 화상 시스템을 활용하여 전문상담인력(전문상담교사, 전문상담사 등)에게 상담 관련 자문 제공
 - ※ [절차] '위(Wee) 닥터'와 전문상담교사·전문상담사가 원격 화상 시스템을 통해 학생 상담 지원 방안 협의 → 필요시 학생, 학부모 대상 직접 화상상담 등 실시
- (역량강화 연수) 전문상담인력의 상담역량 강화 및 '위(Wee) 닥터' 활용률 제고를 위한 온·오프라인 연수 제공
- (학부모 교육·연수) 학부모 인식 제고를 위해 학부모 대상 정신건강 관련 온·오프라인 교육 프로그램 등 제공

마. 위(Wee) 프로젝트 총괄 운영 지원

- (기본방향) 위(Wee) 프로젝트 내실화, 전문상담역량 제고, 성과확산 및 시·도 교육청 간 협력 강화 등을 위한 연구·지원 기관 지정·운영
 - ※ 국가시책 특별교부금을 통한 위탁 수행기관 지정·운영
- (정책연구 및 성과분석) 위(Wee) 프로젝트 성과분석, 이슈브리프 발간 등 위(Wee)프로젝트 및 학교 상담 관련 각종 연구 추진
- (자료 개발·보급) 위(Wee) 프로젝트 기관별 운영 가이드라인 배포, 학교 상담 내실화를 위한 각종 안내자료 개발·보급
- (전문상담인력 역량 강화) 선도교사(학교상담리더) 양성, 경력별 맞춤형 연수 등 운영을 통한 학내외 전문상담인력 역량 강화 지원
- (현장 지원 및 홍보) 위(Wee) 프로젝트에 대한 인식 제고, 학교 상담 활성화 위한 현장 지원 및 홍보활동 등 추진
- (시·도교육청 협력) 시·도교육청별 위(Wee) 프로젝트 수행 기관(인력) 간 네트워크 구축 지원, 관련 현황 조사 등 실시

3

학교 상담인력 배치 확대 및 역량 강화

□ 기본방침

- 위기학생(부적응, 학교폭력 등) 등 대상 학교 내 상담안전망 강화를 위해 전문 상담교사 및 전문상담사 배치 확대 지원
- 학교 상담역량 제고를 위한 전문상담교사 및 전문상담사 대상 연수 추진

□ 추진 근거 및 현황

- 「초·중등교육법」 제19조의2,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0조의2
- 국정과제 101-5번 「학생의 마음건강을 위한 다중적 지원체제 구축」
- 학생 마음건강 지원 개선방안('25.12월)

□ 주요 업무

가. 전문상담인력 확대

- (배치 확대) 전문상담교사 증원(관계부처 협의 필요), 한시적 정원외 기간제 교원 임용 허용* 등을 통한 전문상담인력 배치 확대 지원
* 관련 : 2026학년도 전문상담교사 한시적 정원 외 기간제교원 임용 안내('25.11.17.)
- (순회인력 운영) 전문상담인력 미배치교 대상으로, 위(Wee)센터 등 교육 행정기관 소속 전문상담순회인력을 통해 순회·내방상담 등 지원

나. 학교 상담인력 역량 강화

- (총괄 지원) 학교상담리더 양성, 경력별 연수, 전문의(위(Wee)닥터) 연수 등 운영을 통한 전국 단위 학내외 전문상담인력 역량 강화 지원
※ 국가시책 특별교부금을 통한 위탁 수행기관 지정·운영
- (교육청) 관내 전문상담인력에 대한 교육청별 자체 연수 및 컨설팅 등 운영, 총괄 지원 단위 프로그램과 연계한 성과 확산 노력 수행

< 전문상담(교)사 역량강화 연수(예시) >

구분	대상	내용
(직무)연수	Wee 클래스·센터 전문상담교사·전문상담사	정기적인 상담 이론 및 실습 교육
전문적 학습 공동체		상담 내용 및 기법 등 연구·학습
동료장학		상담 과정·활동 등을 관찰 및 조언
슈퍼비전		1:1 또는 1:1 소규모 전문가 코칭
Wee 클래스 운영 컨설팅	Wee 클래스 전문상담교사·전문상담사	Wee 클래스 운영 방향, 상담 및 활동사례 등

- Wee센터의 고위기학생 지원기능 등을 내실화할 수 있도록 Wee센터에 근무하는 인력 대상 직무연수 기회 내실화 필요
- 관내 전문상담교사·전문상담사 등 관련 인력이 국가시책 사업을 통해 제공되는 연수기회를 확보할 수 있도록 안내 및 홍보 등 협조 필요
- 학교상담리더로 선발된 선도교사가 지역 내 학생상담역량 강화에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학교 컨설팅, 자문, 연수 등에 적극 활용
- 전문성 높은 전문상담교사가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전문상담교사 배치기준 등 인력의 적정 운용 방향 검토

4 정서·행동 지원필요 학생 발견

□ 기본방침

- 학생들의 우울, 자살, 불안 등 정서·행동 문제에 대한 사전예방, 조기발견을 위해 정신건강 상태 검사를 실시하고, 전문기관 연계 등 지원체계 구축
- 교육부, 시도교육청, 단위학교, 지역사회 유관기관 등 협력체계 구축으로 학생 정서·행동문제 등에 대한 적절한 개입을 통해 건강한 학교 생활 지원

□ 추진 근거

- 「학교보건법」 제2조, 제7조, 제11조
- 「학교건강검사규칙」 제4조의3
- 학생 맞춤형 마음건강 통합지원방안('24.8.9.)
※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수시로 실시가 가능한 마음EASY검사 도입
- 국정과제 101-5번 「학생의 마음건강을 위한 다중적 지원체제 구축」
- 학생 마음건강 지원 개선방안('25.12.)

□ 추진 현황

- 학생정신건강 검진사업 시범운영 추진('07.)
- 학생정신건강 검진사업 전국 초·중·고 학생 전수검사 실시('12.)
-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시행('13.~, 매년)
※ 초등학교 1·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대상 시행(나이스 시스템 활용)
-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도구 개편·적용('17.)
※ 성격특성, 학교폭력, 사회성, 게임중독 등 문항 추가
-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다국어 검사지 제공('18. 5개국어, '20. 5개국어)
※ ('18) 영어 중국어 일본어 베트남어 필리핀어 ('20) 러시아어 아랍어 몽골어 태국어 크메르어
-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모바일 검사 기능 추가('21.)
- 마음EASY검사 시행('24.~)
-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도구 개편·적용('25.~)
※ 조사문항 변경, 다국어 버전 수정, 관리 매뉴얼 수정, 검사결과 보고 시각화 등

□ 주요 업무

가.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를 통한 조기발견

- 초등학교 1·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특수학교, 각종학교 대상
 - 신체적·인지적으로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성인인 학생 등 검사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는 학생에 대해서는 교내 협의를 통해 학교장이 제외 여부 결정
 - ※ 검사 대상에서 제외되더라도 위기 징후가 있는 경우 학생 보호조치 마련
- 위기학생을 효과적으로 선별하고 건강한 성장 발달을 지원하기 위해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개선 연구('23년)를 통해 문항 등을 개선하여 '25년부터 실시
 - ※ 조사문항 변경(교체, 삭제, 위치변경 등), 절단점 재설정, 검사결과 보고서 시각화 등
- 시도교육청 및 학교 기본계획에 따라 4월 중 검사 실시
 - 검사 목적 및 필요성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학생·학부모가 적극적이고 솔직하게 검사에 참여하고, 검사에 대해 오해하지 않도록 안내
 - ※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및 관리 매뉴얼' 별도 안내 예정
- 2단계 검사(학교 내 1차, 전문기관 2차) 절차 유지
 - 학교 내 검사는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도구(초등 CPSQ-II-I, 중등 AMPQ-III-I)를 사용하고, 그 밖의 표준화 도구를 활용한 심리검사 중복실시 지양
 - ※ 기본검사(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후 필요시 관심군 대상으로 추가 검사 가능
- 온라인 검사를 원칙으로 실시하되, 학교 여건에 따라 서면검사 가능
 - 온라인 검사 시스템 활용 시 학교·교육청 담당자는 사전에 시스템 사용자 설명서(이용방법, 검사기간, 메뉴구성, 검사결과 등) 관련 내용 숙지 철저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업무 추진 시 유의 사항]

- 지속관리를 요하는 학생이 학년승급, 전·출입, 진학 등으로 인해 학생관리(전문기관 2차 조치 포함)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시 재검사, 관련자료 확인 및 학생 관리 철저
- 학생 검사결과 통보 시, 검사 결과지 및 관리(상담)일지 등 관련 자료 작성·개인정보 보안에 유의하고 재학 중 학생관리 자료로 활용, 용도 소멸 즉시 폐기(파쇄)
 - ※ (민원) 조종례 시간에 특정 학생 지명하며 위클래스 방문하라고 안내
- 온라인 검사시스템 결과를 변경하는 경우(관심군↔정상군), 객관적이고 타당한 방법과 절차에 근거하여 신중 처리, 담당자 주관적 견해에 따른 변경 금지
 - ※ (민원) 학교 담당자가 관심군 학생을 정상군 학생으로 변경하기 위해 재검사 권유

나.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결과에 대한 조치

-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법령 준수, 검사 결과 및 학생·학부모 상담·치료 지원 시 개인정보 등이 공개되지 않도록 보안관리 철저
 - 학생검사 및 상담관리 등 관련 자료 일체가 동 검사제도와 무관한 제3자(외부 민간업체 등)에 유출되지 않도록 열람 및 관리 적정성 확보
 - 심층 상담·관리가 필요한 학생만을 집단으로 모아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을 지양하고 다른 학생들에게 낙인이 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 필요
 - ※ 검사 및 상담관리 등 '실명 기재 자료' 외부 제공 시 제3자 정보제공 동의 필요
- 관심군 학생에 대한 전출·입 학교 지속관리
 - 학생 전출·입 등 학적변동 시 전입교는 학부모 동의를 얻어 원적교(전출교)에 자료 요청·확인, 원적교 검사결과를 참고하되, 필요 시 재검사 등 학생 관리
 - 병원에 연계되어 치료가 진행되고 있는 학생 지속 지원 및 관리 철저

< 위험수준별 학생 관리방안 >	
관심군	• (학교내 관리체계) 업무 총괄자(부장교사 이상) 지정 의무화, 협의체 운영 등 • (지속관리) 학교 내 상담 정례화(최소 분기별 1회 이상) • (전문기관 연계) Wee센터·정신건강복지센터·청소년상담복지센터, 병·의원 등 전문기관 연계를 통한 2차 조치 등
우선 관리	• (학교내 집중관리) 위기대응팀 운영 의무화, 학교상담 강화(월 1회 이상) 등 • (병·의원 즉시의뢰) 검사절차와 관계없이 긴급을 요하는 학생 확인 즉시 전문기관·병의원 의뢰체계 구축·운영, 병원 연계되어 치료 중인 학생 관리 지속

- 학교 내·외 학생 정신건강 관리체계 내실화
 - 학교 내 총괄 책임자 지정(부장교사 이상) 의무화, 협의체* 구성·운영 등으로 단위학교 내 지속적인 학생관리 체계 마련
 - * 담임교사·보건교사·전문상담(교)사·생활지도 담당교사·지역사회 전문가 등
 - 위험 수준별 전문기관 의뢰·관리 시스템 정립, 학교-교육청-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 등 통합적·집중적 관리체계 구축
 - 마음 건강 자문의사 위촉·활용, 교육(지원)청 단위 사례회의 활성화 등을 통한 학교 전문성 강화
 - 전문적인 치료지원이 필요한 학생 등에 대해서는 단위학교별 대응에 한계를 고려, 교육(지원)청 단위 학교-지역사회 연계, 학교지원시스템 구축·운영

다. '마음EASY검사'를 통한 마음건강 위기학생 수시 발견·조치

- 3년에 한 번 실시하는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외에, 상시검사인 '마음EASY 검사'를 활용한 위기학생 조기발견 및 적기 개입
 - ※ 마음EASY검사 활용 매뉴얼 참고
-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실시하는 학년을 포함 모든 초·중등학생 대상으로, 필요한 경우 언제나 온라인 또는 서면 검사
 - ※ 초등은 학부모가, 중등은 학생이 직접 검사지 작성(검사 링크를 교사를 통해 제공)
- 마음EASY검사는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와 동일하게 진단검사가 아닌, 학생 교육활동의 적정성을 지원하기 위한 선별검사(screening test)
- 검사결과는 학생·학부모 상담 및 관심군 전문기관 연계에 활용
 - 마음EASY검사 결과 관심군으로 확인되면 정서행동특성검사 결과 관심군 관리 절차에 준하여 지원

라. '마음EASY검사' 활용률 제고

- 전교생 대상 매년 마음EASY검사를 실시하여 대인관계, 학교적응 등의 변화를 관찰하는 선도학교 운영(대상 및 범위 등 협의, '26.下~)
- 필요한 학급에서 마음EASY검사를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강화하고, 현장 교원 및 학생·학부모 대상 홍보 강화
 - 단기적으로 교육청별 특별교부금('자살 등 위기학생 안전망 구축-정서행동 위기학생 긴급지원 중 위기학생 인식개선)을 활용한 검사 홍보 및 활용 우수사례 발굴('26.上)
-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자신의 마음을 점검할 수 있도록 학교를 거치지 않고 검사를 신청할 수 있는 '마음EASY 셀프(Self) 검사' 도입 검토 예정

☐ 향후 추진계획

- 현재 3년 주기 정기 선별검사를 확대하는 방안 마련('26.)

5

정신건강전문가 긴급지원팀 운영

□ 기본방침

- 정신건강의학과 진료에 대한 학부모 선입견 및 의료 취약 지역 거주 등으로 병·의원 등 연계가 어려운 위기학생 개입 및 지원
- 정신건강전문가*가 학교를 방문하여 심층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를 토대로 전문의 주도 사례회의를 통한 위기학생 개입전략 수립 및 체계적 지원
 - * 전문의, 정신건강전문요원(정신건강임상심리사, 정신건강간호사, 정신건강사회복지사 등) 등
- 위기학생이 발생한 학교 교직원 대상 보건·의료적 컨설팅 제공
 - ※ 자살사안 발생 학급 담임 대상 학생지도 방법 컨설팅, 위기관리위원회 참석 등
- 초·중·고등교육법 제18조의5에 따른 상담·치료 권고, 긴급지원이 필요한 학교 지원

□ 추진 근거

- 「학교보건법」 제11조
- 학생 맞춤형 마음건강 통합지원방안('24.8.9.)
- 국정과제 101-5번 「학생의 마음건강을 위한 다중적 지원체제 구축」
- 학생 마음건강 지원 개선방안('25.12.)

□ 추진 현황

- 제1차 정신건강전문가 학교방문사업 시행(16.~18.)
 - ※ 교육부 주관 3년간 시행 후 시도교육청으로 사업 이양
- 코로나19 등으로 정신건강전문가 학교방문사업 관련 협의('20.)
- 제2차 정신건강전문가 학교방문사업 시행(21.~24.)
- 정신건강전문가 학교지원사업 시행(25.~)
 - ※ 역할 : ①학생지원 + ②학교컨설팅 + ③긴급지원
 - ※ 향후 교육지원청별 정신건강전문가 학교지원센터 운영 추진
- 교육(지원)청 단위로 정신건강전문가 긴급지원팀 56개 운영(25.12. 기준)

□ 주요 업무

- 교육지원청 단위로 정신건강전문가 긴급지원팀을 설치하여 전문가가 학생·학교를 촘촘하게 지원할 수 있는 체계 마련(교육청별 운영예산 대응투자 필요)
 - 병·의원 등 전문기관으로 연계되지 못한 학생 대상 초기평가, 학생 연계에 비협조적인 학부모를 전문의 등 전문가가 면담하여 전문기관 연계율 제고
 - 위기학생에 대한 연계 및 학교·유관기관(교육청, Wee센터 등)과의 협조체계를 강화하고, 지속적인 사례관리 및 모니터링 실시
- 자살 학생 발생 등 위기사항이 발생한 경우 조속히 학교를 방문하여 고위험군 심층검사, 애도교육, 심리안정화교육 등을 통해 학교 안정화 지원
 - 위기상황에서 교직원이 학생을 지도할 수 있도록 전문가 컨설팅 등 지원
- 위기학생 방문지원, 학부모 면담, 학교 컨설팅 등 교직원 지원 외에도 '26.3. 시행예정인 「초중등교육법」 상 긴급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신건강전문가의 역할 강화
 - 학부모가 자녀 상태를 인정하지 않거나 알면서도 치료 여력이 없다는 이유로 방치하는 등 학교에서 개입이 어려운 시급하고 심각한 사안의 경우 등 지원
- 정신건강전문가가 양육태도 등 가정환경 변화없이 위기학생 개선이 어려운 경우 고위기 가정에 대해 특별 프로그램 지원(학부모 동의 기반)
 - 우수사례 발굴을 통해 전체 교육청 상황에 맞는 고위기 가정 지원프로그램 개발·지원

□ 교육청별 자체 추진 권장 사항

- 위기학생 지원 사업에 대한 구성원들의 인식개선을 위해 학생동아리 운영, 선별검사 홍보 강화 등 학교 자체 사업 및 학부모 교육 강화, 캠페인 활동 등에 필요한 예산 자율 편성
 - ※ 긴급지원팀 운영비는 학교회계 전출대상이 아니나, '26년 특별교부금 예산 중 '위기학생 인식개선'에 한해 자율편성 가능

6

학생 자살예방

□ 기본방침

- 코로나19 이후 학생자살이 증가하고 있어 적극적 학생자살 예방 대책 추진
- 학생자살은 충동적으로 자주 발생하고 있어 자기 감정을 알고 조절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는 보편적 예방교육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여 관련 정책 시행

□ 추진 근거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4조 및 제17조
- 학생 맞춤형 마음건강 통합지원방안('24.8.9.)
- 국정과제 101-5번 「학생의 마음건강을 위한 다중적 지원체제 구축」
- 학생 마음건강 지원 개선방안('25.12.)

□ 추진 현황

- 학생 자살예방 교육 시간 확대(4→6차시)(21.~)
- 연도별 자살예방대책 시행계획 수립(~'23. 매년)
- 사회정서지원정책 추진방향 안내(24.2.)
- 자살예방법 개정·시행으로 학교에서 자살예방 교육 실시 의무화(24.7.12.)
※ (의무화 기관)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노인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 학교 등

□ 주요 업무

- 기존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교육을 학생 마음건강을 증진하는 사회정서교육으로 확장하여 문제중심에서 학생중심으로 연계·전환
 - 모든 학생이 학령기에 사회정서역량 강화교육을 받아 자기조절 관리 능력, 회복탄력성, 긍정성 등을 증진하고 정신건강에 대한 인식 확장
 - ※ 핵심역량 : 마음건강의 이해, 자기인식, 자기조절, 관계인식과 관계관리, 공동체 가치의 인식과 관리, 마음건강 문제의 인식과 관리

- 학생의 말과 행동에서 나타나는 자살위기 신호를 감지하고, 조기 개입하여 학생자살을 예방하는 생명지킴이 교원 연수 참여 확대 및 자체연수 개설
- 대면 상담 인프라 부족 및 디지털 친화적인 학생들의 발달 특성을 고려하여 365일 24시간 상담채널(다들어줄게, 라임 등) 홍보 강화
 - ※ 다들어줄게 앱 주요서비스 : 상담하기, 우리 이야기, 유관기관 찾기, 힐링톡톡, 감정가게
 - ※ 라임(LIME) 앱 주요서비스 : 실시간 상담(채팅상담, 음성상담, 화상상담), 게시판 상담, 나의 기분 Check-in, 심리검사
- 학생자살 사안 발생 시 보고 체계 준수
 - 학교는 사안 인지 당일 교육청에 유선보고하고 사안경위서 제출
 - 시도교육청은 학생자살 사안 조사를 실시하고, 7일 이내 경위보고, 15일 이내 사안보고서를 교육부로 제출(경찰 조사결과에 따른 변동사항은 즉시 보고)
 - ※ 학생자살 사망 발생 시 교육지원청에서 학교 위기관리를 위해 해당 학교를 방문하고, 교육지원청에서 상황 파악 등을 통해 학생자살사망사안보고서 작성
 - 학생자살보고를 학교가 임의로 누락하지 않도록 학교 지도 철저
- 학생 자살 동향 파악 협조
 - 시도교육청은 매월 10일까지 전월 학생 자살 동향 및 예방활동 실적을 작성하여 교육부에 공문으로 제출
 - ※ 교육부 사회정서성장지원과-3533 (2025.11.19. 시행) 공문 참고
 - 향후 시도교육청 부감회의를 통해 주기적으로 동향을 점검할 예정으로 시도교육청 자체적으로도 동향을 점검하고, 자살 급증 지역에 대해서 자살예방을 위한 적극적 현장 지원 필요

< 학생 자살 동향 보고 주요 내용 >

- **(보고 내용)** 시도교육청별 자살학생 수, 전월 및 전년 동월 대비 증감 추이, 시도교육청별 월간 자살예방 추진상황 및 실적
- **(결과 활용)** 전월 및 전년 동월 대비 급증 시도의 경우 추가 지원 계획을 공유 받고, 교육부에서 시도교육청에 유의 당부 예정
- **(현장 방문)** 필요 시 교육부가 교육지원청 단위로 현장 방문 추진 예정

○ 학생자살 현황 공유(모니터링 체계 구축)를 통한 위기대응 강화

- 매월 교육부-시도교육청-교육지원청 간 학생자살 현황 자료(시도별, 월별, 학교급별, 교육지원청별 등)를 공유하고, 지역의 적극적 역할 수행 당부
- 분기별 학생자살 급증지역의 교육지원청은 즉시 단기대책을 수립·시행하고, 관할 시도교육청은 해당 교육지원청을 방문, 정책 지원 및 상황 점검 등 실시

< 자살·위기학생 관련 상담망 >

구분	주요내용
다들어줄게	마음을 털어놓고 싶은 학생들은 365일 24시간 무료 익명채팅 상담 '다들어줄게' 접속 ▶ ① '다들어줄게' 앱, ②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③ 문자(1661-5004)
라임(lime)	청소년 SNS 상담채널(라임 앱 또는 홈페이지(www.lime.or.kr) 등 활용) ※ 1단계 본인인증을 통한 문자 상담 → 2단계 위기학생의 경우 유선/대면 상담 8회기로 연계 → 3단계 자살 등 위기 시 병원 연계지원
긴급번호 109	자살위기 통합 상담
청소년1388	청소년 상담(유선*, 채팅 등) 및 대국민 포털** 운영(www.1388.go.kr) * (유선전화) 국번없이 1388, (휴대전화) 지역번호+1388 ** 위기 상황별 맞춤형 지원 정보 및 시설 찾기, 온라인 서비스 신청, 365일 24시간 연중상시 고민상담 등

< 도움 받을 수 있는 기관 >

구분	기관	홈페이지
교육부 산하기관	학생정신건강지원센터	https://www.smhrc.kr
	학생 자살, 안전사고, 재난 등의 위기 상황 발생 시 구성원의 심리회복과 학교 본연의 기능 정상화를 위한 컨설팅, 학교응급심리지원 교육, 관리자 위기 대응 역량 교육 제공과 더불어, 학생 자살·자해 등의 트라우마 사건 및 재난 대응으로 인해 심리적 어려움을 경험하는 교직원에게 전문적인 심리지원 서비스 제공	
관련 정보가 있는 기관 홈페이지	학생건강정보센터	https://www.schoolhealth.kr
	국립정신건강센터	http://www.ncmh.go.kr
	국가트라우마센터	https://nct.go.kr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https://www.kfsp.or.kr
	한국자살예방협회	http://suicideprevention.or.kr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	http://www.nmhcr.or.kr

< 도움 받을 수 있는 자료 >

- 학생정신건강지원센터 발간 자료

학교를 위한 응급심리지원
- 실행자 입문서 -




학생 자해대응 안내서
(교사용)




자살예방 교육자료
(교사용)




7 학생 마음바우처 지원

□ 기본방침

- 우울, 불안, 스트레스 등 정신건강 문제를 호소하는 학생들이 증가하고 있어 선제적으로 정신건강의학과 병·의원 진료 및 치료비 지원
- 자살·자해 시도 학생의 재발 방지를 위해 정신건강 위기학생에 대한 전문가 상담과 신체 상해 치료비를 지원하여 학생의 건강한 성장 도모

□ 추진 근거

- 「학교보건법」 제11조

제11조(치료 및 예방조치 등) ③ 교육감은 검사비, 치료비 등 제2항 각 호의 조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학생 맞춤형 마음건강 통합지원방안('24.8.9.)
- 국정과제 101-5번 「학생의 마음건강을 위한 다중적 지원체제 구축」
- 학생 마음건강 지원 개선방안('25.12.)

□ 추진 현황

- 학생 자살시도 및 정신건강 고위험군 학생 치료비 지원사업 시행
 - ※ '17.~'22,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 민관협력
- 정신건강 위기학생 진료·치료비 지원사업 시행('22.)
 - ※ 특교 규모 : ('22) 753백만원 → ('26) 10,190백만원

□ 주요 업무

- 치료비 등 지원은 교육감의 사무이고, 보통교부금 지운재정 수요에 '학생 마음건강 지원비'가 포함된 만큼, 교육부 특별교부금(한시적 지원)에 의존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자체 예산 확보하여 학생 지원
 -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간 대응투자 비율 조정할 예정
 - ※ ('26년) 4:6 → ('27년) 3:7 → ('28년) 2:8 → ('29년) 자체예산으로 운영
 - 대응투자 지원조건을 이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자체 노력 정도는 다음 연도 특별교부금에 반영 예정

- 학생 마음바우처가 목적 외로 사용되지 않도록 교육청별 자체 기준 마련
 - 교육청 자체 지원대상자 선정 및 마음바우처 지급에 대한 기준·절차 마련
 - 위원회 심의 등 교육청별 자체 기준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본인부담금 적용 제외 가능
 - 학부모가 자녀 치료에 대한 책임감 등을 갖도록 본인부담금(10%) 부과 의무화
- ※ 학생 마음바우처 지원사업 심의위원회 심의 기준(예시)

검토 항목	기준
지원 대상의 적정성	• 자살(자해) 시도 및 정신과적 문제의 심각성 - 정신과적 문제로 치료 및 입원이 필요한 경우 - 정신과적 문제로 자·타해 위험이 높은 경우 - (신체치료비) 자살시도로 인한 신체상해인 경우 • 정신과적 문제로 인하여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 • 정서·행동문제로 학교생활에 현저한 어려움이 있어 학교장의 상담·치료 권고 등을 받은 경우 진단서 없이 상담비 지원
가정 및 경제적 상황	• 사회적 취약 가정(한부모, 다문화, 조손가정 등) - 복합적인 문제로 인해 사회, 경제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치료 동기	• 학생 및 보호자의 치료 동기 • 치료 후 학생의 증상 호전 가능성
타 기관 중복지원 여부	• 타 기관 및 사업을 통해 치료비 지원 여부
기타 특이사항 및 분쟁·예외사항	• 심의위원회 검토의견

- 학부모가 학생 정신건강 이해와 치료 관련 온·오프라인 연수 이수증을 첨부하여 교육(지원)청으로 진료·치료비 신청
 - 시도교육청 자체적으로 학부모 대상 학생 정신건강 증진 온·오프라인 연수 개설을 확대하여 학부모들의 연수 참여를 독려하고, 마음건강에 대한 인식이 개선될 수 있도록 지원
 - ※ 학부모 교육은 '26년 특별교부금 예산 중 '위기학생 인식개선'에서 자율편성 가능
- 학부모 온누리(www.parents.go.kr)를 통해 '마음바우처 연계' 온라인 강의 수강 시 인정 가능
- 학생 마음바우처가 목적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교직원·학부모에게 안내
- 병·의원 진단서 없이 상담비 지원이 가능하므로 대상선정·지급기준에 대한 자체 기준 마련 필요
- ※ (예시)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5에 따라 학교장이 상담·치료를 권고한 경우



Ⅲ. 교육환경 관리

1. 교육환경보호제도 운영관리 내실화
2. 학교 석면건축물 관리 철저
3. 학교 먹는 물 위생관리 강화
4. 학교시설 내 공기 질 등 환경위생 개선

1

교육환경 보호제도 운영관리 내실화

□ 기본방침

- 학교설립을 위한 학교용지 선정 시부터 교육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고, 운영 중인 학교 주변 각종 유해요인의 철저한 관리를 통해 학생들의 건전한 심신발달 도모

□ 현 황

- 『제2차 교육환경 보호 기본계획(‘23~’27)』 수립·시행(‘22.11.10.)
 - 3개 영역(법적·제도적 기반 안정화, 교육환경보호 지원체계 고도화, 건강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8개 세부 실천과제 포함
 - 시·도교육감은 교육환경보호기본계획을 토대로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필요
 - ※ 제2차 교육환경보호기본계획에 대한 세부 집행계획, 교육환경 보호 사업을 위한 자원 조달계획 등 포함
- 학교 주변 교육환경 보호 강화를 위한 관계부처 합동 단속 정례화
 - 교육부, 행정안전부, 여성가족부, 경찰청 합동으로 학교 주변 유해업소 등에 대한 합동 단속 실시 및 적발업소에 대한 신속한 이전·폐쇄 추진
-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에 대한 설치규제 정비
 - 당구장 및 만화대여업을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설치 금지시설에서 제외하고, 학습과 교육환경에 미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한국전통호텔업과 가족호텔업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설치를 허용할 수 있는 근거 마련(‘22.3.25 시행)
 - 「화학물질관리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사고대비물질을 상위 규정수량 이상 취급하는 시설을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설치를 금지(‘22.3.25 시행)
 -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레미콘 제조업(‘24.2.6 시행)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 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독자재활시설 추가(‘24.5.7 시행)
 - 「관광진흥법」에 따른 ‘카지노업’ 추가(‘24.10.22 시행)
 - 「교육환경보호법」 제9조제18호를 개정하여 담배의 범위를 확대*하고, 금지구역을 유치원 주변 교육환경보호구역까지 확대(‘26.2.15 시행)
 - * 연초(煙草)나 니코틴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을 포함

- 시·도교육환경보호위원회 및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 운영 내실화
 - 시·도교육환경보호위원회 위촉위원은 1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하여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활용('22.3.25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학부모는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만을 인정토록 명확히 규정('22.3.25 시행)
- 교육환경평가서 승인여부 검토절차 개선('22.6.29 시행)
 - 교육감은 시·도교육환경보호위원회에서 교육환경평가서를 심의하는 경우 전문기관의 검토의견 외 해당 구역 학교의 장의 의견을 함께 제공
- 교육환경보호제도 업무공유시스템 운영을 통한 제도 관련 질의·회신 사례 등 상시 제공('23.9.4 개통)
 - 교육환경평가 및 보호구역 관련 법령 질의·회신 사례 통합 제공, 기 제공된 사례로 해결이 어려운 업무에 대한 신규 정보 공유 등
 - ※ 교육환경업무공유시스템 접속(<https://epss.schoolkeepa.or.kr/qna>) 및 회원가입(교육부 행정전자서명인증) 후 이용
- 교육환경평가서 제출, 재작성, 이의신청 기한 개선 ('24.7.30 시행)
 - 교육감이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육환경평가서의 제출 기한을 건축허가 신청 예정일 60일 전에서 건축허가 신청 전으로 변경
 - 사유 발생시 교육환경평가서 재작성 기한을 기존 30일에서 45일로 변경
 - 교육환경평가서 승인결과에 관한 이의신청 기한을 기존 30일에서 45일로 변경
- 교육환경평가 승인 이후 사업계획 변경 시 사업시행자에게 교육감 통보 의무 부과('26.6.3. 시행)

□ 주요 업무

가. 교육환경보호기본계획에 따른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및 이행 철저

- 교육환경보호기본계획에 따른 세부집행계획, 교육환경 보호 사업을 위한 재원 조달계획 등을 포함한 2026년 교육환경보호시행계획 수립('25.12.31.)
 - 2026년 교육환경보호시행계획은 시·도교육환경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쳐 즉시 교육부장관에게 제출

- 2025년 교육환경보호시행계획에 대한 시행결과는 '26.3.31.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제출(제출방법 등은 별도 안내 예정)
- 한국교육환경보호원 지원기능 강화
 - 한국교육환경보호원이 교육감의 교육환경보호 지원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운영 분담금 확보 적극 협조)
 - 학교 인근 대규모 정비사업 또는 건축사업에 따른 학습환경 피해 예방을 위한 전문적 지원* 강화
 - * 시·도교육청별 주요 취약구역 내 현안문제 해결을 위하여 전문가 현장진단(교육환경 평가서 효과파악) 및 컨설팅 실시(필요시 관련분야 전문가 위촉)
 - 교육환경평가서 승인사업장 대상 또는 학교주변 환경현안에 따른 교육환경 영향에 대한 수준 예측 및 신속한 대응을 위한 기술지원 사업 지속 추진
 - ※ 교육환경평가 사후관리 기술지원, 교육환경 현안대응 기술지원 컨설팅 등

나. 교육환경평가제도 운영 철저

- 교육환경평가서 검토기능 강화
 - 교육환경평가서 검토 및 승인 시 법정 기한을 초과하는 사례로 민원이 빈발하고 있는 바, 각 시도교육청에서는 접수일로부터 45일 이내에 통보
 - ※ 민원처리 기간을 고려한 교육환경보호지정기관 및 관할 교육환경보호위원회 검토기간 준수(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 요청 → 요청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 회신)
 - ※ 평가서 작성 부실 등의 사유로 보완 등이 필요한 경우 해당 기간은 민원 처리기간에 산입되지 않는다는 내용을 통보하여 민원 처리기간에 대한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 교육감에게 제출된 교육환경평가서의 검토결과 불승인시 명확한 사유를 명시하여 통보(「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1항 및 제2항, 시행규칙 제6조)
 - 교육환경평가서 승인여부 검토 시 개발사업 시행자와 학교의 장이 별도의 협약을 하도록 하는 관행 금지 → 학교의 요청사항(학교의 장의 의견)은 시·도 교육환경보호위원회에서 제공하여 심의를 통해 확정 및 권고토록 제도 개선
 -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 시행('22.6.29)
- 「공공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인허가 관련 국토부 협조요청 사항 이행 안내('23.9.27.)

- 공공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인허가 관련 교육감에게 제출된 교육환경평가서는 제출일로부터 45일 내 회신
 - 권고사항 또는 변경된 사업계획을 반영한 교육환경평가서는 최종 주택건설 사업계획 확정 전 교육감에게 추가 제출 예정으로 법정 절차에 따라 검토 및 심의
 - 교육환경평가 심의 후 해당 학교용지의 경우 교육환경보호구역 설정 전까지 학교설립예정지에 준하여 관리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교육환경을 보호할 수 있는 조치 마련
 - 교육청 홈페이지에 예정 교육환경보호구역도를 게재하고, 관련 현황을 자치 단체에 통보하여 금지행위 및 시설 차단
 - 교육환경정보시스템을 통한 교육환경평가서 공개
 - 교육감이 승인한 교육환경평가서는 교육환경정보시스템을 통해 공개토록 하고 있는 바, 법정 기한 준수 철저
 - 단, 「개인정보 보호법」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저촉되는 민감정보 비식별 처리 철저
- ※ 교육환경평가서 공개건수: '21(380건) → '22(397건) → '23(554건) → '24(442건) → '25.11월(414건)
-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승인이 통보된 날부터 30일 이내 교육환경정보시스템을 통해 공개 의무화

다. 교육환경보호구역제도 운영 철저

- 교육환경보호구역 표지판 설치 및 관리기준 준수
 - 기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표지판을 새로운 교육환경보호구역 표지판으로 대체(학교별 예산 범위 내에서 점진적 교체 추진)
 - 교육환경보호구역 설정·고시업무 철저
 - 학교 설립예정지부터 교육환경보호구역 설정·고시 철저
 - 각급 학교(대학 포함)에 대한 보호구역 설정여부를 수시로 파악하여 미설정 학교 및 오류정보 확인 시 즉시 조치
- ※ 실제 학교의 위치와 토지이용계획 확인원과의 일치 여부 등의 검증 조치 필요
- 학교경계선 및 출입문 변경 등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조정 고시 철저

- 지방자치단체장이 학교설립 또는 정비계획 수립 시 교육환경보호 등을 위해 실시하는 교육환경평가를 누락하거나, 학교시설의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교육감과 사전 협의 없이 진행되지 않도록 조치
-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 심의 기능 강화
 - 교육환경정보시스템을 교육청 및 일선 학교 홈페이지에 연계하여 학교 주변 토지이용 정보제공 및 교육환경보호구역 포함 여부 확인 등을 위해 민원인이 교육청에 방문해야 하는 불편 해소 및 적극적 제도 홍보
 - 교육환경보호구역 심의 시 학생의 학습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심층 검토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강화하고, 정기적으로 심의현황 모니터링 후 해제율이 지속적으로 높아질 경우 심의결과 분석 등을 통한 대응방안 마련
 - ※ 해제율 : '19(49.7%) → '20(56.8%) → '21(58.9%) → '22(61.5%) → '23(55.4%) → '24(51.5%)
 -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에 대한 심의 시 현장 확인 및 철저 분석으로 불필요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운영 필요
 -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 심의 시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및 학부모 참관조치, 민원인의 기피신청, 학교장 의견을 반영한 재심의 등 교육환경보호위원회 구성·운영 관련 법령 적극 준수
-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유해업소 실태점검 및 관리 철저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에 의거 학교의 장과 교육장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을 방지하기 위한 실태점검 실시
 -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 중 신·변종업소 등 자유업종에 대해서는 관리카드 작성 및 관할 경찰서, 자치단체 등과 공유
 - ※ 관계부처 합동 집중단속(3월, 9월 예정)시 적극 협조
 - 보호구역 실태점검 시 위반업태 사례(예, 일반음식점이 단란주점 등 유흥업소와 같은 영업을 하는 경우) 확인 시 고발조치
 - 학교별로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각종업소(불법 영업시설 포함)의 위치를 표기한 보호구역관리도 비치
 - 고질적 유해업소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시설철거 등을 위한 적극적 행정 조치 요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 및 제3항에 의한 행정대집행 등)
- 교육환경보호구역 운영 관련 각종 정보 공개 철저

- 교육환경보호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에 대한 심의 정보는 심의 결과가 통보된 날 부터 3일 이내 교육환경정보시스템을 통해 공개(교육(지원)청에서 직접 공개하기가 어려운 경우 한국교육환경보호원에 관련 자료 송부 후 공개 요청)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등)

○ 교육환경보호제도 운영 학교 관계자 인식도 조사 적극 협조

- 매 3년 주기로 실시하고 있는 교육환경보호제도 운영에 대한 인식도 조사가 원활히 실시(학교 선정, 설문조사 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라. 교육환경보호제도 대국민 홍보 강화

- 교육환경보호구역 및 교육환경평가제도에 대한 대국민 홍보 및 관리강화로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여 행정력 제고

<교육환경보호제도 인지도 변화 추이>

(단위 : %)

구 분	2010년	2013년	2016년	2019년	2022년	2025년
학 생	19.9	21.5	30.5	46.9	68.3	42.6
학부모	36.1	40.4	53.5	69.6	79.4	59.0
교원	85.5	87.9	96.2	94.7	96.1	85.8

마. 업무담당자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참여

- 교육환경보호 정책의 이해 향상을 위한 이러닝 입문 과정인 '교육환경보호제도 이해'(12차시) 연수과정 운영(한국교육환경보호원 이러닝 교육과정 운영, '21년~)
- 교육환경보호업무 신규 담당공무원을 위한 단기 직무과정(1일 8시간, '25.3월) 및 직무연수 심화과정(18시간, '25.6월) 운영

바. 학교 인근 화학물질 취급사업장 인근 안전대책 강화방안 마련

- 학교 인근 화학물질 취급사업장 중 사고대비물질을 상위규정 수량 이상 취급하는 사업장에 정기 현황조사 및 해당 화학물질의 사고발생 시 영향범위 내 학교현황 파악
 - ※ 「교육환경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22.3) :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에 따라 사고대비물질을 다량 취급하는 시설의 관리에 관한 '위해관리계획서' 제출제도가 '상위 규정수량' 관리제도로 개정된 사항 반영
- 사고발생 시 영향범위 내 학교를 대상으로 주민 고지 내용 확인 및 학교 구성원 대상 교육 및 관련 제도 홍보 안내
- 긴급상황을 고려한 학교 내 대응체계 강화 등(학교현장 재난유형별 교육훈련 매뉴얼 반영, '19.4.2.)

※ 화학물질 취급사업장 인근 학교 안전대책 강화를 위한 후속조치 안내 참고(학생건강정책과 8339, '18.11.2)

2 학교 석면건축물 관리 철저

□ 기본방침

- 관련 법령에 따라 학교석면건축물을 철저히 관리하고, 학교석면건축물 관리실태에 대한 교육(지원)청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석면으로부터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 현 황

- 학교석면건축물 수는 석면 해체·제거 공사 등을 통해 연평균 약 15.6%씩 감소하고 있으나, '23년 12월 기준 4,555개의 학교석면건축물 존재

년도	전체 학교수	무석면 학교수	석면건축자재 학교수
2018	20,981	10,216	10,765
2019	20,697	11,114	9,583
2020	20,731	12,108	8,623
2021	20,718	13,284	7,434
2022	20,612	14,375	6,237
2023	20,424	15,869	4,555

- 「석면안전관리법」 시행('12.4.29) 이후 학교석면건축물 관리 강화를 위하여 '학교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지정 및 교육, 관련 법령의 준수 여부 점검, 연차별 관리계획에 따라 석면 해체·제거 등을 추진

[학교석면건축물 관리 업무 연혁]

- ▶ 「석면안전관리법」 시행에 따른 석면조사 및 관리방안 마련('12.4.)
- ▶ 석면지도 오류사항 확인 및 보완조치 등 내용을 포함한 「학교석면관리매뉴얼」 3차레* 개정·배포('16.3.~'19.1.)
 - * (1차) 석면조사 결과보고서 확인 및 조치 → (2차) 석면해체·제거시 사전석면의심 개소 확인 및 조치 → (3차) 석면지도 오류정보 확인 및 후속조치
- ▶ 석면조사 결과 다중 검증 및 석면지도 재검증, 학교석면관리매뉴얼 준수 철저 등의 내용을 포함한 '학교 석면관리 강화방안' 수립·시달('19.3.22.)
- ▶ 학교석면건축물 위해성 평가 부적정 지적 및 관리·감독 철저*(감사원, '20.3.)
 - * 석면 위해성 평가를 누락·부실하게 실시한 학교에 대하여 수정·보완 조치, 시·도교육청에서 석면 위해성 평가 관리 감독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 촉구
- ▶ 석면건축물 위해성평가 방법 개선*('20년), 나이스에 탑재되어 있는 상·하반기 각급학교 석면건축물 관리대장 정보를 추출하여 시·도교육청에서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 석면환경안전부로 제출(학생건강정책과-9207, '22.11.14.)**
 - * 「석면건축물의 위해성 평가 및 조치 방법」 개정고시('20.7.14.)
 - ** 석면관리종합정보망을 통한 관리대장제출 의무화(석면안전관리법 개정, '22.12.10.)
- ▶ 학교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법정교육의 원활한 이수를 위한 위탁기관 추가 지정('22.5.)

- 학교석면건축물의 관리 강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학교의 위해성 평가 결과의 적정성 등에 대한 논란이 발생하여 보다 촘촘한 관리가 필요한 상황

□ 주요 업무

가. 학교 석면건축물 관리 철저

○ 학교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지정·신고 및 의무교육(법정·보수) 이수

- (법적근거) 「석면안전관리법」 제23조 및 제24조,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3조 및 제35조,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1조, 제32조, 33조
- (지정·신고) 석면 함유 건축자재를 사용하는 학교의 장은 본인, 해당 건축물의 점유자 또는 관리자 중에서 1명 이상을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으로 지정 후 교육감(장)에게 제출
- (신고시기) 지정신고는 건축물석면조사 결과를 제출할 때, 변경신고는 인사 등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교육감(장)에게 신고
- (교육) 학교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으로 신고 또는 변경신고(교육을 받지 않은 자에 한하여 적용)를 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8시간 이상의 석면안전관리교육(신규자 교육) 이수
 - ※ 학교석면안전관리인 교육 위탁기관 및 위탁업무(교육부 고시 제2022-11호, 2022.5.2.)
- 학교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은 신규자 교육 받은 날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 4시간 이상의 보수교육 이수
 - ※ 법정교육 미이수시 과태료 부과 대상(석면안전관리법 제49조) :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미지정(미신고 또는 변경 미신고 포함), 법정교육 미이수자 각각 500만원 이하 과태료
- 학교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신규자 교육은 집합교육으로, 보수교육은 집합교육 또는 원격교육 방법으로 가능한 바, 법정교육 이수상태 확인 철저
 - ※ 일부 신규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이 보수교육인 원격교육을 이수하고, 신규자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등록하는 사례 확인

○ 학교석면건축물 관리의 안전성·신뢰도 제고

- 학교에서는 「학교 석면관리 매뉴얼」(‘19.1.28, 5차 개정) 준수하여 관리
- 학교 석면 조사결과(석면지도, 위해성평가 등)에 대한 재확인 등을 통해 오류사항 확인 시 보완조치

- 6개월마다 석면건축물의 손상 상태, 석면비산 가능성 등을 조사(위해성평가*) 실시 및 후속 조치 철저**
 - * 석면지도에 표시된 석면함유 자재를 대상으로 각각의 실별로 위해성평가를 실시하고, 석면건축물 관리대장(NEIS에 상·하반기 차수 생성)에 그 결과를 기재(동일물질별 대표적인 위해성평가 결과만 기재되어 있는 경우 반드시 개별 실별로 작성 후 기재)
 - ** 위해성평가 결과 ‘중간’ 등급 이상인 학교에 대해서는 긴급 개·보수(완전 해체·제거가 어려울 경우 파손부위 또는 파손 우려 부위 등에 대한 긴급조치* 등 실시) 등 우선 조치
 - ※ 학교 석면 위해성 평가 결과를 석면건축물 관리대장(NEIS에 상·하반기)에 등재하기 전 학교운영위원회 보고 등을 통해 교직원, 학부모에게 관련 정보를 공개하여 신뢰성 있고 투명하게 관리
- 학교 건축물에 대한 유지·보수공사 시 석면 관련 정보제공(석면함유 건축자재 분포 및 위해성 등급 등) 및 감시·감독 철저
- 석면 해체·제거·손상 발생 등으로 석면함유 자재의 위치 및 면적 등이 변경되었을 경우 나이스에 필수 반영(석면 함유 건축자재의 유형 및 면적 확인)
- 학생, 학부모, 교직원 등을 대상으로 교내 석면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 및 석면안전교육 실시
 - ※ 학교 홈페이지, 교내 방송, 가정통신문 등을 통한 학교 구성원(학생, 교직원, 학부모) 대상 석면함유 건축자재 분포 및 위해성등급 공개

나. 교육(지원)청의 학교석면관리 실태 지도·점검 강화

- 학교 석면위해성 평가 결과에 대한 확인·점검 체계 마련 및 역량강화 지원
 - 교육(지원)청 단위에서 외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석면 위해성 평가 검토(점검)단을 구성하여 학교의 석면 위해성 평가 결과에 대한 표본 확인·검증 시행
 - 학교내 관리가 미흡한 학교를 대상으로 업무지도 또는 컨설팅 지원
 - ※ 시·도교육청에서 석면 위해성 평가 관리 감독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 촉구(‘20년 감사원)
 - 교육(지원)청에서 학교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을 대상으로 협의(설명)회 또는 전문교육 실시하여 석면 관리에 대한 전문성 제고
 - ※ 최초 조사 시 무석면 학교, 최초 조사 이후 석면해체·제거를 통해 무석면으로 관리중인 구역 등에 대해서도 확인조치 → 무석면학교 인증 전까지는 석면학교에 준수하여 관리
 - 석면해체·제거 이후 무석면학교 인증 검토시에는 해당 학교 현장을 확인(석면 의심구역 존재여부 등)하고, 필요시 전문 조사업체를 동행토록 하는 등 확인조치

3 학교 먹는 물 위생관리 강화

□ 기본방침

- 학교 먹는 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위생적인 물의 공급을 통해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보호 및 유지·증진에 기여

□ 현 황

- '25. 6월 기준 농·어촌지역 등 상수도 인입이 어려워 지하수를 먹는물로 사용하는 학교는 전체 학교의 0.8%인 102교 수준

<급수시설별 각급 학교 현황('25. 6)>

구 분		초등학교	중 학 교	고등학교	특수/각종	계
전체 학교수		6,299	3,295	2,382	297	12,273
급 수 시설 (%)	상수도	6,207 (98.5)	3,251 (98.7)	2,351 (98.7)	292 (98.3)	12,101 (98.6)
	지하수	58 (0.9)	28 (0.8)	12 (0.5)	4 (1.3)	102 (0.8)
	상수도+지하수	25 (0.4)	14 (0.4)	19 (0.8)	1 (0.3)	59 (0.5)
	외부공급	9 (0.1)	1 (0.1)	0 (0.0)	0 (0.0)	10 (0.1)

※ 학교 수에 분교장이 포함, 상수도+지하수 공급학교는 지하수사용학교에 포함

- 학교 먹는물에 대한 수질검사 결과
 - 지하수는 지표수의 오염 등으로 수질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검사 시기에 따라 수질기준 초과학교 유동적(매분기 1차 측정결과 초과학교)
 - ※ ('18.2분기) 5.5% → ('19.2분기) 7.9% → ('20.2분기) 10.1% → ('21.2분기) 8.8% → ('22.2분기) 11.8%
- 지하수 중 자연방사성 물질인 라돈 등에 대한 지속적 실태조사 및 조사결과에 따른 대책 마련 필요

□ 주요 업무

가. 먹는 물의 공급원칙

- 학생 및 교직원에게 공급하는 먹는 물은 「먹는물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수질기준에 적합한 물을 제공

나. 수돗물 관리대책

- 신축학교 및 상수도 인입학교는 수돗물을 직결급수 조치
 - 지방자치단체(상수도사업본부)와의 협의를 통하여 노후수도관 교체 등 안정적이고,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 강구
- 직결급수가 곤란한 시설에 대하여는 시설 및 운영관리 철저(「수도법 시행규칙」 제22조의4, 제22조의6 및 별표 6의2)
 - 저수조 용량 축소 또는 수위계 설치 등을 통해 체류시간을 최대한 단축
 - 저수조의 청소주기(반기 1회 이상) 및 점검주기(월 1회) 준수 철저, 점검 일지 작성·보관, 관리자 지정 등 책임관리제 수립·시행
 - 저수조 신축 또는 1개월 이상 사용 중단된 경우 사용 전 청소 실시
 - 청소 시 사용된 약품에 의하여 수질기준이 초과되지 않도록 주의
 - ※ 참고사항 : 소방용수 또는 화장실 용수 등으로만 사용되는 저수조는 청소대상에서 제외. 단, 화장실 세면시설로 연결된 저수조는 청소 대상 포함
- 먹는물로 적합하게 공급되는 수돗물에 살균기 등 불필요한 장치에 대한 설치비 지원 등 부적정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철저
- 수질검사 실시
 - 「수도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건축연면적이 5천 제곱미터 이상(건축물 또는 시설 안의 주차장 면적은 제외)인 학교에 대한 정기 수질검사 실시 철저
 - 저수조 또는 저수조 최단 수도꼭지 채수하여 탁도, 수소이온농도, 잔류염소, 일반세균, 총대장균군, 분원성대장균군 또는 대장균 등 6개 항목(연 1회 이상) 검사 실시
 - ⇒ 수질검사 결과는 게시판 게시 또는 가정통신문 등을 통해 안내 조치
 - ※ 참고사항 : 소방용수 또는 화장실 용수 등으로만 사용되는 저수조는 수질검사 제외. 단, 화장실 세면시설로 연결된 저수조는 검사대상 포함

- 「수도법」 제33조제4항에 따라 건축연면적 5천 제곱미터 이상인 학교는 급수관의 세척 등 관리 철저
 - 준공검사(급수관의 갱생·교체 등의 조치를 한 경우 포함) 후 5년이 지난날부터 2년 주기로 급수관의 상태에 대한 일반검사 실시
 - 『 탁도, 수소이온 농도, 색도, 철에 대한 검사기준 초과 시 : 급수관 세척 실시
 - 『 급수관이 아연도강관인 경우 검사항목 중 검사기준을 초과하는 항목이 한 개 이상 있으면 반드시 이를 갱생하거나 교체
 - 기타 관련 사항은 「수도법」 등 참고
-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 이행

건축연면적 5천 제곱미터 미만인 학교도 저수조 및 옥내급수관 수질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행정안내 조치 → 수질검사 결과 부적합시 적극 개선조치 지도

- 상기 수질검사 등 조치사항은 「수도법」에 따라 사립학교도 동일하게 검사 실시 안내
- 「수도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에 따라 건축 연면적 5천 제곱미터 이상인 학교는 수도시설의 관리에 관한 교육 이수
 - ※ 신규 지정 시 1년 이내, 이후 매 5년 마다 8시간

다. 지하수 관리대책

-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지역 상수도의 학교 내 인입을 적극 추진
 - 특히, 수질검사 결과 수질 변화가 심하거나, 반복적으로 오염물질이 검출되는 학교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학교별로 구체적인 추진계획 수립
- 지하수 수질검사 실시 철저
 - 「지하수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지하수를 음용수 또는 생활용수로 사용 시 「먹는물관리법」 제5조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기준 또는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41조 및 [별표9]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수질검사 실시

<수질검사 주기 및 항목>

구 분	주 기	수질검사 항목	
		일부 항목(3회/년)	전 항목(1회/년)
음용수	분기 1회	일반세균, 총대장균군, 대장균, 암모니아성질소, 질산성질소, 과망간산칼륨소비량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별표1
생활용수	3년마다 1회	「지하수법」 제20조 및 「지하수법 시행 규칙」 제38조 참고 ※ 1일 양수능력이 30톤 이상인 경우. 다만, 청소용·조경용·공사용·소방용 등은 제외	

- 음용목적의 지하수 수질검사는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에 관한 규칙」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실시(「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 별표5 라목)
- 정수 또는 소독이후 전 항목 및 일부항목 검사결과 기준치를 초과한 지하수에 대해서는 원수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초과 항목에 따른 조치 강구(타관정 개발, 초과항목에 따른 정수장치 도입 등)
- 전 항목 검사결과 기준치를 초과한 항목에 대해서는 재검사 결과 적합 판정된 경우라도 매분기 별도검사 실시
- 수질검사 결과를 받았다 하더라도 지하수의 수질은 수시로 변화하여 미생물 및 유해물질이 함유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가급적 끓여서 공급하는 등의 안전 확보방안 강구
- 오존살균장치를 경유하여 급식시설 및 음용수로 이용할 경우 브롬산염 발생 최소 및 제거 대책 마련 후 사용
- '14년 조사한 자연방사성물질 함유실태 조사결과 원수에서 적용기준을 초과한 학교의 경우 정수장치 관리 철저 등 안전성 확보방안 강구
- 지역 상수도의 교내 인입이 불가능한 학교는 지하수 개발 시 지하 암반층까지 굴착토록 하여 안전한 식수를 학생들에게 공급

라. 정수기 관리대책

- 정수기는 그 간 먹는물 공급시설별 수질검사 결과, 위생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치

- 설치된 정수기는 수질검사, 소모품 교체, 내·외부 청소 등 관리 철저
 - 정수기를 통해 공급되는 물에 대한 수질검사 의무화(분기 1회)
 - 검사항목 : 총대장균군, 탁도
 - ※ 냉·온수기(먹는샘물)의 경우 수질검사 대상에서 제외하되, 정수기와 유사(저수기능 또는 필터 설치 등)한 냉·온수기는 수질검사 대상에 포함
 - 수질검사는 청소 또는 소독 직전 실시 등을 통해 청소 및 소독 주기 설정
 - ※ 수질검사 결과, 부적합한 정수기는 과감히 철거조치(최종 부적합 또는 직전 4회 조사 결과 2회 이상 1차 부적합 판정된 경우)하고, 학교 수질관리 실태 상시관리를 위하여 수질검사 결과 수합시 직전 청소 또는 소독 여부 확인 조치 강구
 - 실외 또는 직사광선이 비추는 곳, 화장실과 가까운 곳, 냉·난방기 앞 등 설치 금지
 - 필터는 해당 정수기의 사용방법 설명서에 따라 정기적으로 교환하고, 고온·고압증기소독방법, 약품과 증기소독 병행방법, 전기분해방법 등으로 최소 6개월마다 1회 이상 물과 접촉하는 부분에 대해 청소소독 실시(이 경우 소독에 의한 약품이 정수기에 잔류하지 않도록 조치)
 - 정수기별 관리카드를 비치하고, 관리현황 기록을 유지
 - 냉·온수기의 에어필터는 1년마다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교환하고, 고온·고압증기소독방법, 약품과 증기소독의 병행방법 등으로 6개월마다 1회 이상 물과 접촉하는 부분에 대해 청소소독을 실시(이 경우 소독에 사용한 약품이 정수기에 잔류하지 않도록 조치)
 - 2019년 학교 대용량 직수정수기 설치사업으로 설치된 정수기에 대한 사용 및 관리실태 점검 철저
- 온수제조기 기구 또는 음수기 등에 대한 관리 철저
 - 정수 기능을 포함한 제품의 경우 정수기와 동일한 관리기준 적용 고려
 - 특히, 저수조 및 배관 청소상태 등 주기적 확인 및 온도 조절기, 제품의 각 기능상태 및 램프 작동상태 등 수시 확인을 통한 성능 유지

마. 학교 먹는물(수돗물, 지하수, 정수기 물) 관리실태 파악 및 지도·감독 철저

- 학교 저수조수, 수돗물급수관, 지하수 및 정수기 등에 대한 수질검사 시료채수는 교육청 또는 학교 담당자 임회하에 채수 및 봉인
 - ※ 지하수 수질검사 방법 등은 해당 자치단체 등과 협의 필요

- 수질검사기관에서 학교의 수질검사 시 그 결과를 해당학교 뿐만 아니라 해당 교육지원청에도 통보할 수 있도록 조치
 - ⇒ 교육청에서는 관내 학교 먹는 물 위생관리 지도 시 활용
- 시·도교육청 자체계획에 따라, 관내 학교에 설치된 정수기 및 냉·온수기 등에 대한 자체점검 실시로 부실관리 예방
 - 관내 정수기 중 10% 내외 수준의 정수기를 대상으로 교육감(장)이 직접 표본 검사를 실시하고, 그 실적을 제출(매분기)
- 관내 먹는 물 수질검사 기관에 대한 수사 또는 행정처분 사항에 대해서는 수사기관 또는 인·허가 기관이 해당 사항을 시·도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과 공유할 수 있는 협조체제 구축

4

학교시설 내 공기 질 등 환경위생 개선

□ 기본방침

- 학교생활의 대부분을 교실에서 보내고 있는 성장기 학생들에게 실내 공기질 관리는 매우 중요한 바, 학교 신축 시부터 건축자재로부터의 오염 가능성을 배제하고, 정기적인 확인 및 관리를 통하여 학생 및 교직원에게 쾌적한 실내 환경 제공
- 도로 및 철도·비행장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피해 방지 및 학교 폐기물의 위생적인 처리방안 강구

□ 현 황

- 기존 학교는 학교시설 내 특성을 고려하여 유지·관리 항목과 항목별 측정 시기 등을 구분하여 적용
 - 학교시설 내 공기질 측정은 미세먼지, 이산화탄소 등 17종에 대하여 대상시설의 구조와 용도, 예상되는 오염물질 등의 발생원 분포 등을 고려하여 실시
 - 공기질 측정결과 라돈(Rn) 0.18% > 총휘발성유기화합물 0.09% > 총부유세균 0.01% 순으로 초과한 것으로 조사(2022년 상반기 기준)
- 신·증·개축 학교에 대한 실내 공기질은 유지항목 【폼알데하이드(HCHO), 총휘발성유기화합물(TVOC)] 외 개별유기화합물(VOCs)에 대한 측정 의무화
 - ※ VOCs :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자일렌, 스티렌 등 5종은 측정 후 고지
 - ※ 기준초과 학교는 우선 환기량을 늘리고, Bake-Out(실내 내부를 난방 등으로 일시적으로 온도를 높인 후 환기시키는 방법) 등을 실시한 후 2, 3차 측정
-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교실 내 공기질 관리 강화를 위한 법령 개정('19.4. / '19.7)
 - 유치원 및 초·중등학교 각 교실에 공기정화장치 및 미세먼지를 측정하는 기기의 설치
 - 공기의 질 점검시 학부모 등의 참관을 허용하고, 측정 및 조치결과를 학교의 홈페이지 또는 교육부장관이 운영하는 공시 관련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
 - 학교의 장이 환경위생을 관리해야 하는 대상 시설이 교사에서 학교시설(교사대지(校舍垓地)·체육장, 교사·체육관·기숙사 및 급식시설, 교사대지 또는 체육장 안에 설치되는 강당)로 확대

- 교실 내 공기질 점검항목 중 미세먼지(PM10), 폼알데하이드의 유지기준 강화 및 공기질 점검주기(연 1회 이상 → 상·하반기 각각 1회 이상) 단축
- 학교 미세먼지 관리 중요성 강화
 - 전국 모든 학교의 교실 내 공기정화장치 설치 완료('20.3월) 및 공기정화장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운영 안내서 제작 및 개정·보급(5차 개정, '21.8월)
 - 미세먼지 관리대책 추진실태 관련 감사원 감사실시('19.11~'20.1)
 - ※ 공기청정기 설치 및 유지관리 방안 마련 등 종합적 개선대책 마련, 실내공기질 측정의 정확성 향상 및 측정결과의 활용성 제고방안 마련 등
-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에 대한 점검횟수와 학교의 장에게 교사 안에서의 공기 질을 측정하는 장비에 대한 정기점검 횟수를 각각 연 2회 이상으로 확대(「학교보건법」 개정, '22.6.29. 시행)
- 광산란법으로 측정한 결과가 기준농도를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경우 (PM10: $67.5\mu\text{g}/\text{m}^3 \sim 75\mu\text{g}/\text{m}^3$ 이하 및 PM2.5: $31.5\mu\text{g}/\text{m}^3 \sim 35\mu\text{g}/\text{m}^3$ 이하)인 경우에는 중량법, 베타선흡수법으로 측정할 수 있는 근거 마련(학교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점검기준 개정, '22.7.14. 시행)

□ 주요 업무

가. 학교시설 내 공기질 관리체계 구축

- 학교시설 내 환경위생관리 체계 구축
 - 학교장은 환경위생 총괄책임자로서 업무의 영역, 전문성 및 당해 학교의 업무 형편에 따라 학교시설 내 환경위생관리를 위한 환경위생관리자를 복수로 지정하는 등 환경위생업무로 인한 업무 부담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조치
 - 환경위생관리자가 환경위생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요구하는 경우 관련 교직원은 적극 협조하도록 안내 조치
 - 교육감은 학교장이 지정한 환경위생관리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전문교육 실시 철저('18년 이후 온라인 연수과정 개설 운영 중)
 - 교육감은 일선 학교에서 환경위생관리의 중요성 인식 및 관리체계 확립을 위한 학교장 대상 특별연수 실시
 - 관내 학교의 환경위생 관리에 개선이 필요한 경우 행정적·재정적 지원 적극 추진

○ 일상점검, 정기점검 및 특별점검 시행철저

- 교육감(장)은 관내 모든 학교에서 일상점검, 정기점검 및 특별점검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
- 교육감(장)은 학교장으로부터 일상점검, 정기점검 및 특별점검을 실시하는데 지원요청이 있는 경우 적극 지원(연간 지원계획 수립·시행, 점검 인력 및 예산지원 등)
- 정기점검 결과에 대한 신뢰성 제고를 위한 시·도교육청 차원의 각급 학교 관리 강화('21. 정부위 국정감사 지적사항)

※ 시·도교육청이 외부 전문업체에 공기질 점검을 의뢰하는 경우 해당 학교와 점검일정을 사전에 협의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 등 적극 검토

→ 외부인 방문 관리를 위한 별도의 지침을 운영중인 경우 탄력적 운영하고, 사전 관내 학교에 측정방법 개선사항을 안내하여 점검 당일 원활한 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

- 시·도교육청별 관내 학교 중 심각한 유해물질의 지속적 발생의 가능성이 있는 학교에 대해서는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대책 마련(대상 학교의 규모 및 방법 등은 시·도교육청 여건을 고려하여 결정)
- 교육감(장)은 공기질 취약(우려) 학교를 대상으로 공기정화장치 가동, 미세먼지측정기기 활용, 학교 내 환경위생 관리 등에 대한 컨설팅 및 공기질 점검 등을 포함한 특별점검 적극 추진

※ 미세먼지계절관리제(12월~3월) 기간 내 컨설팅 및 특별점검 실적은 매주 단위 파악 예정

○ 학교시설 내 공기 질 측정 및 관리의 신뢰성 제고 강화

- 공기질 점검 시 '학교 내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점검기준' 및 '학교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관리 매뉴얼'(6차 개정, '21.12월)에 따른 측정방법 등 준수 철저
- 공기질 측정을 위한 표본교실은 원칙적으로 측정자가 해당 시설 방문 후 직접 선정(학교 관계자는 측정의 편의성을 위한 측정장소 등 안내 협조)
- 공기질 점검 대상 교실이 '부적합' 판정시 해당 교실뿐만 아니라 전체교실에 대한 오염물질 제거 및 취약요인 개선 조치(부적합 판정에 따른 재측정시 전체 교실 대상 무작위 표본 선정 후 재측정-1차 측정 교실 포함, 이 경우 재측정은 가급적 시·도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 주관으로 실시 : 컨설팅 및 개선효과 파악)
- 공기질 측정결과 보고서 작성(제출)시 측정상황(사진 등)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 외부 전문기관에 의한 공기질 측정시 교육청 관계자 불시 현장점검 또는 학운위 위원(학부모 포함) 참관 등을 통한 통제방안 마련

- 시·도교육청별 공기질 담당 공무원에 대한 전문성 함양을 위한 전문연수 적극 추진
- 외기 기상상태에 따른 교실 내 미세먼지 수준의 정확한 진단을 위하여 관내 학교의 일정비율(시·도교육청 실정을 고려하여 설정)에 대해서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기(12~3월)에 보다 정밀한 방법(중량법, 베타선흡수법)으로 교실 내 미세먼지 측정 실시 추진
- 공기질 검사가 특정 기간에 편중되지 않고 연간 고르게 실시될 수 있도록 그간 측정 비중이 낮았던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기 측정 비중 확대 노력
 - ※ 제2차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관계부처 합동, '24.11월)
- 공기질 검사 결과는 학교 홈페이지 또는 가정통신문 등을 통해 안내 (정보공시와는 별도로 검사결과를 통보 받은 즉시 안내)
- 「학교보건법」 개정('22.6.29. 시행) 사항에 따른 후속조치 철저
 - 현재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점검기준 개정을 통해 현재 연 1회 이상 점검항목인 환기, 채광 및 조도, 소음, 상수도 및 하수도에 대한 점검주기 단축
 - 공기질을 측정하는 장비에 대해서는 소급성 확보를 위한 검사 또는 정도검사를 연 2회 이상 실시
- 학교 맞춤형 미세먼지 관리기술 개발사업 추진
 - '19년~'24년 간 교육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동으로 학교 맞춤형 미세먼지 관리기술개발 사업 추진
 - 사업 완료('24.4월) 후 학교를 위한 '중앙 공조·청정 시스템', '온습도 제어 복합 시스템', '공기환경 종합진단 매뉴얼' 등 결과물의 학교 현장 사용에 적극 협조
- 유치원 공기질 관리수준 향상을 위한 방안 강구
 - 시·도교육청별 유아교육 담당부서와 협의하여 별도의 유지·관리기준을 정하지 않은 유치원의 경우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4의2에 따른 학교 시설 내 공기 질 유지·관리기준을 준수토록 교육 및 홍보 추진
 - ※ 병설유치원의 경우 규모 등을 고려하여 공기질 점검시 유치원 교실 포함 또는 점검지점 1개소 추가 등 검토, 단설 및 사립유치원의 경우 학교의 규모 등을 고려 측정항목 및 지점 검토(유치원 환경관리 담당부서와의 협의를 통해 공기질 점검 등 환경위생 관리현황 정기 모니터링 등 사후관리 철저)

나. 학교시설 내 공기질 관리강화

- 「학교보건법」 및 하위법령 개정사항 준수 철저
 - 학교의 장이 환경위생을 관리해야하는 대상이 확대('19.10)된 바, 공기질 점검 등이 누락되지 않도록 관리 철저

- 공기 질을 측정하는 장비에 대한 정기검사 의무화에 따라, 교육감(장)이 직접 공기 질 측정을 하는 경우 소급성 확보를 위한 검사를 실시(연 2회*)하고, 외부 기관에 위탁하는 경우 정도검사 실시 여부 등을 확인(검사결과표 기재)
 - *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본문에 따른 정도검사를 받는 시험장비는 소관 법률에서 정한 주기에 따른 검사 실시
- 유치원 및 초·중등학교의 교실 내 미세먼지를 측정하는 기기의 설치 추진
 - ※ 초미세먼지 측정기의 경우 성능인증 제품을 사용(사용목적에 따라 성능인증 등급 결정)
- 공기 질 등 유지기준을 적용받는 시설이 추가(기숙사, 급식실, 체육관 및 강당 등)된 점을 감안하여 대상 오염물질 항목에 대한 점검이 누락되지 않도록 관리 철저
- 교실 내 설치된 공기정화장치 및 미세먼지 측정기기 관리 철저
- 체육관, 강당 등 대규모 시설에 설치를 추진하는 경우 관련 전문가의 자문 등을 거쳐 설치 추진
- ‘학교 공기정화장치 설치 및 유지관리 업무안내서’(21.8월)에 설치 및 관리 방법 등 준수 철저
 - ※ 공기정화장치 관리주기(안) : 점검 및 청소(1~2개월), 필터교체(3~6개월)
- 임대설치된 공기정화장치의 경우 관리업체의 관리실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구입설치한 공기정화장치의 경우 학교에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행정·재정적 지원(필터교체비용지원, 외부업체를 통한 위탁관리 등) 검토
- 공기정화장치의 효율적 가동 및 관리를 위하여 매월 정기점검 실시(학교 공기정화장치 설치 및 유지관리 업무안내서 별지 서식 활용)
- 미세먼지를 측정하는 기기 설치 독려 및 관리(사용방법 등 포함)철저
- 신·증·개축 및 리모델링 시 학교시설 내 환경위생 관련규정 적용 철저
- 학교설립·인가(학교 설립계획) 시에는 「학교보건법」 제4조의 규정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 및 조치
- 학교 신·증·개축 및 리모델링 시 사용하는 건축재료 및 가구류 등은 화학물질의 방출이 적은 친환경 건축자재 사용
 - ※ 책상, 의자 등 학교 비품은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하다는 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할 것 ⇒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개정(16. 9월)

- 신·증·개축 및 리모델링 완료 시에는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 및 「학교 내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점검기준」에 따라 공기 질 측정
 - 측정항목(8개) : 폼알데하이드, 총휘발성유기화합물, 라돈(건축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기숙사로 한정), 벤젠·톨루엔·에틸벤젠·자일렌·스티렌
 - ※ 벤젠($30\mu\text{g}/\text{m}^3$ 이하), 톨루엔($1,000\mu\text{g}/\text{m}^3$ 이하), 에틸벤젠($360\mu\text{g}/\text{m}^3$ 이하), 자일렌($700\mu\text{g}/\text{m}^3$ 이하), 스티렌($300\mu\text{g}/\text{m}^3$ 이하)
- 공기질 유지기준 초과 시 저감조치 후 기준치 이내에서 학교시설 사용
- 학교시설 안에서의 라돈 및 석면에 대한 점검강화 및 신속한 후속조치
 - 라돈 점검결과를 토대로 교실 내 라돈 저감을 위한 조치 강화
 - 라돈 고농도 의심지역 내 학교의 경우 환기의 중요성 등에 대한 학교구성원 인식제고를 위한 교육 및 홍보 적극 추진
 - 석면의 경우 석면건축물의 손상상태 및 비산 가능성 또는 진동에 의한 손상 가능성(위해성평가 결과 고려)이 있는 교실을 대상으로 정기점검 실시
- 냉·난방기기 위생상의 조치 강화
 - 필터 등 정기적인 소모품류 교체 및 기기 청소 등을 통한 위생상 안전조치 강화

다. 학교 소음피해 방지대책

- 학교 소음도 측정 및 방음시설 설치요구
 - 매년 상반기 중 외부소음으로 인하여 수업에 지장이 있는 학교를 조사한 후 교육청 담당공무원이 자가 측정 우선실시(보통소음계 이상)
 - 소음도가 높거나 방음대책 추진대상 학교에 대하여는 보건환경연구원 등에 학교 또는 교육청이 공식적으로 소음도 측정 의뢰
 - 소음도 측정결과 도로 및 철도소음, 항공기소음 허용기준 초과학교에 대하여는 소음발생원 관리기관에 방음시설 설치요구
 - ※ “군 시설 인근 소음 피해 학교에 대한 지원 안내”(20.11.12, '20년 교육부 국정감사 후속조치)
 - 고속도로 이용 차량에 의한 소음피해 학교 관리강화를 위하여 학교 부지 경계선이 고속도로와 30미터 이내인 학교의 소음 점검방법* 개선
 - * 소음이 가장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교실의 창문 외부 0.5~1m 지점에서 소음측정(30분 간격으로 5분간 측정 후 산술평균)

○ 학교설립자의 방음대책

- 소음유발지역, 소음피해 지역에 학교를 나중에 설립한 경우는 학교설립자가 방음시설을 설치하고 유지비용도 부담하는 것이 원칙
- 소음피해 예상지역에는 학교 신설을 금지하되, 불가피한 경우는 학교설립자가 충분한 방음시설을 학교기본설계에 포함하고, 그 유지비도 학교운영비에 계상하여야 함

○ 항공기소음 관련 방음대책

- 「항공법」에 의한 항공기소음 방지시설 및 냉방시설을 지원받은 경우는 시설 인수자(학교 및 교육청)가 유지비용을 부담
- 이중창의 노후화로 밀폐성이 떨어지는 학교의 방음창 개·보수 및 냉방시설의 유지보수와 전기료 등의 운영비 지원

※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공항소음대책사업의 계획수립 등)

라. 기타 환경위생 관리

○ 청소 및 소독

- 「학교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점검기준」에 따라 학교 내 청결유무, 청소 용구의 수량 및 보관상태, 일상청소 및 대청소 등의 실시여부 등을 조사하며, 취약한 장소 및 시기에 정기적인 소독 실시 여부를 확인

※ 학교의장은 학교 환경위생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청소 예산 등을 편성하여 집행 가능

○ 화장실 설치 및 관리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에 따른 설치기준 준수(특히, 유치원 남아 화장실에 가림막 설치 등)

※ 여성가족부 특정성별영향평가 개선 권고 과제(2019.7월)

○ 유해중금속 등 유해물질의 예방 및 관리기준 준수 철저

- 「환경보건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어린이활동공간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환경안전관리기준에 적합하게 유지·관리되고 있는지를 점검*토록 하고, 점검결과에 따라 적극 조치

* 어린이활동공간을 신축한 때, 연면적 33제곱미터 이상 증축, 70제곱미터 이상 수선(도료, 마감재료 또는 합성고무 재질의 바닥재를 사용하여 수선하는 경우로 한정)한 때에는 30일 이내 관련 전문기관을 통해 환경안전관리기준에 적합하게 유지·관리되고 있는지 확인



IV. 급식 관리

1. 학교급식 운영의 내실화
2. 학교급식 위생·안전관리 강화
3. 안전하고 우수한 식재료 사용
4. 학교급식 영양관리 강화
5. 영양·식생활 교육 및 지도강화
6. 학교급식 지원체계 구축 및 행정지원 강화

1

학교급식 운영 내실화

□ 기본방침

- 학교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고 성장기 학생들의 건전한 심신발달 등을 위해 급식 운영 관리의 내실화

□ 현 황

- 2024학년도(‘25.2월 기준) 전국 초·중·고·특수학교 12,047교(100%)에서 518만명 급식실시
- 현재 모든 초·중·고·특수학교에서 무상급식(점심) 제공(교육청·지자체 추진)

□ 주요 업무

가. 학교급식 운영방법의 내실화

- 「학교급식법」 제15조에 따라 학교급식은 직영급식을 원칙*으로 하되, 학교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부분위탁 또는 급식여건상 불가피한 경우 교육감이 학교급식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한적 위탁급식 허용
 - 특히, 초·중학교에서 위탁급식을 추진할 경우는 관할 교육지원청 승인
- * 수업일의 점심시간에 제공되는 학교급식을 제외한 학교급식에 대해서도 「학교급식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학교급식 직영원칙 적용(법제처, ‘15.8.21)
- 전부위탁 또는 조리·배식 및 세척업무만 위탁하는 부분위탁의 경우에도 급식 품질과 안전성을 높일 수 있도록 급식운영 내실화
 - 식재료 원산지에 대한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및 원산지 표시제 등 이행 철저

나. 학교급식위원회 운영 활성화

- 시·도교육청에 ‘학교급식위원회’ 설치 및 운영의 활성화
 -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위원장(부교육감) 등 15인 이내로 구성
 - ※ 식재료 품질관리 강화를 위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장 위촉 협조
 - 학교급식에 관한 계획 및 급식경비 지원 등에 관한 심의기능 수행

○ 지자체 등 관계기관 간 협업체계 구축

- 지자체가 주관하는 학교급식지원 및 식중독 예방관리 등 식품안전시책 추진방향과 연계하여 관계기관 간 협업체계 강화

다. 학교급식 이해 증진을 위한 소통 강화

○ 학교급식소위원회 구성·운영

- 시·도교육청은 ‘학교급식소위원회’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 학교는 ‘급식소위원회’ 의무 설치 등을 통해 학부모 참여 보장 및 운영 활성화
 - ※ 급식소위원회에 영양교사 및 영양사 등을 간사로 참여(‘05.12월, 국가청렴위 권고)

- 학교 단위 ‘급식모니터’는 ‘급식소위원회’와 연계(통합)하는 등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희망하는 학부모를 대상으로 ‘모니터요원 인력풀’을 구성·활용
 - ※ 안전한 학교급식 제공을 위해 단위 학교의 학부모가 참여하는 ‘급식모니터’ 활동 운영

○ 열린 학교급식 운영

- 학교 홈페이지, 식생활교육관 등에 쌍방향 의사소통이 가능한 ‘급식게시판’ 운영 및 ‘학교급식 관련 설문조사’ 등을 통해 학생과 학부모의 급식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급식 운영에 적극 반영

※ 급식정책 의견 수렴 등을 위해 국가차원의 학교급식 정책모니터단 운영(‘16년~)

- 매 학기별 보호자부담 급식비 중 식품비 사용비율의 공개(보호자 부담 급식비가 있는 경우에 한함*) 및 매 학년도 말 기준 ‘급식 실시현황’ 제출

* 학교급식 위생관리지침서(제5차)의 학교급식 운영평가 항목(5번_참고사항)에도 동일하게 적용

- 학교별로 ‘학교급식의 날’ 또는 ‘학교급식 설명회’ 등 급식 과정 공유를 통해 교육의 일환인 학교급식에 대한 이해증진과 참여 유도

※ 학교급식 대국민 홍보사이트 “학교급식 통합플랫폼” 운영(www.sfic.go.kr)

- 학생에게 제공하는 실제 급식사진 등을 학교 홈페이지(학부모 모바일 앱 등 포함)에 게시하는 등 급식현장의 다양한 정보를 학생·학부모에게 제공 노력

※ 식단표 메뉴명은 교육적 효과 등을 고려하여 ‘마약’ 등의 용어가 포함되지 않도록 유의

라. 학교급식비 집행관리 철저

- 학교급식비의 목적 외 사용 금지
 - 시·도교육청별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따라 이·전용 제한
- 급식운영비 중 보일러 및 급식기구 등 시설·설비의 유지비는 학교기본 운영비에서 집행
- 교직원 급식비는 학생의 보호자 부담액과 교육청 등의 지원금을 고려하여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운영
- 급식관련 기부 요구자, 금품·향응 제공자와 제공 받은 자 모두 엄중 처벌
- 식재료 물품대금 카드결제 지양 및 납품업체에 부담 전가 금지
 - 학교에서 식재료 대금을 카드로 결제(지급)할 경우 수수료가 납품업체에 부과되어, 이는 식재료의 질 저하로 이어지므로 카드 결제 지양
- 학교급식 폐식용유 매각관리 철저
 - 폐식용유를 처분할 경우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시·군·구에 신고를 필한 업체와 계약하여 매각하되, 지정정보처리장치 등을 통해 연간 단가 견적에 의한 매각관리 적극 권장
 - ※ 유통기한(소비기한) 초과 식용유나 산패식용유 또는 산가측정 결과 2.5이상인 식용유는 학교급식 조리에 재사용 금지
 - ※ 폐식용유 매각 금액은 학교회계로 편입시켜 투명하게 관리

마. 학교급식 운영평가 및 표창

- 학교급식 운영평가 실시(「학교급식법」 제18조)
 - 급식운영의 내실화와 품질향상 등을 위하여 학교급식 운영평가항목에 따라 2학기 중 평가 실시
- 급식운영 우수교 및 유공자 표창
 - 학교급식 운영평가 결과 우수교 및 유공자 등에 대하여 표창 실시

2 학교급식 위생·안전관리 강화

□ 기본방침

- 대량의 식재료를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조리·제공할 수 있는 급식환경 조성
- 학교급식 관계자의 위생관리 수준 향상을 통한 식중독 발생 예방

□ 현 황

- 학교에서 발생하는 식중독 중 급식 원인 추정 발생 건수와 환자수 지속 발생, 최근 외부 오염된 식재료 사용으로 인한 식중독 증가 추세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발생 건수	13	21	25	21	30
발생 환자수(명)	401	708	1,102	1,027	1,470
건당 평균 환자수	31	34	44	47	49

※ 주요 원인균(최근 5년): 병원성대장균(30.9%), 노로바이러스(24.5%), 살모넬라(6.4%) 등

- 방학 중 급식시설에 대한 위생관리(여름은 곰팡이, 겨울은 동파 등) 지적('23년 국정감사)
- 학교급식 위생교육자료(안내서, PPT(12종), 카드뉴스(8종), 교육영상(6종)) 및 신규조리 종사자 대상 학교급식 이해와 대량조리기구 사용방법 교육자료 개발·보급('24./'25.)

※ 학교급식 통합플랫폼(www.sfic.go.rk)-[급식일반]-[급식위생]

□ 주요 업무

가. 노후 급식시설 현대화 등 급식환경 개선사업 수립·추진

- 10년 이상 경과된 급식시설 및 지하층에 설치된 조리시설 등을 대상으로 학교별 급식여건 및 노후도 등을 고려하여 현대화 사업 계획 수립·추진
 - HACCP 시스템 운영에 적합한 급식시설·설비를 갖추고, 고온다습한 조리실 여건 개선을 위해 공조장치 및 전기식 기구(인덕션 등) 설치 확대 등 추진
 - 조리작업 효율화 및 위생·안전성을 고려하여 자동화 급식기구* 등 능률적인 현대적 급식기구 확충, 기름을 많이 사용하는 가열 요리는 오븐을 적극 활용(오븐 활용이 어려운 경우는 튀김·구이·부침 등 조리 횟수 조정)
 - 학교별 급식시설·설비 및 기구 노후도, 작업 공간 구획 여부, 조리실 적정 온도유지 여부 등을 면밀히 파악 후 개선

* (예시) 오븐, 보온·보냉 배식대, 자동 교반기·컵세척기, 조리 지원로봇 등

- ※ 지역 및 학교 여건으로 급식 인원이 현저히 감소된 경우, 효율적 조리 작업 및 동선 등을 고려하여 기존 급식 설비·기구에 대한 조정 검토
- ※ 교육(지원)청별로 급식시설 개선 협의회 또는 TF 구성·운영, 필요한 경우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 설계 단계부터 개선 전반에 참여 및 지원
- ※ 재원은 시·도별 교육환경 개선비, 지역현안사업비(특교), 지자체 지원금 등에서 충당하되, 부족예산은 추경 반영 등을 통해 확보
- 쾌적하고 위생적인 급식을 위해 식생활교육관(식당) 공간 확보를 추진하며, 복도배식 중인 학교에 대해서는 우선 교실배식으로 전환토록 지도
- 학교급식시설 현대화사업과 연계하여 연차적으로 추진하며, 학기 중 급식 중단으로 인한 학부모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방학기간을 활용하여 사업 추진

나. 학교급식 위생·안전 관리 철저

-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연2회(학기별 1회) 이상 위생·안전점검을 실시하고, 평가 결과는 학교 및 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
 - ※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출입·검사 등 연간 실시 횟수 조정 가능
- 1학기 점검은 위생관리지침서의 점검표를 토대로 점검하고, 2학기 점검은 1학기 점검에서 지적된 사항 등에 대한 개선여부를 확인
 - ※ 1학기 점검결과 위생관리 미흡학교에 대해서는 전문가를 활용한 컨설팅 지원으로 2학기 점검 대체 가능(단, 교육(지원)청 관계자가 참여하는 경우에 한정)
 - ※ 지적사항 발견 → 시정명령(서면) → 차기 점검시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여부 확인 및 미 이행시 징계(「학교급식법」 제22조)
- 위생·안전점검 및 운영평가 시 ‘급식 이물질 혼입 예방 관리 사항’ 등도 포함하여 확인하고 취약학교 등에 컨설팅 지원
 - ※ 특히, 2~3식 제공학교, 급식인원수 과대학교 등에 급식 위생 및 이물관리 컨설팅 지원
- 각급 학교에서 다빈도로 사용하거나 지난해 식중독 발생의 원인으로 추정되었던 종류의 비조리제품(완제품) 제조·가공 시설에 대한 특별점검 요청
 - ※ 점검결과 관계법령 위반으로 지적사항 등이 있는 경우 관계기관에서 처분
- 모든 학교에서 방학 등으로 장기간 사용하지 않는 급식시설·기구 등의 위생 관리를 위해 급식종료·급식개시 이전에 청소 및 소독 등 실시

다. 개인위생 관리 및 관계자 교육 강화

- 영양교사 및 영양사는 매일 조리작업 전 조리종사자의 건강상태를 확인하여, 건강에 이상 징후가 있는 사람은 적절한 조치* 후 조리작업 참여 조치
 - * (예) 손에 상처가 있는 사람은 소독 등 적절한 치료 후 교차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며, 복통, 구토, 설사 등 식중독의심증상이 있는 사람은 의사의 진단을 받도록 함
- 식품취급 및 조리작업자는 6개월에 1회(폐결핵검사는 연 1회 실시 가능)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영양교사 및 영양사는 개인별 건강진단 결과를 기록하여 관리
 - ※ (참고) 음식물을 조리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고 단순히 조리 도구 등을 사용하여 배식을 지원하는 교사 등 배식지원 인력은 건강검진 대상자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 유권해석 안내(학생건강정책과-4704, '23.7.19.)

<*학교급식 분야 건강진단 적용사항([참고자료 5] 참조)>

구분	「식품위생분야 종사자 건강진단 규칙 개정」('24.1.8.시행)	학교급식 분야 적용사항('24.1.8.시행)
검사항목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폐결핵,	좌동
검사기간	유효기간(1년) 만료일 전·후 30일 이내 검사	유효기간(6개월) 만료일 전·후 30일 이내 검사
유예기간	질병·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1개월 이내 검사기한 연장 가능	별도 연장기한 없음
수수료	지방자치단체 별 수수료 책정	좌동

- 교육청은 학교장, 영양교사 및 영양사, 조리종사자, 식재료납품업자 등에게 위생교육(HACCP 적용·이행 및 이물질 혼입 예방 교육 등 포함)을 실시하고, 학교에서 활용 가능한 교육자료 보급
 - ※ 교육청은 교육(지원)청 또는 소속 교육연수원 등의 연수과정에 반영하거나 자체 계획을 수립하여 학교급식 분야 직종별 '직무교육프로그램' 운영
 - ※ 교육청 단위 컨설팅 및 모니터링단 등을 운영할 경우 활동 시작전 별도 교육 실시
- 학교는 학생, 교직원(조리종사자 포함), 학부모 등 대상 맞게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교육(이물질 혼입 예방 교육 포함) 실시
 - ※ 납품업체에 종사자 대상 특별 위생교육(이물질 혼입 예방 교육 포함) 실시 요청

라. 식중독 감시·보고체계 확립 및 발생 후 대응 강화

- 각급 학교는 매일 결석·조퇴·지각 학생수 및 원인 등을 파악하여 집단환자 발생여부를 파악하고, 주요증상을 평소와 비교하여 집단환자 발생여부 모니터링
- 학교장은 동일한 원인으로 식중독 유사증세 환자가 2인 이상 동시 발생한 경우 인지 즉시 관할 교육청과 시·군·구(보건소)에 신고하고, 초동단계 신속 대응조치 강구

- 시도교육청에서는 식중독 (의심)환자 집단발생 인지 즉시 교육부에 유선 등으로 보고하고, 역학조사 등에 적극 참여하여 원인 및 오염경로 규명 노력
 - 특히 노로바이러스가 원인으로 추정되는 경우 감염자·접촉자에 대한 관리 및 감염자의 구토물·분변 등 환경인자 및 생활시설 관리 철저
 - ※ 교육(지원)청 담당자는 중간 검사결과 검토 및 최종 결과보고서 작성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보건당국과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보건당국으로부터 역학조사 결과 보고서를 제공받아 식중독예방 및 재발방지 업무에 활용
- 학교별로 충분한 용량을 갖춘 보존식 전용 냉동고를 구비하고 보존식 보관시에 냉동고 온도를 확인·기록하며, 역학조사기관에 보존식 인계시 수거증을 받고 인계
 - ※ 조리·제공된 식품은 매회 1인분 분량을 -18℃이하에서 144시간 이상 보관
- 역학조사 결과를 토대로 식중독 발생원인에 따라 관련업체 제재 및 원인제공자, 관리자 등에 대한 제재조치를 강구하여 위생관리에 대한 책무성과 경각심 제고

마. 식기세척제의 안전한 사용 및 관리 강화

- 식기 등 급식기구 세척에 사용하는 세척제 및 행굼보조제는 「위생용품의 기준 및 규격」(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3-66호)의 기준을 준수하여 용법에 맞게 사용
 - 식기 등 급식기구에 세척제가 잔류되지 않도록 음용에 적합한 물로 행굼 작업 실시
- 세척제 구매 시 원료 및 표시사항 확인
 - 수산화나트륨(NaOH) 및 이를 5% 이상 함유한 혼합물은 「화학물질관리법」 등*에 따른 ‘유독물질’로 식기세척제로 사용 불가
 - *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환경부 고시 「유독물질 및 제한물질·금지물질의 지정」 제3조 [별표 1]
- 월 1회 이상 세척제 잔류여부 확인검사 후 CP2 기록지 하단에 기록하고, 확인검사 시 시약이 묻은 식기 등 급식기구는 다시 위생적으로 세척·소독
 - ※ pH 시험지법 또는 페놀프탈레인 용액(알칼리에서 붉은 색으로 변하는 지시약으로 일반적으로 세척제 잔류여부 검사에 사용됨)으로 검사
 - pH시험지 등 검사시약은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되, 검사담당자 대상으로 보관 및 취급요령 등에 대한 교육실시

3 안전하고 우수한 식재료 사용

□ 기본방침

- 식재료 원산지 표시 및 심의기능 강화로 안전하고 질 높은 급식 제공
- 안전하고 우수한 식재료 사용으로 급식의 질 향상 및 신뢰도 제고

□ 현 황

- 나이스(NEIS) 급식시스템에 식재료 표준체계 도입 및 현장 적용('20년~)
- 학교급식 식재료에 대한 관련기관*의 가격정보 및 물가동향 등을 참고할 수 있도록 식재료 시장가격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20년~)
 -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aT), 농산물유통정보(KAMIS), 축산물품질평가원 육류정보 등
 - ** 학교급식 식재료 가격정보는 '학교급식 통합플랫폼'에서 제공(www.sfic.go.kr)
- 정부에서는 수산물 안전관리를 위해 해역-생산-유통단계에서 방사능 검사 실시, 일본 8개현(후쿠시마 등) 모든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13.9.~)
- 물가 상황을 반영한 급식비 확보로 급식 질 유지, 지역 및 급식 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역별 격차가 해소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의 협의 등을 통해 적정단가 지원('23년 국회 및 '22년 국정감사 지적사항)

□ 주요 업무

가. 식재료 품질관리기준 및 원산지 표시제 등 준수 철저

- 학교급식 식재료 품질관리기준 준수
 -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 관련 별표 2에서 규정한 “학교급식 식재료의 품질관리기준”에 부합되는 식재료 선정 및 구매, 검수 후 사용
 - 김치 완제품은 HACCP 적용업소 생산제품 사용을 의무화하고, 상수도 사용 업체 또는 지하수 살균·소독장치 등을 통해 살균·소독된 물을 사용 업체 권장
 - ※ 병원성 대장균 오염이 우려되는 시기(8~9월)에는 숙성(pH 4.3 정도)된 김치류 제공 권장
- 학교급식 식재료 원산지 표시제 준수
 - (표시대상) 농축산물(9개), 수산물(20개)

품목	표시대상(원산지표시법 제5조, 시행령 제3조)
농축산물	축산물(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양고기, 염소고기<유산양 포함>) 및 그 가공품, 밥·죽·누룽지에 사용하는 쌀(쌀가공품 포함, 찰쌀, 현미, 찌쌀 포함), 배추김치(배추김치가공품 포함) 원료인 배추(얼갈이배추, 봄동배추 포함)와 고춧가루, 두부류(가공두부, 유바 제외)·콩비지·콩국수에 사용하는 콩(콩가공품 포함)
수산물	넙치, 조피볼락,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낙지, 명태<황태, 북어 등 건조한 것은 제외>, 고등어, 갈치, 오징어, 꽃게, 참조기, 다랑어, 아귀, 주꾸미, 가리비, 우렁쉥이, 전복, 방어 및 부세 / 해당 수산물가공품을 포함

- **(표시방법)** ① 식사장소(식생활교육관 또는 교실)에 원산지가 표시된 월간 식단표, 식단표, 게시판 등을 사용하여 게시, ② 원산지가 표시된 주간 또는 월간 식단표를 가정통신문(전자적 형태의 가정통신문 포함)으로 통보하고 홈페이지에 추가 공개
 - ※ 미표시 및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과태료, 과징금 등 부과대상임
 - ※ (농축산물) 농산물품질관리원(www.naqs.go.kr) - [원산지표시 종합 안내 서비스] 참조
(수산물) 수산물품질관리원(www.nfqs.go.kr) - [원산지 표시] 참조
 - ※ 집단급식소 원산지 표시대상 품목 및 표시방법 등을 인지하여 표시하고, 검수 시 확인 철저

○ 축산물 이력제도 준수

- **(이력관리대상 축산물)** 국내산(부산물 제외) 소·돼지·닭·오리고기·계란, 수입산 소·돼지고기
 - ※ 가공육, 양념육, 소시지류, 베이컨류, 부산물은 이력관리 대상 제외
- **(준수사항)** ① 이력관리 대상 축산물의 이력번호 표시·게시*, ② 축산물 구매 시 발급받은 영수증 또는 거래명세서를 거래일로부터 6개월간 보관
 - * (표시·게시 방법) [방법 1] 또는 [방법 2] 중 한 가지 방법 적용

[방법1] 조리되는 축산물의 이력번호를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 * (선택1) 또는 (선택2) 중 한 가지 방법 적용	(선택1) 축산물품질평가원 ‘맘편한서비스’ QR코드 또는 URL을 홈페이지에 등록하여 이력번호 조회
	(선택2) 학교홈페이지에 축산물 조리시 마다 등록
[방법2] 조리되는 축산물의 이력번호를 급식장소에 게시	

※ (국내산 축산물이력제) www.mtrace.go.kr / (수입산 축산물이력제) www.meatwatch.go.kr

○ 쇠고기 등 축산물등급판정 확인서 위·변조 대응 노력

- 학교에서 축산물품질평가원의 ‘축산물검수 원패스’를 활용하여 위·변조 의심 업체는 즉시 거래를 중지하고 관할 경찰서에 수사의뢰
 - ※ 축산물검수 원패스 운영 : 축산물품질평가원(www.ekape.or.kr)
 - ※ 축산물 검수 시스템(앱)과 나이스(NEIS) 급식시스템 연계('25.12월 ~)

○ 시·도교육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및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등과 협의하여 영양교사 및 영양사, 조리사 등에 대한 식재료 검수요령 교육 실시

나. 식재료 원산지, 품질등급 등 품질기준 심의

- 식재료 원산지 등 구체적인 품질기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의무화
 - 농·수·축산물 등 주요 식재료의 원산지와 품질등급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결정(「학교급식법 시행령」 제2조)
 - ※ 일본 방사능 누출사고 등으로 수입산 식재료에 대한 학부모 불안감 해소

- 식재료 구매 시 원산지, 품질등급 등 품질기준 명시 및 검수 철저
 - 식재료 구매요구서에 원산지, 품질등급 등 품질기준을 명시토록 하고, 영양교사 및 영양사가 학교관계자 등 참여하에 복수 대면검수 실시
 -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개정(‘23.1.1.시행)에 따라 ‘유통기한’이 ‘소비기한’으로 변경되는 바 검수 시 확인

다. 식재료 구매 시 계약관계 법령준수

- 「지방계약법령」 및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을 준수하여 계약업무 처리
 - ※ 추정가격 1억원 이하의 수의계약 시에는 낙찰하한율 적용(1억원 이하~2천만원 초과 88% 이상, 2천만원 이하 90% 이상)
-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따라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신고 등 적격 업체를 통해서 식재료 구매

-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집단급식소에 식품 판매가 가능한 경우(학교급식 적용 사항 관련) ※ 2025년 식품안전관리지침(식품의약품안전처) 참고
 - 식품위생법 또는 축산물위생관리법에 의한 식품(축산물)제조·가공업업자, 식육포장처리업자가 자기가 생산한 식품에 한해 집단급식소에 직접 판매(대행하는 경우 제외)하는 경우
 - 식품위생법령에 따라 식품소분·판매업(식품소분업, 기타식품판매업, 식품등 수입판매업, 유통전문판매업)신고를 하거나, 축산물위생법령상 축산물판매업(식육판매업,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 우유류판매업, 축산물수입판매업,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식용란수집판매업) 신고를 한 경우
 - * 식품위생법령에 의한 식품보존업, 식품운반업과 축산물위생관리법령에 의한 축산물운반업, 축산물보관업 등은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영업신고 하도록 지도
 - ※ (참고) 식육을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 작업장으로 지정받은 축산물가공장 또는 식육포장처리장에서 처리된 식육을 직접 납품받는 것이 바람직하나, 식육판매업 영업 신고된 업소를 통해 소분, 분할, 재포장 등의 과정 없이 유통(배달)만 하여 납품하는 것도 가능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등에 의한 ‘농업인등’ 및 ‘영농조합법인’과 ‘영어조합법인’이 생산한 농·임·수산물을 집단급식소에 판매하는 경우
 - * 다만,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생산 또는 판매하게 하는 경우는 제외
 -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5조제2항제7호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제2호(농업인등),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영농조합법인, 영어조합법인)

라. 전자조달시스템 이용 확대 및 분할 수의계약 금지

- 학교 식재료 등 물품 구매 시 전자조달시스템 이용 확대
 - 식재료 등 물품구매 계약과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비대면 전자계약 실시
 - 「지방계약법」에 따라 지정정보처리장치로 승인된 한국농수산물유통

공사의 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NeaT) 또는 조달청 나라장터(G2B)이용

- 교육비리 근절대책으로 분할 수의계약 금지
 - 수의계약 요건에 맞추기 위해 구매단위 축소 및 의도적 분할발주 금지, 월 단위 계약을 원칙으로 하되 소규모 학교는 분기 또는 학기단위 계약 가능

마. 인근 학교 간 또는 지역단위 공동구매 확산

- 식재료 구매물량의 규모화와 경쟁입찰이 가능해져 구매비용 절감과 공동구매단 내 학교별 계약업무 순환 담당으로 행정업무 경감
- 교육청 주관 하에 인근학교 또는 지역단위 '공동구매단' 구성 → 학교별 계약기간 조정 → 식재료 공동구매 추진
- 시·도교육청은 공동구매 추진실적을 교육지원청 및 학교평가에 반영토록 하고, 우수기관과 유공자 표창 등 인센티브 부여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안내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공고된 물품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 제9조를 적용
 -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및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 품목 지정 내역(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참조
 - 지정된 물품에 대해서는 직접생산 확인이 가능한 중소기업자만을 대상으로 하여 추정가격이 1천만원 이상 중소기업자간 제한경쟁 또는 지명경쟁 입찰에 따라 조달계약을 체결
 - 다만, 동법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명시되어있는 예외적 사항에 해당되는 것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거 기관 홈페이지에 해당되는 물품이 예외조항에 해당됨을 공표하고 동 내용을 구매공고문에 명시하여 공고
-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운영 시 협력체계 구축
 - 학교가 센터를 이용하는 경우 교육청이 적극적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여 우수하고 안전한 식재료를 적정가격에 공급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력체계 구축

바.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업체 불공정행위 근절

- 전자조달시스템 등록업체의 불공정행위 제재조치 강화
 - 전자조달시스템 운영기관(aT, 조달청)이 IP 중복사용 등 불공정행위 의심업체 선별(색출) →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조사요청) 또는 경찰에 고발
 - 공정위 조사(수사)결과 불공정행위 확인업체 명단을 시·도교육청에 통보 → 계약심의위원회 심의 및 제재(부정당업자 등록)
 - 부정당업자는 전자조달시스템(G2B, NeaT 등)에 등록하여 제재조치 강화
 - ※ 「지방계약법」 제31조 및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공인인증서를 부정하게 사용한 자는 1개월 이상 2년 이하 범위에서 ‘부정당업자’로 제재하도록 규정
- 불공정행위 의심업체 및 위생분야 합동점검 협조
 - 전자조달시스템 운영기관 및 공정위, 경찰 등 관계기관에서 식재료 공급계약 불공정행위 의심업체 합동점검 요청이 있을 경우 교육청은 식품위생분야 등 점검에 적극 협조

사. 식재료 등 유해·하자물품 납품업체 제재조치 강화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르면 유해·부정물품 납품업체 제재를 위해 해당 입찰자의 과거 계약이행 성실도, 품질정도, 입찰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격자를 낙찰자로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
- 식재료 검수 시 유해·하자물품 납품사례 등에 대한 업체평가 자료를 토대로 불량식품 등 납품업체 제재, 납품된 식재료 오염 등으로 식중독이 발생한 경우도 역학조사결과 귀책사유 있는 식재료 공급업체 제재조치 시행
 - 식재료 구매입찰 공고문과 계약특수조건에 제재 및 계약해지 근거를 명시하여 사후관리 철저
 - 월 2회 이상 확인서(첫 확인서 제출이후 30일 이내 2회 이상)를 제출한 업체 및 식품위생법령 등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에 대하여는 계약기간 만료 후 3개월 이상 식재료 공급입찰(전적) 참여 제한(원산지 허위표시 또는 유통기한(소비기한) 위·변조한 경우는 6개월), 식중독 사고 발생 시는 당해 학교에 1년간 참여 제한 등
 - ※ 「학교급식 식재료 납품관리 매뉴얼(‘14.9월)」 활용
- 불량 식재료 납품업체(위탁업체) 처벌규정 준수 및 공개
 - 「학교급식법」 위반자에 대한 벌칙 규정(법 제23조 내지 제25조) 준수
 - 식재료 품질관리기준 위반 등 제재조치 내용을 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

아. 우수 식재료 사용 확대

- 안전하고 우수한 농·축·수산물 사용 확대
 - 지역 식재료(로컬푸드), 친환경, GAP(농산물우수관리제도), HACCP 인증품 등 안전하고 우수한 식재료 사용
 - ※ 학교급식에 친환경 농산물 사용 확대 필요('22년, 국정감사 지적사항)
 - 생산자단체 직거래 및 공동구매, 계약재배 등 추진으로 유통비용 절감
- 지역 농·축·수산물 사용 등 소비촉진 유도
 - 학교급식에 식재료를 납품하는 생산자 및 원산지 표시(실명제), '교육농장' 체험학습 등 농가를 생활교육의 장으로 활용

자. 학교급식 식재료의 품질 및 안전성 조사 방식 개선

- 농·축·수산물 등 학교급식 식재료에 대한 품질 및 안전성 조사는 학교급식에 공급하기 전(前) 산지 출하단계 및 유통단계에서 사전적 검사방식으로 개선 ('13. 국정감사 지적사항)
 - ※ 산지출하단계 농산물 안전성조사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수행, 유통단계 농산물의 안전성 검사는 시·도보건환경연구원 또는 지방식약청에서 실시
- 농산물의 안전성 검사결과 부적합 정보를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식품안전 정보포털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간 확인하여 부적합 농산물이 학교에 공급될 경우 급식제공을 중단하고 식재료 납품업체에 즉시 반품·폐기 등 조치

차. 식재료 납품업체(대표자) 대상 식품위생 및 건전성 교육 실시

- 식재료의 생산·유통·운반과정의 위생관리 강화
 - 오염된 식재료가 학교에 납품되었을 경우 식중독 사고와 직결되므로 교육청 차원의 납품업체(대표자) 교육으로 위생수준 및 인식 제고
 - ※ 납품업체에서 식재료 관리를 강화토록 특별교육 실시(식재료 HACCP 적용 철저, 세척·소독·행균과정 등 위생관리 강화, 사전 이물질 혼입 확인 등)
- 식재료 납품업체(대표자)의 건전성 및 책임의식 강화
 - 불량 식재료가 학교급식에 납품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식품위생 교육과 더불어 건전성과 책임의식 고취를 위한 교육 필요

4 학교급식 영양관리 강화

□ 기본방침

- 연령별로 적합한 영양관리 기준 준수 및 균형 잡힌 식사제공을 통해 성장기 학생의 건강 증진
- 건강지향적인 영양관리로 학생의 올바른 식사선택 능력 배양 및 자기건강 관리 역량 강화

□ 현 황

- 2018.4월 “지역특성을 고려한 학교급식 식단 참고자료” 개발·보급
- L-글루탐산나트륨(항비증진제)*에 대한 인식 및 표기 부적정에 대한 개선 요구(19년 국회 등)
*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개정(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16-32호, '18.1.1.시행)
- 학교급식의 영양관리기준 개정('21.1.30. 시행)
※ 2020 한국인 영양섭취기준(보건복지부) 반영
- 병설유치원 유아에게 매운급식 제공 관련 진정('22.3., 국가인권위원회)
※ 학교의 급식여건(조리원수, 급식시설·설비·기구 등)을 고려하여, 병설유치원 및 초등학교 저학년의 발달 특성을 반영한 식단구성 및 조리법(음식크기, 온도, 매운정도 등) 개발 노력
- 관계부처(농식품부·해수부·식약처·교육부) 협업 「식품영양성분 통합 DB」 구축 및 '4세대 나이스 시스템'에 정보 연계('23.6.~)
- 학교급식 오븐요리 교육자료 및 교육영상 개발·보급('24.5.)
※ 오븐요리 안내자료 및 레시피북(100개 요리), 교육영상(30편), 오븐기능 안내영상
※ 학교급식 통합플랫폼(www.sfic.go.rk)-[급식일반]-[식단및레시피]

□ 주요 업무

가. 건강 지향적이며 성장발달 단계에 적합한 영양관리 강화

- 학교급식 영양관리 기준 준수(「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제5조 관련 별표3)
- 곡류 및 채소류·과일류·어육류·콩류·유제품 등 다양한 식품 사용

- 염분·유지류·단순당류 등 과다 사용 제한
 - 가급적 자연식품과 제철식품을 사용하고 다양한 조리방법 활용
- 쇼트닝·마가린 등 트랜스지방이 포함된 식품제공 최소화

나. 올바른 식사선택 능력 배양을 위한 학교급식 '영양표시제' 실시 강화

- 학생들에게 영양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여 자기 식생활 관리능력 함양
- 영양량이 표시된 식단표는 가정통보 및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주간 식단표는 식사장소(식생활교육관 또는 교실) 등에 게시

다. 「알레르기 유발식품 표시제」 시행 철저

- 알레르기 유발식품으로부터 학생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학교급식 식단표에 알레르기 유발식품 정보공지 의무화(「학교급식법」 제16조)
 - 위반 시 학교급식관계 교직원은 징계, 위탁급식업자는 300만원 이하 과태료
- 알레르기 유발 식재료의 종류와 공지 및 표시방법(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종류> ①난류, ②우유, ③메밀, ④땅콩, ⑤대두, ⑥밀, ⑦고등어, ⑧게, ⑨새우, ⑩돼지고기, ⑪복숭아, ⑫토마토, ⑬아황산류(권장), ⑭호두, ⑮닭고기, ⑯쇠고기, ⑰오징어, ⑱조개류(굴, 전복, 홍합 포함), ⑲ 잣

· 식약처장이 고시한 식품 중 원재료는 의무적용, 기타 식재료와 성분은 권장사항(「식품등의 표시기준」 참조)

- 공지방법 : 알레르기 유발 식재료가 표시된 월간 식단표를 가정통신문 및 학교 홈페이지에 안내, 주간 식단표를 식사장소(식생활교육관, 교실)에 게시
 - ※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에서 제공하는 알레르기 정보 활용 시 학교에서는 제공식단의 알레르기 정보를 확인 후 안내
- 학교에서는 가정통신문 등을 활용하여 보호자의 확인을 통해 특정 식품별 알레르기 유병학생 조사, 해당 학생에 대한 상담 및 건강 교육 등 관리 실시

라. 학교급식 나트륨 및 당류 저감화 실천

- 학교급식 나트륨 및 당류 저감화 계획 수립
 - 나트륨 및 당류 저감화 계획을 학교급식 운영계획 등에 반영·수립
 - 학교급식 운영평가 시 학교별 계획 수립·이행 여부 확인
- 학교급식에서 나트륨 저감화 실천
 - 저염식단 제공 및 나트륨 섭취량 줄이기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염도계'를 구입하여 활용
 - ※ '국 자율의 날' 운영 및 국 권고염도 0.6~0.7% 수준으로 단계적 저감화

5

영양·식생활 교육 및 지도 강화

□ 기본방침

- 학교급식을 교육의 일환으로 운영하여 성장기 학생들의 균형 잡힌 영양 섭취를 통해 평생건강의 기틀 마련
- 편식교정 등 바람직한 식생활 습관 형성을 위한 영양·식생활 교육 강화

□ 현 황

- 2022 개정 교육과정의 범교과 학습주제에 안전·건강 교육(식품안전, 영양·식생활) 포함
- 「유·초·중·고 영양·식생활 교육 가이드라인」 및 초등학교 교육자료 개발·보급('22.4.~)
※ 중·고등학교 영양·식생활 교육자료 개발·안내 예정(~'25.1.)
- 학교의 장은 올바른 식생활습관 형성 등을 위해 학생에게 식생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학교급식법」 개정('22.6.29.시행)
- 학생 영양상담 지원을 위한 「학교 영양상담 매뉴얼」 및 「식생활 및 생활 습관 진단 프로그램」 고도화·활용안내('25.2.~)
※ 학교급식 통합플랫폼(www.sfic.go.kr)-[영양상담]-[매뉴얼 및 상담자료 / 식생활습관 진단]
- 2025학년도 범교과 학습주제 편성·운영 안내(건강한 식생활 및 영양교육)
※ 교육부 학교교수학습혁신과 - 8578('24.10.21.)
- 2025년도 교육부 주요 정책 안내(건강한 식생활 및 영양교육)
※ 교육부 학교교수학습혁신과('25.1월)

□ 주요 업무

가. 건강한 식생활 및 영양교육 강화

- 「학교 교육활동 운영계획」에 '건강한 식생활 및 영양교육 계획' 반영 및 실시
 - 어린이 기호식품의 안전과 영양, 나트륨·당류 저감화, 불량식품 근절, 식중독 예방, 건강한 식생활 및 영양관리 등에 관한 사항 반영, 월별 추진계획 수립·시행
 - 관련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 등을 활용(월 2회 이상)

※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의 범교과 학습주제에 안전·건강 교육 포함

범교과 학습주제인 안전·건강교육(건강한 식생활 및 영양교육 등)을 관련교과 또는 창의적 체험활동 등 교육활동 전반에 걸쳐 통합적으로 다루고, 지역사회 및 가정과 연계지도

※ 영양·식생활교육은 학교장 책임 하에 교육과정 등과 연계하여 강화(일부학교에서 외부 기관 위탁교육으로 학교 교육과정과 중복 및 혼란 등 민원제기)

- 담임교사 임장식사를 통한 밥상머리 교육, 잔반 줄이기 교육, 학부모 대상 급식관련 정보제공
 - 급식현장을 식생활교육의 장으로 활용, 보다 교육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식당' 명칭을 '식생활교육관' 등으로 변경, 영상장비(인터넷 활용) 등 교육환경 마련
- ※ (현행)'급식소','식당'→ (변경)'식생활교육관'등

- '아침식사 하고 등교하기지도' 등으로 아침결식 해소 및 규칙적인 식습관 형성
 - 학교장 및 교감·교사, 행정직원 대상 연수과정에 학교급식 운영관리 반영
 - '식생활교육실' 운영 및 식생활 교육·체험공간 확충 권장
 - 여유교실이 있는 학교에 아늑하고 쾌적한 분위기의 '식생활교육실'을 구성 하여 학급별로 담임교사와 학생들이 함께 식사하면서 식생활 체험교육 실시
 - 학생 수 감소 등에 따라 발생한 유휴 공간을 식생활 교육 체험공간, 복합 문화 공간으로 다변화하여 식생활 체험교육 실시
- ※ 시도교육청에서는 영양교육체험관 운영 및 활성화 등 방안 검토 필요('22년 국정감사 지적사항)
-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 등을 활용하여 식생활에 대한 관심제고 및 기초 조리능력 배양
 - 교육감 또는 교육장 지정 학교급식 시범(연구)학교 운영 지원

나. 학교 영양상담 프로그램 운영

- 학교 영양상담 프로그램 운영
 - 비만·당뇨·고혈압·식품알레르기 등 식사조절 필요 학생 및 교직원 대상 상담실시
 - '학생 비만예방 프로그램' 등 활용
- ※ 「학교 영양상담 매뉴얼」 및 「식생활 및 생활습관 진단 프로그램」 개발·안내('22.6.)
- 급식관리실 및 학교 누리집 등에 '영양상담실' 개설·운영

다.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교육 및 홍보 강화

- **(관계법령)**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100명 이상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집단 급식소는 음식물쓰레기 감량 또는 재활용하거나 폐기물처리업자 및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운영자 등에게 위탁하여 처리하도록 규정
- **(교육청 대책)** 학교급식 음식물 쓰레기 발생 실태 조사 및 실효성 있는 저감화 대책 수립·추진(학교급식 운영평가 시 학교별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실천여부 확인)
- **(학교 대책)** 자체 실정에 맞는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대책 수립·시행
 - 학생들의 기호도 조사·분석 및 적정량 조리·배식, 식생활 교육 및 홍보 등을 통해 잔반의 발생을 근원적으로 차단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
 - ※ 편식교정 등 식사지도를 통한 음식물 남기지 않기 교육 실시, 학생 개인별 식사량 조절을 위하여 배식 조절대 비치 및 활용
 - ※ 계약 방식을 정액제에서 종량제로 개선하여 발생량 저감화 및 비용절감 도모

라. 영양교사 배치 및 연수 프로그램 운영

- 급식시설·설비를 갖춘 학교에 영양교사 배치방안 강구(사립학교 포함)
 - ※ 2식 이상 급식학교 등에 영양교사 추가 배치방안 마련('21년, '24년 국정감사 지적사항)
- 영양교사의 직무 역량강화 및 교육 활성화를 위해 시·도교육청별 교육 연수 프로그램 운영 및 교육자료 개발·보급, 교육연구회 등 적극 지원
- 방학기간을 이용하여 영양교사 및 영양사 대상 영양상담 등 전문교육 실시

6

학교급식 지원체계 구축 및 행정지원 강화

□ 기본방침

- 학교급식 운영에 대한 지원체계 구축으로 급식시스템 개선
- 교육(지원)청에서 학교급식 현장에 대한 행정지원을 강화하여 학교의 업무 부담 경감

□ 현 황

- 학교급식은 위생, 영양, 식품, 시설·설비, 예산, 인사관리 등 여러 요소가 연결되어 상호 작용하는 시스템으로 각 분야의 지원 필요
 - 학교예산의 60% 이상이 급식예산으로 식재료 구매계약 등 행정업무 과다
- 학교급식 관련 현안(위생·안전사고, 불량 식재료 납품, 긴급 상황 등)에 신속 대응 및 영양·식생활교육 등 역량강화 필요

□ 주요 업무

가. 학교급식 담당조직 및 전문인력 보강

- 학교급식 전담부서 설치 및 전문인력 확보
 - 교육(지원)청의 급식위생·안전점검 및 컨설팅 지원, 영양·식생활 교육, 영양·식재료 관리, 급식비 지원, 급식현안 대응 관련 업무가 증가하고 있어 전담부서 설치 및 전문 인력 보강방안 강구
 - 식품안전 및 영양·식생활 교육관련 업무를 전담할 영양교육 전문직을 시·도 교육청 등에 배치 협조('21, '23, '24년 국정감사 지적사항*)
 - * 시도교육청에서는 일반 영양교육 전문직원 배치 및 확대 방안 검토

나. 학교 현장 지원을 위한 학교급식 관련 자료개발·지원

- 학교급식 및 식생활 교육 관련 자료 및 프로그램 개발·보급
 - 학교급식 현장에 필요한 급식운영 자료, 식단 및 레시피, 식중독 예방 관리 자료, 학생 식생활 교육 및 영양상담 관련 자료, 교육훈련 프로그램 운영 등 업무지원 강화

- 교육청 등 홈페이지에 학교급식 정보센터 설치·운영
 - 학교급식과 관련한 각종 전문정보를 제공하고, 의문사항 등 질의응답

다. 학교급식 인력 처우 및 근무여건 개선 지원

- 소속감 및 업무에 대한 책임감·전문성 강화를 위해 고용안정 추진
 - 시간외 근무 시 수당지급, 직계존비속의 경조사 시 특별휴가 부여
- 직무의 중요도와 업무량, 석식포함 2식 제공, 기숙사 운영 등을 감안하여 업무간소화 등 행정지원 방안강구 및 적정인원 배치와 교대근무 등 근로기준법에 맞도록 처우개선
 - 2식 이상 급식제공 학교는 급식인력 추가배치로 교대근무 체계 마련
- 학교회계직원 배치 학교에 정규직을 배치할 경우는 기존직원의 고용안정 방안도 함께 고려
- 급식인력 근무여건 개선
 - 지역 실정, 시도별 채용규정(조례, 규칙 등), 급식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도별 편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배치기준 시행 및 인력 확충 노력
 - ※ 조리종사자 배치기준이 시도별로 상이 및 학교급식 식수인원 대비 종사자의 적정인력 확충, 퇴직현황 파악, 대체인력 확보 등 관리 필요('20~'24년 국정감사 및 국회 지적사항)
 - 특히, 조리종사자 배치기준 및 인건비 산정 기초에 실제 급식을 이용하는 교직원과 초등학교 병설유치원생 등을 포함하도록 조치
 - 농촌지역 등 소규모 학교에도 조리인력 적정배치 및 식기세척기·다기능 오븐기 등 능률적인 급식기구 확충 지원
 - 조리실 냉방시설 및 탈의실, 휴게실, 샤워장 등 설치 및 환경개선 추진
 - ※ 학교·급식여건(학생수 규모, 조리인력, 배식형태, 교사 수업일정 등)을 고려하여, 불가피하지 않은 교직원 배식대/식당 별도 운영 등은 제한 노력(국회 지적사항)
- 영양교사 및 영양사, 조리종사자 '대체인력 풀' 운영으로 질병 및 감염병 등 긴급한 휴가사용 등에 따른 대체인력 지원방안 강구*(교육청 단위 통합운영 권장)
 - * 대체인력 운영사례: 평상시 교육(지원)청 단위 대체인력풀 구성·운영 이외에도 교육(지원)청에 전담반 구성 및 거점학교 배치·지원, 유관기관(지자체 센터 등) 연계 등
- 조리종사자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부상, 질병, 장애 등의 재해 사고를 당한 경우 산재보상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적극 안내 및 지원

- 영양교사 및 영양사, 조리사, 조리원 대상 전문성 향상 등을 위한 맞춤형 교육 및 연수프로그램 운영 확대

라. 학교급식 운영 지원

- 학교급식연구회 등 급식관련 연구조직·운영 및 행·재정 지원 확대
- 「NEIS 학교급식 식품코드 운영협의회」 운영 협조('23.12.~)
 - 신규 식품코드 추가 검토, 식품영양성분 및 알레르기 유발식품 표시사항 등에 대한 개선 필요사항 검토와 자문기능을 담당하는 협의회 운영 적극 협조

마. 자치단체의 토·공휴일 및 방학기간 학교 밖 급식지원 협조

- 교육청은 자치단체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토·공휴일 및 방학기간 학교 밖 결식우려 학생 급식지원 사업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적극 협조
- 교육청 및 학교에서는 토·공휴일 및 방학기간 지자체별 급식지원 현황을 파악, 행정협조 등 지원방안 모색
- 지자체 '아동급식위원회' 참여 및 부득이한 사정으로 학교의 급식시설 이용 요청 시 검토·협조



V. 학생 도박 중독 예방교육

□ 기본방침

- 학교별·학급별 맞춤형 예방교육 자료 개발·보급, 교원·학교 관리자 연수, 학부모 대상 학생 도박문제 주요 징후 및 예방·대응 방법 안내

□ 추진 근거 및 현황

- 「학교보건법」 제9조(학생의 보건관리)
 - 학교장의 음주·흡연, 마약류를 포함한 약물 오남용, 도박 중독의 예방 및 정신 건강 증진을 위한 보건교육 규정
 - 「학교안전법 시행규칙」 제2조(학교안전교육의 실시)
 - 7대 안전교육 영역에 약물 및 사이버 중독 예방을 위한 안전교육* 실시
 - * 「학교안전교육 실시 기준 등에 관한 고시」[별표1] 에 따른 약물 및 사이버중독 예방 교육 시간 유·초 10시간, 중 10시간, 고 10시간
 - '2026학년도 범교과 학습 주제 편성·운영 안내'(교육부 학교교수학습혁신과 - 7262, '25.10.16.)
 - 범교과 학습주제 간 통합 운영, 관련 교과 탄력운동을 재구성한 연계·운영 등 교육활동 전반(교과, 창의적 체험활동)에 걸쳐 탄력적으로 운영
- ※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안전교육, 인성교육, 도박예방교육 등 관련 주제와 통합운영 가능

범교과 학습주제	세부 주제	기준 시수	편성·운영 방법
①안전·건강	학교폭력 예방교육	11	• 학급당 11차시 이상(사이버폭력 예방 3차시 이상 포함) 편성 • '어울림(사이버어울림) 프로그램' 등을 활용한 교육 실시 • 안전교육, 인성교육, 사회정서교육, 도박예방교육 등 관련 주제와 통합 운영 가능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개정사항 안내(2025.11.11.일부개정, 2026.5.12.시행)
 - 각급 학교의 장은 연 2회 이상 학생 대상 청소년 도박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의무화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2025.11.11., 일부개정] 안내 >

제18조의4(청소년 도박예방교육과 학교교육의 연계)

④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에 따라 연 2회 이상 학생을 대상으로 청소년 도박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5. 11. 11.>

□ 주요 업무

- (단위학교) 교육과정 연계 도박 예방교육 집중 운영
 - 보건교육, 안전교육, 사이버중독예방교육, 사이버폭력예방교육, 정보통신 윤리교육 등 단위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도박예방교육 운영
 -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이 개발한 도박문제 대응 가이드, 선별안내서, 포스터, 교육신청 안내 등을 활용한 교육 실시 및 학부모 대상 홍보
 - 학교전담경찰과(SPO)과 협력하여 도박예방교육 실시
- (시도교육청) 교원·학교 관리자 연수 실시 및 지원(직무연수, 학교자체 교직원 연수 등 활용 연 1회 이상) 및 도박 중독 예방 교육자료 접근성 제고
 - 시도교육청 조례 및 기본계획 수립 등을 통한 단위학교의 도박 예방교육 운영 지원
 - 교육청과 경찰청, 지역사회 유관기관 등이 함께 참여하는 합동 캠페인 운영 및 언론 홍보
- (교육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와 공동으로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주간*」 운영, 한국도박문제예방 치유원 주관 ‘청소년 도박 실태조사’ 지원·협조 요청
 - * (내용) 교육청-학교-경찰청-지역 유관기관 합동 캠페인 실시 권장, 학생 주도형 SNS 챌린지, 등하굣길 캠페인, 학교 홈페이지 슷품 홍보 등
 - 시도교육청별 학생 도박예방교육 실시 현황 조사

▲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주간 운영

- (목적) 청소년 도박 피해 증가 등 청소년 도박의 위험성 및 심각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 및 유관기관 연계 예방활동 강화
 - 청소년 도박문제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 제고 및 협력 강화로 안전망 확대
- (주최/주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교육부/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 (행사기간) 매년 5월 셋째 주

▲ 청소년 도박 실태조사

- (목적) 청소년 도박 실태, 인식 및 태도 등을 파악하여 청소년 도박 예방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24년부터 국가승인통계)
- (대상) 전국 초등 4학년 ~ 고등학교 3학년 약 13,000여명
- (주최)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 (조사기간) 매년 10월 ~ 12월
- (조사방법) 온라인 자기기입식 설문조사

참고 도박문제 예방 교육자료

□ 찾아가는 맞춤형 도박문제 예방교육

- 대상 : 초, 중, 고
- 유형 : 혼합(온+오프라인)
- 운영 기간 : 상시
- 시간 : 1차시(40~50분)
- 참여방법 :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누리집(www.kcgp.or.kr)을 통한 온/오프라인 예방교육 신청 후 수강
- 기타 : 무료(단, 오프라인 강사 파견 예산 소진 시 온라인 교육 제공)
 - 오프라인 교육(강사파견) 희망 시, 최소 2주 전까지 신청
 - ※ 강사 성범죄·아동학대 전력 조회는 수요처에서 진행
 - ※ 오프라인 예방교육 수강신청 방법(<https://www.kcgp.or.kr/portal/member/user/forLogin.do?menuNo=200204>)



※ 온라인 예방교육 수강신청 방법(<https://www.kcgp.or.kr/portal/main/contents.do?menuNo=200069>)



□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콘텐츠

- 대상 : 초, 중, 고
- 유형 : 온라인
- 주요 내용 :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교육 제공
- 운영 기간 : 상시
- 참여방법 : 도란도란 학교폭력예방교육(doran.edunet.net) 접속 후 교육자료 다운로드 가능
- ※ 예방교육콘텐츠(13종), 학부모/교사 도박문제 안내서(6종), 문화콘텐츠(3종)
- 기타: 무료

□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교육 뮤지컬

- 대상 : 중, 고
- 유형 : 온라인
- 주요 내용 : 「Hell'o(지옥으로)」 뮤지컬 영상 제공
- 운영 기간 : 상시
- 시간: 40분
- 참여방법 :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누리집(www.kcgp.or.kr) 통한 온라인 예방교육 신청 후 이용
- 기타: 무료

중·고등 도박문제 예방교육 뮤지컬(시청각 자료)



☐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지역센터 연락처

연번	지역	주소	연락처
1	서울	(04554)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73 남산스퀘어 8층	02-740-9042
2	부산/울산	(48816)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197 뉴포트빌딩 5층	051-441-2190
3	대구	(41927) 대구광역시 중구 달성로 37 계성빌딩 5층	053-256-1336
4	인천	(21558) 인천시 남동구 예술로206 중앙프라자 A동 901호	032-438-6565
5	광주/전남	(61110) 광주광역시 북구 운용로 79 광주개인택시신헌 3층	062-369-1368~9
6	대전/충남	(35235)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서로 15(둔산동) 새천년빌딩 6층	042-867-0075
7	경기북부	(10367)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로 684 희망빌딩 4층	031-919-0814
8	경기남부	(15467)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19(매교동, 청궁빌딩 6층)	031-243-8280
9	강원	(26460) 강원 원주시 혁신로 19 H타워 2층	033-813-1336
10	세종/충북	(28397) 충북 청주시 경산로 1 하나빌딩 5층	043-275-0051
11	전북	(54930) 전북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594 낙원빌딩 B동 2층	063-255-1336
12	경북	(37554)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신덕로 274 승리빌딩 2층	054-256-1530
13	경남	(51454) 경남 창원시 성산구 비음로 4번길 36. 범우빌딩 4층	055-264-7082
14	제주	(63190)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서사로 184 한빛빌딩 4층	064-751-1336



VI. 행정사항

1. 연간 주요행사 및 일정
2. 보고 목록
3. 보고 서식
4. 참고 자료

1

연간 주요행사 및 일정

□ 2026년 학교 건강증진 교육활동 우수사례 공모전 개최(예정)

- (목적) 지역 및 학교 특성에 맞는 건강증진사업 운영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확산하고, 관련 유공자 격려
- (공모분야 및 방법)
 - 응모대상 : 전국 초·중·고 및 특수학교의 교직원, 교육청 관계자 등
 - 응모 및 심사방법 : 세부내용 향후 안내 예정
- (협조사항) 시·도교육청에서는 각급 학교에 동 사업의 취지 등을 홍보하고 지역 내 학교의 우수사례 적극 발굴

□ 2026년 학교급식 및 식생활 교육 우수사례 공모전 개최(예정)

- (목적) 식품안전과 질 높은 급식 제공에 대한 관심과 사회적 요구가 증가 되므로 학교현장의 우수사례를 개발·발굴하여 단위학교에 보급·적용함으로써 학생 건강증진 및 수요자 만족도 제고
- (공모분야 및 방법)
 - 응모내용 : 학교급식 운영·위생·영양관리, 식생활 교육 등
 - 응모대상 : 시·도 및 지역교육청 관계자 및 모든 초·중·고·특수학교의 영양교사, 영양사, 조리사, 조리원, 교직원 등
 - 응모방법 : 해당교육청에서 사전 심사 후 교육부에 추천, 서류심사 및 필요시 발표심사 등 실시
- ※ 세부사업계획은 추후 안내 예정
- (협조사항) 시·도교육청에서는 각급학교에 동 사업의 취지 등을 홍보하여 우수사례 공모에 많은 대상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

□ 2026년 국가차원의 학교급식 소통단 운영

- (목적) 학교급식 수요자,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소통채널을 운영하여 현장 의견 수렴, 개선과제 발굴, 정책에 대한 이해도 제고 등 정책 발전 기반 마련
- (운영 방법)
 - 구성 : 학교급식에 관심이 많고 적극 참여가 가능한 학부모, 교직원, 전문가 등 참여
 - 일정 : 발대식(5월~) → 정책소통단활동 및 협의회(5월~11월) → 결과나눔회(12월)
 - 내용 : 학교급식 전반(운영, 위생, 교육 등)에 대한 의견 수렴 및 개선 과제 발굴, 학교급식 및 식생활 교육 우수사례 공유 및 홍보
- (협조사항) 시·도교육청에서는 동 사업의 취지 등을 고려하여 책임자 추천 및 소통단 운영 지원, 지역 우수학교 현장 방문 계획 수립 등 협조

□ 2026년 학생건강증진분야 유공자 표창

- (목적) '2026년 학생건강증진 정책방향' 및 학생 건강증진(건강·환경·급식관리) 관련 정책 추진 유공자 등을 발굴·표창하여 관계자 사기진작 및 학생건강 정책의 발전에 기여
- (대상) 학생 건강증진 등 관련 분야에 대한 주요 정책을 성실하게 수행하여 추진성과가 탁월한 우수기관(학교, 단체) 및 유공자
 - 각급학교, 교육청, 기관(단체) 및 직종에 관계없이 해당분야 유공자(교직원, 일반직, 민간인, 지역인사 등도 포함)
 - 표창수량 : 미정(별도 통보 예정)
- (일정) '26. 10~11월 대상자 추천, '26. 12월 표창수여

□ 학생 건강증진 분야 국외연수 추진(상황 고려)

- (목적) 학교건강증진 관련(건강·환경·급식관리 등) 해외선진지 견학(연수)을 통해 제반실태를 파악함은 물론 담당업무에 대한 소양 및 전문지식 함양
- (기본방침) 연수목적을 고려하여 학회 등에 위탁하는 방안 검토, 연수대상자 선정 및 소요예산 집행은 시·도교육청에서 실시, 충실한 연수를 위하여 사전과제 부여 및 결과보고서 작성
- (연수계획) 시·도교육청의 참여의사 확인 후 유관기관 및 관련 학회 등과 협의하여 추후 결정 예정

□ 2026년 한국형 사회정서교육 설명회 개최(시도별 자체 사업)

- (목적) 2026년 한국형 사회정서교육의 도입에 따라 학교장 및 업무담당 교사 대상 정책 이해도를 제고하여 현장 안착 기반 마련
- (방법) 시도(지원)청별 여건과 상황에 맞게 자체 계획을 수립하여 관내 모든 학교장 및 담당 교사 대상 설명회 개최
- (일정) '26.1월 ~ 2월
- (지원사항) [교육부] 한국형 사회정서교육 강사 인력풀 제공 및 [학생정신건강지원센터] 강사비 지원

□ 2026년 위(Wee) 프로젝트 우수사례 공모전 개최(예정)

- (목적) 위(Wee) 프로젝트 운영 우수사례 발굴 및 성과 확산을 통한 위(Wee) 프로젝트 운영 내실화 및 관련 실무자·기관 격려를 통한 자긍심 고취
- (공모분야 및 방법)
 - 응모대상 : 2026년도 위(Wee) 프로젝트 기관, 상담인력 및 참여 학생
 - 응모주제 : 2026년도 위(Wee) 프로젝트 우수 상담 및 운영 사례
 - 응모 및 심사방법 : 해당 교육청에서 1차 심사 후 교육부에 추천
 - ※ 공모주제 등 세부사업계획은 추후 통보 예정
- (협조사항) 시·도교육청에서는 위(Wee) 프로젝트 기관에 동 사업의 취지 등을 홍보하고 지역 내 우수사례 적극 발굴

□ 2026년 학생 마음건강 우수콘텐츠 공모전 개최(예정)

- (목적) 학생 마음 건강 증진을 위한 교육·홍보 콘텐츠 제작 경험을 통해 사회정서 성장, 자살 위기 관리 인식 고취 기회 제공
- (공모분야 및 방법)
 - 응모대상 : 전국 초·중·고 및 일반인(개인 또는 4인 이내 팀 참가 가능)
 - 응모분야 : 동영상, 에세이, 웹툰, 인포그래픽, 포스터
 - 응모방법 : 우수 콘텐츠를 공모기한 내 제출받아 심사 후 최종 선정
 - ※ 공모주제 등 세부사업계획은 추후 통보 예정
- (협조사항) 시·도교육청에서는 각급 학교에 사업의 취지 등을 홍보하고 지역 내 학교의 우수사례 적극 발굴

☐ **2026년 학생마음건강정책 추진 유공자 표창**

- (목적) 2026년 학생마음건강정책 추진관련 유공 담당자 및 기관 등을 발굴·표창하여 관계자 사기진작 및 정책의 발전에 기여
- (대상) 정서·행동위기 및 자살예방, 학교상담 및 위(Wee) 프로젝트, 사회정서교육 등 학생마음건강정책 분야에 대한 주요 정책을 성실하게 수행하여 추진 성과가 탁월한 우수기관(학교, 단체) 및 유공자
 - 표창수량 : 미정(별도 통보 예정)
- (일정) '25. 10~11월 대상자 추천, '25. 12월 표창수여

☐ **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한 학생건강증진 정책협의회 및 연수회(예정)**

2 보고 목록

[건강관리 분야]

순번	보 고 사 항	보고기한	지정서식	비고
1	학교 건강검사 추진 현황	2026. 12. 31.	서식 제1호	서식(엑셀) 별첨
2	학생 건강증진교육 추진 현황	2027. 2. 6.	서식 제2호	서식(엑셀) 별첨
3	보건교육 추진현황	2027. 2. 6.	서식 제3호	서식(엑셀) 별첨
4	보조인력 채용현황	2026. 5. 15.	서식 제4호	
5	1형 당뇨병 등 건강 취약 학생 재학 및 지원 현황	2026. 5. 15	서식 제5호	
6	감염병 발생에 따른 (조치현황/언론 취재) 보고	사안 발생시	서식 제6호	
7	교직원 심폐소생술 교육 현황	2027. 2. 6	서식 제7호	

[마음건강 분야]

순번	보 고 사 항	보고기한	지정서식	비고
1	학생자살사망사안보고서	사안 발생시	별도 안내	
2	위(Wee) 프로젝트 현황조사	연 1회 (매년 4월 기준)	별도 안내	
3	위(Wee) 프로젝트 성과분석	연 1회 (매년 10월 경)	별도 안내	

[환경관리 분야]

순번	보 고 사 항	보고기한	지정서식	비고
1	교사(校舍) 내 환경위생 분야 점검실적	2026. 7. 16 2026. 12. 17	서식 제1호	
2	학교먹는물 관리실적	매분기말 기준 익월 5일	서식 제2호	
3	학교주변 유해환경정비 추진현황	2026. 7. 16 2026. 12. 17	서식 제3호	
4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적법 해제시설 및 불법 금지시설 현황	2026 6. 30	서식 제4호	
5	2025년도 교육환경보호제도 관련 소송현황	2026. 2. 28	서식 제5호	고발요령 및 절차 <참고자료1참조>

[급식관리 분야]

순번	보 고 사 항	보고기한	지정서식	비고
1	학교 식중독 의심환자 발생 보고	① 인지즉시: 유선보고 ② 역학조사 실시일: 서면보고	서식 제1호	대책협의 결과 식중독이 아닌 것으로 결정된 사안은 서면보고 생략가능
2	학교 식중독 원인조사 결과 보고	마지막 환자 발생 후 1개월 이내	서식 제2호	보건당국의 역학조사 결과보고서로 같음 가능

3 보고 서식

【신체건강관리 분야】

[서식 제1호]

학교건강검사 추진 현황

기관명 : 교육청

1. 초중등학교 건강검진 (신체발달상황, 구강검진 포함 / 단위 : 교, 명, 천원)

학교급	학년	전체 학교수	건강검진 미 실시 학교수	전체 학생수			검진완료 학생수			검진소요 비용
				남	여	합	남	여	합	

※ 서식변경금지, 학년셀 병합 금지, 서식에 학년 행을 추가하여 작성

2. 초등학교 구강검진 (단위 : 교, 명, 천원)

학년	전체 학교수	구강검진 미 실시 학교수	전체 학생수			검진완료 학생수			검진소요 비용
			남	여	계	남	여	계	

※ 서식변경금지, 학년셀 병합 금지, 서식에 학년 행을 추가하여 작성(구강검진만 실시한 학년의 내용 작성)

3. 별도검사 (단위 : 명, 천원)

학교급	학년	소변검사			시력검사			구강검사			결핵검사		
		전체 인원	검사 인원	소요 비용	전체 인원	검사 인원	소요 비용	전체 인원	검사 인원	소요 비용	전체 인원	검사 인원	소요 비용

※ 서식변경금지, 학년셀 병합 금지, 서식에 학년 행을 추가하여 작성

[서식 제2호]

학생 건강증진 교육 실시현황

기관명 : 교육청

1. 주제별 건강증진 교육 실시 학교 (단위 : 교)

구분	전체 학교수					교육실시 학교수				
	초	중	고	특수	각종	초	중	고	특수	각종
마약류										
흡연예방										
음주예방										
기타 약물										
오·남용 예방										
건강한 체중관리 (저체중, 비만예방)										
구강관리										
감염병 예방										

※ 학생을 대상으로 수업시간, 방학교육, 강당 등에서 실시한 교육을 모두 포함(단순 자료배포는 제외)

2. 마약류를 포함한 약물오남용 예방교육(단위 : 교)

학교급	전체 학교수 ※ 주제별 건강증진교육 실시학교수와 일치	마약류 단독 주제 연간 예방교육 실시 시간별 학교수			마약류를 포함한 약물오남용* 연간 예방교육 실시 시간별 학교수			
		1~2시간	3~4시간	5시간 이상	5시간	6시간	7시간	8시간 이상
초								
중								
고								
특								
각종								
합								

* 마약류를 포함한 약물오남용 예방교육 : 마약류 예방 단독 주제의 교육, 마약류가 포함된 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 유해약물 예방교육 등을 모두 포함하는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3. 건강증진교육, 마약류를 포함한 약물오남용 예방교육 미실시 학교에 대한
교육청 조치실적

○ (흡연예방 미실시교 조치)조치일자 및 조치내용 작성
○ (음주예방 미실시교 조치)조치일자 및 조치내용 작성

※ 교육 미실시 학교를 대상으로 교육청은 조치사항 반드시 이행

[서식 제3호]

보건교육 실시현황

기관명 : 교육청

학교급 별	학교수	보건과목 선택학교수	보건교육 현황 (해당학년 보건수업 총시수 / 해당학년 학급수)						최소 1개 학년 17차시 이상* 실시 학교수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초									
중									
고									
특수									
각종									

* 2022 개정교육과정 적용 학년은 16차시 이상

※ 보건교육 현황 : 교과 또는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을 이용하여 실시한 연평균 학급당 보건수업 평균 시수

[서식 제4호]

보조인력 채용현황('26.4.1 기준)

기관명 : 교육청

학교급	보조인력 채용 학교 수	보조인력 채용 인원 수	채용 목적 (중복표기)			
			희귀질환학생 지원	중증난치질환 학생지원	1형 당뇨병 학생 지원	그외의 질병이나 장애학생 지원
초						
중						
고						
특수						
각종						

※ 희귀질환학생: 「희귀질환관리법」 제2조, 중증난치질환학생: 「본인일일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4의2

[서식 제5호]

제1형 당뇨병 등 건강취약 학생 재학 및 지원현황

기관명 : 교육청

□ 당뇨병 학생 재학 및 지원 현황('26.4.1 기준)

1. 재학 현황

(단위 : 교, 명)

구분	전체 학교수	제1형 당뇨병 학생 재학현황		보건교사 미배치교 재학 현황*	
		재학 학교수	재학 학생수	재학 학교수	재학 학생수
초					
중					
고					
특수					
각종					

* 보건교사가 없는 학교에 재학 중인 제1형 당뇨병 학생 현황

2. 건강관리 지원 현황(※중복표기)

(단위 : 명)

구분	초	중	고	특수	각종	계
직접 주사						
주사 보조						
투약장소 제공						
혈당 체크						
인슐린 보관						
글루카곤 보관						

<지원 항목>

- 1) 직접주사 : 보건교사가 인슐린 주사를 직접 투약
- 2) 주사보조 : 학생이 인슐린 자가 주사를 할 때 주사행위 지도
- 3) 투약장소 제공 : 보건실 등 별도 공간에서 인슐린 자가 주사를 할 수 있도록 장소 제공
- 4) 혈당체크 : 보건교사 등이 직접 정기적으로 혈당을 측정해 줌
- 5) 인슐린보관 : 학교에서 인슐린을 보관하여 줌
- 6) 글루카곤 보관 : 학교에서 글루카곤을 보관하여 줌

□ 희귀질환·중증 난치질환 학생 재학 및 지원 현황('26.4.1 기준)

학교급	재학 학교수	재학 학생수	지원 현황		
			석션(기도흡입)	인공도뇨	그 외
초					
중					
고					
각종					

※ 희귀질환: 「희귀질환관리법」 제2조, 중증난치질환: 「본인일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4의2

[서식 제6호]

[감염병명] 발생에 따른 조치현황 보고

<'26. 00. 00.(), 00교육청>

▶ 보고시기

- 감염병 발생으로 역학조사를 실시한 경우
- 교내 감염병으로 인해 긴급 방역조치, 언론보도 등 특이사항 발생시
(법정, 비법정 구분없이 모든 감염병 대상)

▶ 보고방법 : 서면보고 원칙(사안에 따라 시급을 요하는 경우 유선보고 후 서면보고)

▶ 보고체계 : 학교 → (교육지원청) → 교육청 → 교육부

□ 학교 현황

학교명	소재지	학교 규모		담당자(성명/연락처)		
		학생수	교직원수	학교	교육지원청	교육청

□ 감염병 발생 및 역학조사 현황 (※ 작성예시, 보고 내용 및 서식은 감염병 발생 상황에 따라 수정 가능)

역학조사 실시일	감염병 명	발생인원			나이스 보고일**	보건소 신고일**	다음 역학조사일
		환자수	직업	학년/반(인원수)*			
'24.11.11.	백일해	1	학생	2-1(1)	'24.11.12.	'24.11.12.	'24.11.25.
'24.11.13	결핵	1	교원	2-1 담임(1)	해당없음	'24.11.15.	미정

*교직원의 경우 직급, 담임여부, 교과목 등 기재

**동일 감염병에 대해 반복하여 보고(신고)한 경우 최초 보고(신고)일과 최종 보고(신고)일을 기재

□ 역학조사 결과보고 (※ 작성예시, 보고 내용 및 서식은 역학조사 상황에 따라 수정 가능)

역학조사 실시일	조사단계 (최초/중간/최종)	조사자 현황			조사결과	비고(또는 조치사항)
		직업	학년/반	조사 인원		
24.11.14.	최초	학생	6-5	23	백일해 1명	백일해 환자가 발생한 학급
		교직원	6-5 담임	3		

□ 기타 특이사항

- (학부모 설명회 개최, 민원 사항 등 특이사항이 있을 경우 기재)

□ 언론취재 상황

- (취재일, 취재언론사, 취재내용, 언론사에 대응한 담당자 등 기재)

[서식 제7호]

교직원 심폐소생술 교육실시 현황

기관명 : 교육청

□ 교직원 교육 실시현황

1. 교육이수자 현황 (단위 : 교, 명)

구분	교육실시 학교수	교육대상 인원 ¹⁾	교육이수 인원 ²⁾	미이수 인원	미실시 학교수
초					
중					
고					
특수					
각종					

- 1) 매 학년도 학교 교육계획 수립 시 교육대상에 포함한 인원/ 전출 및 휴직 등의 사유로 교육결과 제출시 학교에 근무하지 않는 교직원은 교육대상 인원에서 제외
2) 교육계획에 포함된 교육대상 중 실제 교육을 이수한 교직원의 수 / 교육계획 수립 이후 전입, 복직한 교직원의 이수실적은 포함하지 않음

2. 교육실시자(강사) 현황 (단위 : 교) ※ 중복표기 가능

구분	학교 내 자체교육 실시 학교수	학교 내부 강사활용 학교			외부기관 강사 초빙 학교		
		보건교사	체육교사	기타 교직원	소방서 등 공공기관 소속	민간기관 소속	기타 (개인활동 강사 등)
초							
중							
고							
특수							
각종							

※ 외부기관 위탁교육과 병행한 학교도 작성 대상

3. 외부기관 위탁실시 현황 (단위 : 교) ※ 중복표기 가능

구분	외부기관 위탁교육 실시 학교수	교육청 (연수원 포함)	공공기관	의료기관	대학	민간기관 등
초						
중						
고						
특수						
각종						

※ 학교 내 자체교육과 병행한 학교도 작성 대상

[서식 제1호]

【환경관리 분야】

환경위생 분야 점검실적

(반기 / 서면)

기관명 :

교육청

1. 정기점검 실적

가. 점검실적

구 분		초등학교	중 학 교	고등학교	기타학교	계
점 검 학교수	전체 학교수					
	체육관·강당					
	기숙사(3년 이하)					
	실내환경					
점 검 학교수	공 기 질					
	일반환경					

※ 작성요령 : “실내환경”은 학교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점검표(교육부고시 제2022-20호) 제2호의 ‘학교시설 환경 측정결과’이고, “공기질”은 제3호의 ‘공기질 등 측정결과’이며, “일반환경”은 제4호의 ‘일반환경 및 식품위생 점검’을 말함(분교장도 학교수에 포함), 체육관·강당, 기숙사(3년 이하)는 해당 시설을 보유·운영하는 모든 학교수를 기재

나. 공기질 측정실적(학교수)

구 분		초등학교	중 학 교	고등학교	기타학교	계
점 검 기 관 (일반)	학교자체					
	교육청					
	외부기관					
	계					

※ 작성요령 : “점검기관”은 공기질 중 학교 또는 교육청에서 점검할 수 있는 항목에 대한 측정을 주도적으로 실시한 학교수를 말함

다. 공기질 측정결과(학교수-교사 및 급식시설)

구 분	초등학교			중 학 교			고등학교			기타학교			계		
	적합		초과	적합		초과	적합		초과	적합		초과	적합		초과
	1차	최종		1차	최종		1차	최종		1차	최종		1차	최종	
PM10 ($\mu\text{g}/\text{m}^3$)															
PM2.5 ($\mu\text{g}/\text{m}^3$)															
CO ₂ (ppm)															
HCHO ($\mu\text{g}/\text{m}^3$)															
총부유세균(CFU/ m^3)															
낙하세균 (CFU/실)															
CO (ppm)															
NO ₂ (ppm)															
Rn (Bq/ m^3)															
TVOC ($\mu\text{g}/\text{m}^3$)															
석 면 (개/cc)															
오 존 (ppm)															
진드기 (마리/ m^2)															

라. 공기질 측정결과(체육관 · 강당)

구 분	초등학교			중 학 교			고등학교			기타학교			계		
	적합		초과	적합		초과	적합		초과	적합		초과	적합		초과
	1차	최종		1차	최종		1차	최종		1차	최종		1차	최종	
PM10 ($\mu\text{g}/\text{m}^3$)															

마. 공기질 측정결과(기숙사)

구 분	초등학교			중 학 교			고등학교			기타학교			계		
	적합		초과	적합		초과	적합		초과	적합		초과	적합		초과
	1차	최종		1차	최종		1차	최종		1차	최종		1차	최종	
HCHO ($\mu\text{g}/\text{m}^3$)															
TVOC ($\mu\text{g}/\text{m}^3$)															
벤 젠 ($\mu\text{g}/\text{m}^3$)															
톨루엔 ($\mu\text{g}/\text{m}^3$)															
에틸벤젠 ($\mu\text{g}/\text{m}^3$)															
자일렌 ($\mu\text{g}/\text{m}^3$)															
스티렌 ($\mu\text{g}/\text{m}^3$)															
Rn (Bq/m^3)															

2. 특별점검 실적

가. 점검실적

구 분		초등학교	중 학 교	고등학교	기타학교	계
신축3년 이내	대상 학교수					
	점검 학교수					
증·개축	대상 학교수					
	점검 학교수					
기 타	대상 학교수					
	점검 학교수					

※ 작성요령 : 특별점검 사유별로 점검을 실시한 학교수를 기재하고 '기타'의 경우 사유 명시

나. 공기질 측정결과(학교수)

구 분	초등학교			중 학 교			고등학교			기타학교			계		
	적합		초과	적합		초과	적합		초과	적합		초과	적합		초과
	1차	최종		1차	최종		1차	최종		1차	최종		1차	최종	
HCHO ($\mu\text{g}/\text{m}^3$)															
TVOC ($\mu\text{g}/\text{m}^3$)															
벤 젠 ($\mu\text{g}/\text{m}^3$)															
톨루엔 ($\mu\text{g}/\text{m}^3$)															
에틸벤젠 ($\mu\text{g}/\text{m}^3$)															
자일렌 ($\mu\text{g}/\text{m}^3$)															
스티렌 ($\mu\text{g}/\text{m}^3$)															

※ 작성요령 : 폼알데하이드(HCHO)는 점검대상인 경우에 한하여 측정결과를 작성

3. 신축학교 점검 실적

가. 점검실적

구 분		초등학교	중 학 교	고등학교	기타학교	계
전체 학교수						
체육관 · 강당						
기숙사						
점 검 학교수	3월 개교					
	9월 개교					
	계					

나. 공기질 측정결과(학교수)

구 분	초등학교			중 학 교			고등학교			기타학교			계		
	적합		초과	적합		초과	적합		초과	적합		초과	적합		초과
	1차	최종		1차	최종		1차	최종		1차	최종		1차	최종	
HCHO ($\mu\text{g}/\text{m}^3$)															
TVOC ($\mu\text{g}/\text{m}^3$)															
벤젠 ($\mu\text{g}/\text{m}^3$)															
톨루엔 ($\mu\text{g}/\text{m}^3$)															
에틸벤젠 ($\mu\text{g}/\text{m}^3$)															
자일렌 ($\mu\text{g}/\text{m}^3$)															
스티렌 ($\mu\text{g}/\text{m}^3$)															
Rn (Bq/m^3)															

※ 특별점검, 신축학교 점검 시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자일렌, 스티렌의 경우 「학교보건법 시행규칙」에 따른 공기질 유지기준 적용

[서식 제2호]

학교 먹는물 관리실적(0분기)

기관명 : 교육청

1. 학교 먹는물 공급실태

구 분		초등학교	중 학 교	고등학교	각종특수	계
전체학교수						
시설별 학교수	상수도(A)					
	지하수(B)					
	상수도+지하수(C)					
	외부공급(D)					
	계(E=A+B+C+D)					

*분교장도 학교수에 포함(이하 동일) / 지하수는 먹는물로 이용하는 경우만 기재

2. 학교내 저수조(물탱크) 이용현황

구 분		초등학교	중 학 교	고등학교	각종특수	계
상수도 이용교	대상학교수(A)					
	설치학교수					
	설치저수조수					
	먹는물이용저수조수					
지하수 이용교	대상학교수(B)					
	설치학교수					
	설치저수조수					
	먹는물이용저수조수					
상수도 지하수 공 동 이용교	대상학교수(C)					
	설치학교수					
	설치저수조수					
	먹는물이용저수조수					
계	대상학교수(A+B+C)					
	설치학교수					
	설치저수조수					
	먹는물이용저수조수					

* 1. 학교 먹는물 공급실태에 기재된 학교수와 동일하게 작성

3. 정수기 수질검사 결과

구 분		초등학교	중 학 교	고등학교	각종특수	계
()분기	정수기 설치학교수					
	검사 대상 정수기수(A)					
	검사 정수기수 (B=C+D+E)					
	1차 적합판정수(C)					
	최종 적합판정수(D)					
	부적합 판정수(E)					
	조치결과(폐기)					

※ 정수기 외 검사 대상으로 포함하여 관리하는 모든 기기를 포함

4. 지하수 수질검사 결과

구 분		초등학교	중 학 교	고등학교	각종특수	계
분기 or 정기	대상 학교수(A)					
	검사 학교수 (B=C+D+E)					
	1차 적합판정수(C)					
	최종 적합판정수(D)					
	부적합판정수(E)					

※ [참고] 정수기 특별점검결과(분기)

구분		초	중	고	각종특수	합계
() 분기	특별점검 학교(A)					
	특별점검 정수기수(B=C+D+E)					
	1차 적합판정수(C)					
	최종 적합판정수(D)					
	부적합 판정수(E)					
	조치결과(폐기)					

※ 필요시 후속조치 등 작성(수질검사시기 조정, 청소 철저, 설치장소 변경 등)

[서식 제3호]

학교주변 유해환경 정비 추진현황

(반기 / 서면)
기관명 : 교육청

1. 교육환경보호구역 순회점검 실시

구 분	실시대상 학 교 수	점검실시 횟수	참 여 인 원	활동 내용(건수)			
				유해업소 신고(통보)	불량광고 벽보제거	업소계도 전단배포	계
반기	교육환경보호구역 설정자						
누 계							

※ 작성요령

- 관련근거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 및 시행규칙 제6조
- 실시횟수 : 교육감이 정한 횟수 또는 교육장, 학교장이 필요한 경우(중복 기재)
- 활동내용 : 교육환경 저해행위 또는 유해업소 무단설치 실태파악, 관할 교육청에 통보 및 금지행위 단속요청(시·군·구청 및 경찰에 신고) 등

2. 단속대상 정보자료 수집통보

구 분	통보건수	위반사례 통보처			
		교육청	검찰청	경찰서	시·군·구청
반기	서면통보				
	유선통보				
	계				
누 계					

3. 교육환경보호위원회 심의실적

구 분	심의건수	해제		금지		전체교육환경보호위원회 현장방문건수
		건 수	비율(%)	건 수	비율(%)	
반기						
누 계						

4. 학교주변 유해환경 지도단속

4-1. 참여인원

구 분	행정공무원	경 찰	교육청/교직원	학부모/기타	계
반기					
누 계					

4-2. 적발내용

구 분	퇴폐·변태	무허가영업	미성년자출입목인	준수사항 위반등	계
반기					
누 계					

4-3. 위반업종별 현황

구 분	유흥주점 단란주점	일 반 음식점	게임관련 시 설 등	노 래 연습장	신변종 업소	비디오물 관련시설	기타업소	계
반기								
누 계								

4-4. 위반업소 조치현황

구 분	고 발	영업정지	허가취소	경고/시정	기타	계
반기						
누 계						

※ 교육청 또는 학교 교직원 등의 참여하에 실시한 유관기관 합동단속 실적을 보고대상으로 하고, 교육청(학교)의 참여 없이 타기관의 실적은 보고에서 제외

※ 4-2, 4-3, 4-4의 계는 동일하여야 함.

5.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불법 금지시설 현황 및 정비실적(유예기간 초과시설)

5-1. 시설 현황

구 분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대학(교)		계		
		절대	상대	절대	상대	절대	상대	절대	상대	절대	상대	절대	상대	절대	상대	계
1	제한영화상영관															
2	압축·고압가스제조 및 저장소															
3	도축장															
	화장장															
	봉안시설															
	자연장지															
	소계															
4	폐기물 수집장소															
5	유흥주점															
	단란주점															
	소계															
6	관광숙박업															
	숙박업															
	소계															
7	전자유기장(컴퓨터게임장)															
	소계('95년말까지)															
8	무도학원/무도장															
9	노래연습장															
10	담배자판기															
	소계('98년말까지)															
11	전화방															
12	성기구취급업소															
	소계(즉시)															
13	비디오물감상실															
	소계('02년말까지)															
14	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 복합유통게임															
	소계('04년말까지)															
15	경륜·경정장															
	소계('09년말까지)															
16	미니게임기															
	소계('08.8.4까지)															
17	신변종 업소															
	소계('11.7.20까지)															
18	사고대비물질취급															
	소계('20.12.31.까지)															
	합 계															

※ 현재 미정비 잔여시설에 대하여 작성(6-1에 따른 무단 설치시설은 제외)

5-2. 이전 · 폐쇄 대상업소 정화요청 및 고발현황

구 분	정화요청/고발		이전 · 폐쇄 조치 건수 및 내용					계
	정화요청 건 수	고발건수	자진폐업	업종전환	위치이전	강제폐쇄 허가취소	학교이전/폐교 보호구역조정	
반기								
누 계								

※ 정화요청 및 고발업소는 학교보건법상 이전 · 폐쇄 대상업소에 대하여 누가기록

5-3. 고발업소 명단

연 번	고발일자	고발자 (기관명)	고발처	고발내용	
				업소명	위반내용

5-4. 정비된 업소현황(연간누계)

정비기한별	업 종	업소명	업소소재지	관리학교명	정비일자	조치내용
1995.12.31						
1998.12.31						
즉시정비 2002.12.31						
2004.12.31						
2008.08.04						
2009.12.31						
2011.07.20						

※ 작성요령

- 정비된 업소현황은, 위 5-2번 통계의 이전 · 폐쇄 조치내용의 업소수와 같아야 함

- ☞ ○ 모든 지정된 보고서식은 임의로 수정하거나 변경하지 말 것
- 서식안의 내용은 한글 휴먼명조 12포인트로 작성요망
- 특히, 통계수치는 정확히 작성하여 집계 시 오류가 발생치 않도록 유념
- 지정된 보고기일 내에 우리부에 도착될 수 있도록 기일 엄수

6.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불법 금지시설 현황 및 정비실적(무단 설치시설)

6-1. 시설 현황

구 분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대학(교)		계		
		절대	상대	절대	상대	절대	상대	절대	상대	절대	상대	절대	상대	절대	상대	계
1	대기/수질/악취/소음·진동															
2	폐기물처리시설(폐수종말, 가축분뇨, 분뇨)															
3	가축사체처리장															
4	도축장															
	화장장															
	불안시설															
	자연장지															
	소계															
5	가축시장															
6	제한상영관															
7	전화방, 화상방															
8	성기구취업소															
9	신변중업소															
10	고압가스, 도시가스, 액화석유가스															
11	폐기물수집장소															
12	총포, 화학류															
13	감염병 격리소 등															
14	담배자동판매기															
15	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 복합유통게임															
	소계															
16	미니게임기															
17	무도학원															
18	사행행위장 등															
19	노래연습장															
20	비디오감상실업															
21	유흥주점															
	단란주점															
	소계															
22	관광숙박업															
	숙박업															
	소계															
23	사고대비물질 취급사업장															
24	레미콘 제조업															
25	중독자재활시설															
26	카지노업															
합 계																

※ 5-1에 따른 유예기간 초과시설은 제외

6-2. 무단 설치업소 정화요청 및 고발현황

구 분	정화요청/고발		이전·폐쇄 조치 건수 및 내용					
	정화요청건수	고발건수	자진폐업	업종전환	위치이전	강제폐쇄허가취소	학교이전/폐교 보호구역조정	계
반 기								
누 계								

※ 정화요청 및 고발업소 누가기록

[서식 제4호]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적법 해제시설 및 불법 금지시설 현황

(서면, 6.30기준)

기관명 : 교육청

1.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적법 해제시설

구 분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대 학(교)		계		
		절대	상대	절대	상대	절대	상대	절대	상대	절대	상대	절대	상대	절대	상대	계
1	대기/수질/악취/소음·진동															
2	폐기물처리시설(폐수종말, 가축분뇨, 분뇨)															
3	가축사체처리장															
4	도축장															
	화장장															
	불안시설															
	자연장지															
	소계															
5	가축시장															
6	제한상영관															
7	전화방, 화상방															
8	성기구취급업소															
9	신변종업소															
10	고압가스, 도시가스, 액화석유가스															
11	폐기물수집장소															
12	총포, 화약류															
13	감염병 격리소 등															
14	담배자동판매기															
15	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 복합유통게임															
	소계															
	미니게임기															
16	무도학원															
17	사행행위장 등															
18	노래연습장															
19	비디오감상실업															
21	유흥주점															
	단란주점															
	소계															
	관광숙박업															
22	숙박업															
	소계															
23	사고대비물질 취급사업장															
24	레이콘 제조업															
25	중독자재활시설															
26	카지노업															
합 계																

2.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불법 금지시설

구 분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대학(교)		계		
		절대	상대	절대	상대	절대	상대	절대	상대	절대	상대	절대	상대	절대	상대	계
1	대기/수질/악취/소음·진동															
2	폐기물처리시설(폐수종말, 가축분뇨, 분뇨)															
3	가축사체처리장															
4	도축장															
	화장장															
	방안시설															
	자연장지															
	소계															
5	가축시장															
6	제한상영관															
7	전화방, 화상방															
8	성기구취업소															
9	신변종업소															
10	고압가스, 도시가스, 액화석유가스															
11	폐기물수집장소															
12	총포, 화학류															
13	감염병 격리소 등															
14	담배자동판매기															
15	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 복합유통게임															
	소계															
	미니게임기															
16	무도학원															
17	사행행위장 등															
18	노래연습장															
19	비디오감상실업															
21	유흥주점															
	단란주점															
	소계															
22	관광숙박업															
	숙박업															
	소계															
23	사고대비물질 취급사업장															
24	레미콘 제조업															
25	중독자재활시설															
26	카지노업															
합 계																

※ 작성요령

- [서식 제3호]의 5-1, 6-1에 따른 이전·폐쇄업소 및 무단 설치시설 현황(2분기)을 합한 시설수와 동일하게 작성

[서식 제5호]

2026년도 교육환경보호제도 관련 소송현황

1. 소송(심판) 현황

구 분	행정심판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	계
제기건수					
인용건수					

※ 최종심 기준으로 작성(최초심이 2017년 이전이라도 최종심 기준으로 작성)하되,
인용건수는 교육청 기준으로 기재

2. 금지행위 및 시설별 소송(심판) 건수

구 분	행정심판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		계	
	제기	인용	제기	인용	제기	인용	제기	인용	제기	인용
PC방										
노래연습장										
유흥·단란주점										
가스관련 제조소·저장소										
숙박시설										
기타										
계										

【서식 제1호】

【급식관리 분야】

학교 식중독 의심환자 발생 보고

('26.3.19. ○○○○교육청)

<요약>

'24.3.19(수), ○○도 ○○시 △△고등학교(공립, 직영)에서 식중독 의심 환자 ○○명 발생

1. 학교 현황

학교명	설립구분	급식형태	학교규모		영양(교)사
			학생수	교직원수	
교육부고등학교	공립	직영/상수도	500	45	주상철

2. 발생현황

- 인지일시 : 3.19.(수) 10:30경
 - (인지상황) 3-1반 담임 000이 담당학급 학생 중 설사증상 학생이 2명 발생함에 따라 학교장에 보고
- 보건소 신고일시 : 3.19.(수) 11:00경 △△보건소(신고자 : 교감 000)
 - 신고시점 기준 (의심)환자 현황 : 총 11명 (학생 10명, 교직원 1명)
- 학교 조치내용
 - 학교에서 조치한 주요 내용(추가 환자 파악, 교내 소독 등)
 - ※ 학교자체 대책회의 등을 개최한 경우 회의 주요내용 및 회의에서 결정한 사항 요약

3. 역학조사 등 조치사항

- 현장방문 및 대책회의 참석자 : 00교육지원청 식품위생주사보 김길동
- 역학조사 및 관계기관 대책회의 결과
 - (가검물 채취) 환자가검물 건, 환경가검물 건
 - (추정 감염경로 및 원인식품)
 - (급식 여부) 급식 중단 없음 / 0월0일부터 0월0일까지 급식 중단
 - (기타 중요 결정사항 등)

4. 환자 세부현황

- 사례 정의:
- 학생 환자 현황('25.3.19. 17시 기준)

구분	학년						합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학생수							
환자수							

- 일일상황보고(작성예시)

구분	환자수(명)		치료중 환자수(명)				비고
	누적	신규	입원	입원	투약/자가	합계	
03월 19일	10	10	1	4	3	8	발생인지일
03월 20일	12	2	0	3	2	5	
03월 21일	13	1	0	1	1	2	추가환자 없음

※ 매일 17시 기준으로 환자 및 치료 현황을 엑셀로 작성(별도서식 제공)하여 교육부 담당자 메일로 제출 / 2일 연속 추가환자 발생이 없으면 보고 종료

5. 참고사항

- 언론취재 :
- 기타 :

【서식 제2호】

학교 식중독 원인조사 결과보고

기관명 : ○○○○교육청

1. 발생개요

- 학교명, 설립별, 급식형태, 소재지 등
- 주요증세, 일자별 발병 및 치료현황 등
- 학교의 인지시기, 교육청 보고 및 보건소 신고일시

2. 급식실시 현황

- 급식인원(학생, 교직원), 종사원수, 급식시간, 식단내용
- 식재료납품업체 및 위생관리 현황 등

3. 주요 조치내용

- 일자별, 기관별 주요조치 내용
 - 안전공제회 등의 보상내용, 관련업체 조치 및 관련자 문책 등 포함

4. 식중독 원인조사 결과

- 식단작성, 식재료검수, 종사자건강 및 위생상태, 조리작업과정 등 조사결과
- 역학조사 설문조사, 보존식 및 환자가검물, 환경가검물 검사결과 등
- 보건소(역학조사관)의 종합결론

5. 시사점 및 향후계획

- 식중독 사고에 대한 역학조사결과 시사점
- 식중독 방지를 위한 개선방안 및 향후계획

※ 보고시기 : 마지막 환자 발생 후 1개월 이내(종결보고)
→ 보건당국의 역학조사 결과보고서로 갈음 가능

4

참고 자료

【참고자료 1】

고발요령 및 절차

□ 담당 공무원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업소를 인지하면,

① 고발의뢰서

② 고발장

③ 담당 공무원 진술서

④ 입증서류(채증사진, 행정공문서 등)을 구비해서 관할 경찰서 민원실에
고발을 접수(우편 접수가능)

□ 관할 경찰서는 고발 의뢰서를 토대로 사실 확인 후 검찰청에 송치

[예시1]

고 발 장

1. 피고발인 인적사항

2. 영업장소

3. 고발사유 및 내용

4. 관계법규

5. 첨부서류

2026. . .

○ ○ 교 육 청 교 육 장

○○경찰서장 귀하

[예시2]

진 술 서

- 소 속 :
- 직 명 :
- 성 명 :

- 업 소 명 :
- 업 종 :
- 업 주 명 : - 주민등록번호 :
- 영업장소 :

2025. . .

위 진술인 (인)

○경찰서장 귀하

【참고자료 2】

학생건강검진기관 계약 관련 서류 간소화방안으로 마련한 ‘학생 건강검진 승낙서’에 대한 관계자 의견수렴 결과 작성된 서식(안)으로 학교 필요에 따라 검진기관 계약서류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동 서식(안)은 법정서식이 아니므로, 관련 법령 또는 각 시도교육청에서 정한 별도의 규정이 있을 경우 해당 규정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학생 건강검진 승낙서

☐ 학생 검진기관으로서 아래 계약내용, 학생건강검진 유의사항 및 준수사항 등 검진기관으로서의 책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승낙합니다.(계약서 작성 생략)

☐ 검진기관		(전화번호:)	
병원명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원장성명	(인)

☐ 계약내용			
계약건명	2026년도 ○○학교 학생 건강검진		
1인당검진비용	1학년	4학년	4학년 비만학생
검진대상	1, 4학년 학생 명 중 방문학생		
검진기간	2026년 월 일 ~ 월 일	검진완료일	2026년 월 일
계약보증금	계약금액(검진대상인원*검진비용)의 10%		
지연배상금	검진완료 후 15일 이내에 결과통보를 하지 않는 경우 매1일마다 청구금액(검진인원*검진비용)의 1,000분의 1.3에 해당하는 지연배상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하여야 할 금액은 계약대가에서 상계할 수 있다.		

□ 검진기관의 학생건강검진 유의사항 및 준수사항

1. 건강검진 항목 및 방법: 검진기관은 학교건강검사규칙 제5조제2항 관련 [별표2] 건강검진 항목 및 방법에 따라 적절한 의료장비를 사용하여 학생 개인별로 정밀하게 실시한다.
2. 건강검진 결과 판정 및 기재방법: 검진기관은 교육부 고시 [학교 건강검진 결과 판정 및 기재방법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검진결과를 판정, 기재한다.
3. 검진결과 통보: 검진기관은 건강주의, 질환의심 또는 유소견자의 경우 치료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건강검진 완료 후 15일 이내에 검진학생에 대하여 학생건강검사(구강검진)결과통보서를 3부 작성하여 1부는 검진기관이 보관, 1부는 학생 또는 그의 보호자, 1부는 학교로 통보한다.
4. 검진기관 준수사항
 - 가. 검진기관은 검진실시에 앞서 검진에 필요한 일반검진문진표, 구강검진문진표, 검진안내서(검진장소, 검진시간, 검진절차 및 검진 시 유의사항 등) 등을 사전에 학생들에게 배부한다. 검진기관의 「인력·시설 및 장비기준」은 을 반드시 충족하고 검진업무 수행한다. 검진기관은 흉부방사선 검사를 위한 방사선발생장치 및 방어시설 검사성적서, 방사선발생장치 설치 및 사용신고필증 사본을 비치하고, 검진장비에 대한 정도관리 철저
 - 라. 무자격자(의사가 아닌 간호사, 치과위생사 등)의 검진행위 금지
 - 마. 검진결과 통보시기 준수
 - 바. 학생의 인적사항, 검진자료 등의 개인정보 보호 및 검진통계자료 보안관리 철저
5. 사고책임: 검진기관은 학생 건강검진에 따른 제반 의료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검진과 관련하여 발생한 의료사고는 검진기관이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6. 기타 비용: 검진기관은 학생 건강검사에 따른 제비용을 부담하고, 계약금액이외의 여하한 명목의 경비를 “학교장”에게 요구할 수 없다.
7. 검진비용의 청구·지급: 검진기관은 검진비용을 청구할 수 있으며, 학교는 청구일로부터 7일 이내(토요일, 공휴일 제외)에 지급한다.
8. 손해배상: 검진기관은 상기 계약사항을 이행치 아니하였을 때 계약보증금을 학교에 납부하여야 한다. 또한, 검진기관이 “학교장”에게 부당한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이에 상응하는 보상을 한다.
9. 검진취소 등: 천재지변 또는 학교의 부득이한 사정에 의하여 학생 건강검진이 취소되거나 연기될 때에는 학교는 즉시 검진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검진기관은 이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10. 계약조건: 이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행정안전부 예규), ○○학교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적용한다.(청렴계약특수조건은 학교에서 교부)
11. 계약 시 제출서류: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수의각서(학교에서 서식 제공), 통장사본

【참고자료 3】 정수기 및 냉·온수기 관리카드

정수기 관리카드

[illegible]

< 참고사항 >

1. 정수기 설치 금지장소
 - 실외 또는 직사광선이 비추는 장소, 화장실과 가까운 장소 또는 냉·난방기 앞에 설치하면 안됩니다.
2. 정수기 관리방법
 - 필터는 해당 정수기의 사용방법 설명서에 따라 정기적으로 교환하여야 합니다.
 - 6개월마다 1회 이상 고온·고압 증기소독방법, 약품과 증기소독의 병행방법, 전기분해방법 등으로 소독·청소하여야 합니다.
 - 소독으로 인한 약품이 정수기에 잔류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 총대장균군, 탁도 항목이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에 의한 먹는물 수질기준에 적합하도록 관리하여야 합니다.
3. 관리카드를 정수기에 비치하고, 기록을 유지하여 사용자가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냉·온수기 관리카드

[illegible]

< 참고사항 >

1. 냉·온수기 설치 금지장소
 - 실외 또는 직사광선이 비추는 장소, 화장실과 가까운 장소, 냉·난방기 앞에 설치하면 안됩니다.
2. 냉·온수기 관리방법
 - 에어필터를 1년마다 1회 이상 교환하여야 합니다.
 - 6개월마다 1회 이상 고온·고압 증기소독방법, 약품과 증기소독의 병행방법 등으로 소독·청소하여야 합니다.
 - 약품소독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약품이 냉·온수기에 잔류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3. 관리카드는 냉·온수기에 비치하고, 기록을 유지하여 사용자가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참고자료 4】

식품안전 및 영양·식생활교육 내용과 시행방법

□ 교육내용

- 어린이 기호식품 및 고열량·저영양 식품의 안전과 영양, 식생활 관리에 필요한 식품위생, 급식안전, 영양관리, 식중독 예방, 식재료 원산지 표시제, 영양량 표시제, 알레르기 유발식품 표시제 관련교육 및 홍보
- 불량식품 식별요령 및 안 사먹기, 올바른 식생활 습관의 형성, 식량생산 및 소비에 관한 이해 증진, 전통식문화의 계승·발전을 위한 학생 지도
- 식생활에서 기인하는 영양불균형 시정, 질병예방을 위한 저체중, 성장부진, 빈혈, 과체중, 비만학생 등에 대한 영양교육
- 학생들에 대한 위생적인 배식관리와 편식교정, 식사예절 등 급식지도, 잔반 안남기기 및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등 바람직한 식생활을 위하여 실시하는 교육활동

□ 시행방법

- 교육내용과 교육대상 및 방법 등 구체적인 월별 교육활동 추진계획은 학교장이 결정하되, 「초·중등교육법」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 교육과정 운영계획에 반영하여야 함.
- 교육실적은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제7조제2호에 의한 “학교급식일지” 등에 기록(입력)하여 3년간 보존하여야 함.

【참고자료 5】

건강진단 개정 관련 Q&A(학교급식법 적용 대상)

Q1. 건강진단 변경사항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 2024.1.8.부터 변경된 내용 적용

Q2. 건강진단의 유효기간 산정방법은?

☞ 직전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날부터 6개월 기산(검진일 기준 아님)

※ (예) '25.2.1. 건강진단 시 → 유효기간 만료일은 '25.8.1. → 다음 유효기간 만료일은 '26.2.1.

Q3. 검사기간은?

☞ 유효기간 만료일 기준으로 전·후 각각 30일 이내 실시

※ 검사기간 내에 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유효기간은 6개월 주기로 반복됨

<적용 예시>

구분	검사	다음 검사	다음 검사	다음 검사
검사기간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각각 30일 동안)	'25.2.1.	'25.7.2.~'25.8.31.	'26.1.2.~'26.3.3.	'26.7.2.~'26.8.31.
유효기간	'25.8.1.까지	'26.2.1.까지	'26.8.1.까지	'27.2.1.까지

※ 검사기간(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30일 이내) 이전 또는 이후에 검사하는 경우에는 검사일로부터 다시 유효기간 및 검사기간이 새로 산정되므로 유의(검사기관 변경시에도 적용)

Q4. 유효기간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 건강진단 결과서에 표시되므로, 결과서 확인

<(예시)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학교급식) 건강진단 결과서>

진단항목	진단일자	판정일자	진단결과	유효기간
장티푸스	2025-01-08	2025-01-13	정상	2025-07-08
파라티푸스	2025-01-08	2025-01-13	정상	2025-07-08
폐결핵	2025-01-08	2025-01-13	정상	2025-07-08

※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별표4] 및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규칙」의 건강진단 규칙에 따라 위와 같이 검사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단, 폐결핵검사는 연 1회 실시할 수 있습니다.